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경찰청 소관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 문 위 원 최 선 영

전 문 위 원 임 재 금

목 차

【 해양수산부 소관 】

Ⅰ. 2023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 1

1. 2023년도 결산 총괄 ····· 1

2. 세입·세출 개요 ····· 3

가. 세 입 ····· 3

나. 세 출 ····· 4

3. 기금 개요 ····· 6

가. 수 입 ····· 6

나. 지 출 ····· 7

4. 예비비 지출 ····· 8

5. 재무회계 ····· 9

가. 재정상태 ····· 9

나. 재정운영 ····· 11

다. 순자산변동 ····· 13

Ⅱ. 회계·기금별 검토의견 ····· 14

1. 일반회계 ····· 14

가. 개 요 ····· 14

1) 세입결산 ····· 14

2) 세출결산 ····· 16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18

1) 일반회계 세입: 변상금 미회수채권 회수율 제고 노력 필요 ····· 18

2) 지자체 보조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지자체의 집행 실적 제고 대책 마련 ····· 24

3) 해양정원 조성 : 사전계획 수립 철저 필요 ····· 37

4)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준설토투기장 확보 등 사업여건에 대한 검토 강화 ····· 43

(1) 정화사업지 선정 시 준설토투기장 확보에 대한 확인 필요 ····· 44

(2) 사업완료 해역에 대한 중장기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 50

5) 연안정비·해양 및 수자원 관리 : 연안정비사업의 사업효과성 제고와 평가방식 개선 필요 ····· 53

6)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 전문인력 사업의 지원자 수 확대방안 마련 필요 ····· 61

7)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 사업출연금을 통한 공공요금 충당 문제 ··· 68

8) 해양치유시범지구 조성사업 집행부진 방안 마련 필요 ····· 74

9)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의 지연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81

10) 어업지도관리: 국가어업지도선의 계약해지·유찰로 인한 사업지연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86
11)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 유조선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신청 확대를 위한 선종별 차등 지원 방안 마련 ····· 92
12)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지원 : 수혜자 추적조사 및 체계적 사업평가 필요 ····· 98
13)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의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필요 ····· 105
14) 국고여객선 건조: 신규 국가보조항로 지정 전에 사전계획 철저 필요 ····· 112
15)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해양안전체험시설 지원기준 및 비용 분담비율을 포함한 사업지침 사전 마련 필요 ····· 117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24

가. 개 요 ····· 124

1) 세입결산 ····· 124
2) 세출결산 ····· 126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128

1)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지원: 배합사료 성능개선 등 배합사료 사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필요 ····· 128
2) 친환경 어구보급: 생분해어구 보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134
3)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 지원 장비 확대 등 어가의 사업수요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141
4) 연근해어선감척: 감척신청 어민의 신청 철회 최소화 등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146
(1) 감정평가 이후 감척신청 철회 최소화 방안 등 마련 필요 ····· 148
(2)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150

5) 어업인 삶의 질 향상 ····· 153
(1)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여성어업인 검진기관 접근성 개선 및 검진항목의 차별성 집중 홍보 필요 ····· 155
(2)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요 확인 등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159
6) 수산 공익직불제 ····· 163
(1) 어선원 직불 사업: 직불금 지급요건의 타당성 검토 필요 ····· 165
(2) 수산자원보호 직불: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 어선의 의무 이행 관리 필요 ····· 168
7) 연안국과의 협력(ODA): 신규 ODA사업에 대한 사업공모 참여기관 확대 노력 필요 ····· 172

3. 교통시설특별회계 ····· 178
가. 개 요 ····· 178
1) 세입결산 ····· 178
2) 세출결산 ····· 180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182
1) 새만금신항 : 방파제(연장) 사업의 다른 사업으로의 예산조정 최소화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182
2) 마리나 항만: 사업추진 부진에 따른 이월예산의 불용 ····· 189
3)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의 타당성 보완과 부지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196

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205

가. 개 요 ····· 205

1) 세입결산 ····· 205

2) 세출결산 ····· 206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07

가. 개 요 ····· 207

1) 세입결산 ····· 207

2) 세출결산 ····· 208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210

1)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지 선정 평가체계 개선 및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점검 철저를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 ····· 210

6. 수산발전기금 ····· 217

가. 개 요 ····· 217

1) 수입결산 ····· 217

2) 지출결산 ····· 219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221

1)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정화명령 제도 활성화 및 드론활용 해양쓰레기 관리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221

【 해양경찰청 소관 】

Ⅰ.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33

1. 2023년도 결산 개요 ····· 233

가. 총 괄 ····· 233

나. 세입·세출 ····· 235

1) 세 입 ····· 235

2) 세 출 ····· 237

다. 재무회계 ····· 238

1) 재정상태 ····· 238

2) 재정운영 ····· 240

3) 순자산변동 ····· 242

Ⅱ. 회계·기금별 검토의견 ····· 244

1. 일반회계 ····· 244

가. 개 요 ····· 244

1) 세입결산 ····· 244

2) 세출결산 ····· 246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247

1) 일반회계 세입 : 세입추계 적정성 확보 및 장기 미수납채권등에 대한 징수 관리 강화 ····· 247

2)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사업 : 국고보조금사업의 제도 개선 마련 및 연례적 세목조정을 통한 신규 행사추진 부적절 ····· 253

(1)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내역사업의 국고보조율 단계적 조정 필요 ····· 254

(2) 연례적 세목조정을 통한 포스터 공모전, 캠페인 등 신규 행사 추진 부적절 ····· 258

3) VTS구축운영 사업 : 연례적 낙찰차액 등 사용 및 당초 예산 미반영 행사추진 부적절 ····· 261

(1) 해상교통관제시스템 관련 관리용역비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잔액의 연례적 타 비목으로의 이·전용 및 세목조정 부적절 ····· 262

(2) 일반용역비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행사추진 부적절 ····· 267

4) 외사경찰활동지원 : 민간위탁사업비 과다 편성 후 연례적 이용 등 행태 시정 필요 ····· 271

5) 함정정비유지 : 노후함정 안전도 검사 용역비 낙찰차액 사용 부적절 ··· 276

6) 진압및전투장비관리 사업 : 불용 예상 사업 예산으로 계획되지 않은 사업 추진 부적절 ····· 281

7) 지방관서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의 연례적 이·전용 부적정 ····· 286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부 소관]

Ⅰ. 2023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1. 2023년도 결산 총괄

□ 2023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세입예산 및 수산발전기금의 수입 계획액은 2조 5,307억 8,100만원이며, 2조 7,068억 2,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조 6,336억 7,600만원을 수납하고 730억 2,5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 2023년도 세입(수입)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증감 (B-A)
예 산	1,695,364	1,826,076	1,773,800	127	52,148	78,436
기 금	835,417	880,753	859,876	-	20,877	24,459
총 계	2,530,781	2,706,829	2,633,676	127	73,025	102,895

* 자료 : 해양수산부

□ 세출예산(지출계획) 규모는 7조 9,643억 2,400만원이며, 사업 집행과정에서 전년도 이월 등에 따른 세출예산현액은 8조 4,036억 300만원으로, 이 중 7조 9,388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2,466억 6,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789억 4,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2023년도 세출(지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출 예산액 (지출 계획액)	예산(지출)결정후 증감액				예 산 (지출) 현 액	지출액	다음 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 지출	예비비	이·전용				
예산	7,128,907	220,291	-	216,898	121,694 △121,694	7,566,096	7,078,951	242,803	244,342
기금	835,417	2,090	-	-	-	837,507	859,876	3,866	134,607
총계	7,964,324	222,381	-	216,898	121,694 △121,694	8,403,603	7,938,827	246,669	378,949
총지출	6,433,282	214,685	-	109,478	121,694 △121,694	6,757,445	6,207,523	246,669	303,253

※ 총지출: 총계-내부거래(회계간・회계기금간・회계내계정간 거래)-여유자금

* 자료 : 해양수산부

2. 세입·세출 개요

가. 세 입

□ 해양수산부 소관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조 6,953억 6,400만원이며, 1조 8,260억 7,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조 7,783억원을 수납하였으며, 521억 4,8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 2023년도 세입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일반회계	57,897	51,669	47,394	-	4,275	△10,503
농특회계[1]	31,998	156,215	136,933	-	19,282	104,935
교특회계[2]	1,588,846	1,611,918	1,586,285	127	25,506	△2,561
에특회계[3]	3,848	3,005	1,349	-	1,656	△2,499
지특회계[4]	12,775	3,268	1,839	-	1,429	△10,936
합 계	**1,695,364**	**1,826,076**	**1,773,800**	**127**	**52,148**	**78,436**

* 자료 : 해양수산부

□ 미수납액 521억 4,800만원의 주요 발생 사유는 체납자 재력부족(252억), 관계기관 예산부족(212억), 납기 미도래(57억) 등임.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 교통시설특별회계
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나. 세 출

□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7조 1,289억 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202억 9,100만원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조 5,660억 9,600만원임.

【 2023년도 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 지출	예비비	이·전용				
일반회계	3,550,344	75,035	-	109,478	21,579 △21,579	3,734,857	3,575,297	89,062	70,498
농특회계	1,455,274	73,292	-	107,420	17,058 △17,058	1,635,986	1,524,032	37,104	74,850
교특회계	1,588,846	71,963	-	-	83,056 △83,056	1,660,809	1,490,029	94,492	76,288
에특회계	66,328	-	-	-	-	66,328	47,455	-	18,873
지특회계	468,115	-	-	-	-	468,115	442,137	22,145	3,833
총계	7,128,907	220,291	-	216,898	121,694 △121,694	7,566,096	7,078,951	242,803	244,342
총지출	5,763,357	212,596	-	109,478	121,694 △121,694	6,085,431	5,623,981	242,803	218,646
내부거래	1,365,550	7,695	-	107,420	-	1,480,665	1,454,970	-	25,695

※ 총계 : 총지출 + 내부거래(회계간·회계기금간·회계내계정간 거래액)

* 자료 : 해양수산부

□ 이·전용액 1,216억 9,400만원은 물가상승 등에 따른 항만건설예산 조정 787억원, 재해대책비 부족액 133억원, 해양방사능 조사 확대 61억원 및 기타 236억원 등으로 발생하였음.

□ 예산현액 7조 5,660억 9,600만원 중 7조 789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일반회계, 농특회계 및 교특회계에서 절대공기 부족(1,740억원) 등으로 2,428억 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2,293억원) 및 지급사유 미발생(115억원) 등으로 2,443억 4,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3. 기금 개요

가. 수 입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발전기금의 2023회계연도 총 수입계획액은 8,354억 1,700만원이며, 8,807억 5,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598억 7,600만원을 수납하였고, 경상이전수입(법정부담금 등) 납부기한 미도래 등으로 208억 7,7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3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기 금 별	수입계획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대비 수납증감 (B-A)
	당초	변경 (A)					
수산발전기금	835,417	835,417	880,753	859,876	20,877	-	24,459
합 계	835,417	835,417	880,753	859,876	20,877	-	24,459
사업운용수입 (수산발전기금)	587,635	587,635	624,946	604,069	20,877	-	16,434
정부내부수입 (수산발전기금)	152,624	152,624	153,486	153,486	-	-	862
여유자금회수 (수산발전기금)	95,158	95,158	102,321	102,321	-	-	7,163

* 자료 : 해양수산부

나. 지 출

□ 수산발전기금의 총 지출계획액은 8,354억 1,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0억 9,000만원을 포함한 지출계획현액은 8,375억 700만원으로, 이 중 8,598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38억 6,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46억 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2023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기 금 별	지출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 초	변 경					
수산발전기금	835,417	835,417	2,090	837,507	859,876	3,866	134,607
총 계	835,417	835,417	2,090	837,507	859,876	3,866	134,607
일 반 지 출 (수산발전기금)	669,925	669,925	2,090	672,015	583,542	3,866	84,607
정부 내부지출 (수산발전기금)	50,000	50,000	-	50,000	-	-	50,000
합 계	719,925	719,925	2,090	722,015	583,542	3,866	134,607
여유자금운용 (수산발전기금)	115,492	115,492	-	115,492	276,334	-	-

* 자료 : 해양수산부

□ 다음연도 이월액 38억 6,600만원은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실시설계 지연, 자유무역협정이행 FTA 대책수립 연구의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른 것임.

□ 불용액 1,346억 700만원은 주요 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비축사업 470억 1,700만원, 산지 및 소비지유통자금(융자) 10억 6,200만원 등임.

4. 예비비 지출

□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비비 배정액은 일반회계 20억 5,800만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74억 2,000만원으로 이 중 1,038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 4,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2억 3,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지출내역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내 수산물의 소비위축 방지 및 수산물 할인지원 확대를 위한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942억 7,900만원을 배정받아 전액 지출 등을 하였음.

【 2023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

(단위 : 백만원)

집 행 내 역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09,478**	**103,899**	**2,347**	**3,232**
일반회계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	2,058	2,052	-	6
농특회계	수산물 위생관리	5,900	2,909	2,347	644
농특회계	수산물 품질관리	961	743	-	218
농특회계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14,279	14,279	-	-
농특회계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80,000	80,000	-	-
농특회계	원양어업활성화	285	285	-	-
농특회계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5,995	3,631	-	2,364

* 자료 : 해양수산부

5. 재무회계

가. 재정상태

【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재정상태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금 액	비 율
자 산	37,866,457	37,391,167	475,290	1.3
유동자산	895,184	981,537	△86,353	△8.8
투자자산	2,304,219	2,016,644	287,575	14.3
일반유형자산	7,153,874	7,157,377	△3,503	△0.1
사회기반시설	27,078,548	26,790,119	288,429	1.1
무형자산	44,086	52,555	△8,469	△16.1
기타비유동자산	390,546	392,936	△2,390	△0.6
부 채	157,513	111,347	46,166	41.5
유동부채	102,365	53,197	49,169	92.4
장기차입부채	550	589	△39	△6.6
장기충당부채	3,145	162	2,983	1,841.4
기타비유동부채	51,453	57,399	△5,946	△10.4
순자산	37,708,944	37,279,821	429,123	1.2

* 자료 : 해양수산부

□ 2023년 말 기준 해양수산부의 자산은 37조 8,664억 5,700만원으로 전기 대비 4,752억 9,000만원 증가(1.3%)하였음.

□ 현금및현금성자산이 1,014억원(△98.9%) 감소함에 따라 유동자산 총계는 863억 5,300만원 감소(△8.8%)하였고,

□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항만은 1,370억원(△0.6%) 감소하였으나, 국가어항이 408억원 증가(2.0%)하였고,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이 3,848억원(12.36%) 증가함에 따라 총계는 2,884억 2,900만원 증가(1.1%)하였음.

□ 2023년 말 기준 해양수산부의 부채는 1,575억 1,300만원으로 전기 대비 461억 6,600만원 증가(41.5%)하였음.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023년 말 기준 37조 7,089억 4,400만원으로 전기 대비 4,291억 2,300만원 증가(1.2%)하였음.

나. 재정운영

【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재정운영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금 액	비 율
Ⅰ. 프로그램순원가	4,616,361	4,476,357	140,004	3.1
Ⅱ. 관리운영비	452,800	488,039	△35,239	△7.2
Ⅲ. 비배분비용	297,842	46,386	251,456	542.1
Ⅳ. 비배분수익	191,809	303,936	△112,127	△36.9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5,175,194	4,706,846	468,348	10.0
Ⅵ. 비교환수익 등	98,143	84,685	13,458	15.9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5,077,051	4,622,161	454,890	9.8

* 자료 : 해양수산부

□ 2023년 중 프로그램 순원가는 프로그램 총원가 4조 9,290억원에서 프로그램 수익 3,126억원을 차감한 4조 6,163억 6,100만원으로 전기 대비 1,400억 400만원 증가(3.1%)하였음.

□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3,072억원과 그 밖의 경비 1,456억원으로, 전기 대비 352억 3,900만원(△7.2%)감소하였음.

□ 비배분비용은 감가상각비 2억원, 대손상각비 37억원, 기타비용 2,926억원 등이며, 비배분수익은 재화및용역제공수익 1,240억원, 기타수익 584억원 등으로 구성됨.

□ 비교환수익 등은 부담금수익 796억원, 기타비교환수익 183억원 등으로, 전기 대비 134억 5,800만원 증가(15.9%)한 981억 4,300만원임.

□ 재정운영순원가는 5조 1,751억 9,400만원이며,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4,548억 9,000만원 증가(9.8%)한 5조 770억 5,100만원임.

다. 순자산변동

【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순자산변동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 기초순자산	5,706,307	24,455,718	7,117,795	37,279,821
Ⅱ. 재정운영결과	-	5,077,051	-	5,077,051
Ⅲ. 재원의조달및이전	-	5,828,450	-	5,828,450
Ⅳ. 조정항목	-	-	△322,276	△322,276
Ⅴ.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5,706,307	25,207,118	6,795,520	37,708,944

* 자료 : 해양수산부

□ 기초순자산은 전기 대비 9,209억 8,200만원 증가(2.5%)한 37조 2,798억 2,100만원으로 인식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는 5조 770억 5,100만원임.

□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5조 8,284억 5,000만원으로 재원의 조달 7조 5,221억원, 재원의 이전 1조 6,937억원이며,

조정항목은 3,222억 7,600만원으로 투자증권평가손익 22억원, 자산재평가이익 △3,245억원임.

□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조달및이전과 조정항목을 포함한 기말순자산은 37조 7,089억 4,400만원임.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요약표(해수부)

연번	회계 구분	세부사업명	'23년 예산 (백만원)	주제(제목)	지적사항	국회 지적
1	일반 회계	세입	-	변상금 미회수채권 회수율 제고 노력 필요	미회수채권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2		지자체 보조사업	1,136,809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지자체의 집행 실적 제고 대책 마련 필요	실제 집행이 가능한 시기에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집행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3		해양정원 조성	2,150	사전계획 수립 철저 필요	향후 성격 · 기능이 유사한 사업을 중복하여 포함하지 않고, 집행 여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	'22년 시정요구 (제도개선)
4		오염퇴적물 정화 · 복원	13,352	준설토투기장 확보 등 사업 여건에 대한 검토 강화	준설토투기장 확보 여부 등 사업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오염도가 개선되지 않은 해역에 대해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22년 시정요구 (주의)
5		연안정비	53,944	연안정비사업의 사업효과성 제고와 평가방식 개선 필요	사업구간 선정방식의 검토 등 개선방안 마련 및 평가방식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연안침식 평가로 바꾸는 등 등급평가방식을 개선할 것	'22년 시정요구 (제도개선)
		해양 및 수자원 관리	2,228			
6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운영지원 (R&D)	82,989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자 수 확대방안 마련 필요	양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연내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프로그램별 예산을 배정 · 집행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7		해양문화 시설 건립 및 운영	72,351	사업출연금을 통한 공공요금 충당 문제	국립해양박물관의 본래 목적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출연금을 편성하여 사업출연금으로부터 기관운영출연금으로의 세목 조정을 최소화할 것	
8		해양관광 육성 사업	57,931	해양치유시범지구 조성사업 집행부진 방안 마련 필요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를 잘 이행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21년 시정요구 (제도개선)
9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R&D)	42,190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의 지연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추진이 총 5차례 유찰되는 등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총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등 민간의 참여 유인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10		어업지도 관리	131,146	국가어업지도선의 계약해지·유찰로 인한 사업지연 관련 대책 마련 필요	업체의 부정입찰에 따른 계약해지 이후 유찰로 인해 후속업체 선정이 지연되면서 당초 2024.1월이었던 준공예정일이 2025년 하반기 이후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사업 지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	'21년 시정요구 (주의, 제도개선)
11		국가필수 선대제도 운영	6,545	유조선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신청 확대를 위한 선종별 차등 지원 방안 마련	국가필수선박 목표 지정 척수가 있으나 유조선은 연례적으로 목표 대비 지정척수가 미달된 상황이므로, 유조선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신청을 유도할 수 있는 선종별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21 · 22년 시정요구 (제도개선)
12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지원	4,937	수혜자 추적조사 및 체계적 사업평가 필요	수료자 중 비관련 해운물류기관의 취업 비율이 43.5%고, 졸업 이후 취업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수혜자 추적조사 및 체계적인 사업평가 등을 실시할 것	'21년 시정요구 (제도개선)
13		국가보조 항로 결손보상금	20,248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사업대상 선정시 선박확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확인 및 점검절차를 보다 강화할 것	

14		국고여객선 건조	6,642	신규 국가보조항로 지정 전에 사전계획 철저 필요	향후 신규 국가보조항로 지정 전에 충분한 현장조사 및 의견 수렴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고, 사전에 폐업예상항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	
15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9,632	해양안전체험시설 지원기준 및 비용분담비율을 포함한 사업지침 사전 마련 필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비용 분담비율에 대한 이견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안전체험시설 건립 · 운영 지원기준, 비용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명확한 사업지침을 사전에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것	
16	농특회계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	7,924	배합사료 성능개선 등 배합사료 사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필요	성장 효율이 높은 배합사료를 개발하고 배합사료 수요를 확보하는 등 배합사료 사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	
17		친환경 어구보급	53,952	생분해어구 보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생분해어구의 생산단가 인하, 어업인의 선호도가 높은 자망 어종 중심의 어구보급 등 생분해어구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18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	2,245	지원 장비 확대 등 어가의 사업수요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지원 장비의 종류 확대, 홍보 강화 등 내역사업인 자원순환 인프라구축 사업에 대한 어가의 신청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9		연근해어선감척	134,078	감척신청 어민의 신청 철회 최소화 등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신청철회 및 그로 인한 집행부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강구 및 감척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방안 마련에 힘쓸 것	'21년 시정요구 (제도개선)
20		어업인 삶의 질 향상	2,864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여성어업인 검진기관 접근성 개선 및 검진항목의 차별성 집중 홍보 필요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요 확인 등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여성어업인특화검진사업과 관련하여 검진병원 확대의 지속적 추진, 특화건강검진 항목의 차별성에 대한 홍보 등 수검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추진 시 지역별 어업 특성 및 수요에 기반한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효용성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제고할 것	'22년 시정요구 (제도개선)
21		수산 공익직불제	93,328	어선원 직불 사업: 직불금 지급요건의 타당성 검토 필요 수산자원보호 직불: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 어선의 의무이행 관리 필요	어선원 직불금의 2023년 계획 대비 지급인원이 49% 수준이므로, 승선기간 등 지급자격요건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 수산자원보호직불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이 실제 직불금 지급 단계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할 것	'21 · 22년 시정요구 (제도개선) '22년 시정요구 (시정)
22		연안국과의 협력(ODA)	28,730	신규 ODA사업에 대한 사업공모 참여기관 확대 노력 필요	2023년 30개 사업 중 17개 사업을 공모없이 추진하였고, 12개 사업은 단독공모로 결정되었는바 사업공모 참여기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23	교특회계	새만금신항	168,179	방파제(연장) 사업의 다른 사업으로의 예산조정 최소화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다른 사업으로의 예산조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새만금 신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파제(연장)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24		마리나 항만	8,789	사업추진 부진에 따른 이월예산의 불용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이 부진하므로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의 이행을 철저히 관리 · 감독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1년 시정요구 (제도개선)
25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5,715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의 타당성 보완과 부지 확보 방안 마련 필요	사업계획 변경과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부지확보가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중단되었는바,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타당성을 보완하고 부지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26	지특회계	어촌신활력증진	44,390	사업지 선정 평가체계 개선 및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점검 철저를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	사업기간 지연과 사업선정 이후 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 선정 단계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할 것	
27	수발기금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36,300	해양쓰레기 수거 · 정화명령 제도 활성화 및 드론활용 해양쓰레기 관리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해양쓰레기 발생원인행위자에 대한 해양쓰레기 수거 · 정화명령 제도 활용에 필요한 정책 연구, 대상자 선별법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해양환경공단과 내구연한 경과 드론에 대한 교체계획을 수립하며, 드론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21년 시정요구 (제도개선)

Ⅱ. 회계·기금별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3년도 일반회계는 경상이전수입 380억 4,500만원, 재산수입 86억 6,800만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7억 6,100만원 등 578억 9,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경상이전수입 및 관유물매각대 감소 등으로 62억 2,800만원이 감소한 516억 6,900만원이 되었음.

□ 징수결정액 516억 6,900만원 중 경상이전수입으로 323억 1,500만원, 재산수입으로 91억 100만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으로 56억 9,200만원 등 총 473억 9,400만원을 수납하였고, 납부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 42억 7,5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8,668**	**9,598**	**9,101**	**-**	**497**	**433**
토지대여료	5,377	3,014	2,570	-	444	△2,807
건물대여료	191	170	163	-	7,823	△28
기타관유물대여료	33	2	2	-	-	△32
정부출자수입	-	-	-	-	-	-
기타재산이자수입	1,556	6,412	6,367	-	46	4,811
기타재산이자외수입	1,511	-	-	-	-	△1,511
경상이전수입	**38,045**	**34,643**	**32,315**	**-**	**2,328**	**△5,730**
벌금및과료	2	8	-	-	8	△2
과태료	149	117	71	-	47	△78
징계부과금	17	-	-	-	-	△17
과징금	32	12	9	-	4	23
변상금	78	176	2	-	174	△76
위약금	863	1,151	1,023	-	128	160
가산금	31	219	17	-	202	△14
기타경상이전수입	36,873	32,959	31,193	-	1,766	△5,68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761**	**5,813**	**5,692**	**-**	**121**	**△3,069**
면허료및수수료	1,282	155	154	-	1	△1,128
항공항만수입	5,832	5,051	5,033	-	18	△799
실습수입	126	11	11	-	-	△115
기타잡수입	1,521	596	494	-	102	△1,027
수입대체경비	**366**	**184**	**134**	**-**	**50**	**△232**
면허료및수수료	9	-	-	-	-	△9
기타잡수입	357	184	134	-	50	△223
관유물매각대	**1,710**	**62**	**62**	**-**	**-**	**△1,648**
기계기구매각대	9	-	-	-	-	△9
기타고정자산매각대	857	50	50	-	-	△807
토지매각대	647	-	-	-	-	△647
재고자산매각대	196	12	12	-	-	△184
유동자산매각대	1	-	-	-	-	△1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347**	**1,368**	**90**	**-**	**1,279**	**△257**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347	1,368	90	-	1,279	△257
합 계	**57,897**	**51,669**	**47,394**	**-**	**4,275**	**△10,503**

* 자료 : 해양수산부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당초 예산액은 3조 5,503억 4,4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750억 3,500만원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조 7,348억 5,700만원으로 증가함.

□ 예산현액 중 수산연구(국립수산과학원) 1,356억 5,700만원,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1,840억 7,500만원, 어업인 소득안정지원 105억 2,200만원, 출연연구기관지원 2,216억 4,400만원,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5,396억 200만원, 해양수산 행정지원 2,425억 5,000만원, 해양환경보전 1,949억 8,000만원, 해운산업 선진화 1,812억 3,500만원 등을 지출하였고,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429억 8,500만원,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183억 4,300만원 등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해양환경보전 53억 3,600만원, 해운산업 선진화 42억 6,900만원 등을 불용처리하였음.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이월액	불용액
		전년이월	초과지출	예비비	이전용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1,681	-	-	-	-	1,681	1,680	-	1
수산연구(국립수산과학원)	140,859	6,202	-	-	237 △237	147,061	135,657	5,757	5,648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211,706	25,915	-	-	3 △3	237,621	184,075	42,985	10,561
수산행정	108,574	378	-	-	1,355 △1,403	108,903	107,326	404	1,173
어업인소득 안정지원	10,522	-	-	-	-	10,522	10,522	-	-
원양협력	3,007	-	-	-	-	3,007	3,007	-	-
책임운영기관운영(국립해양측위정보원)	4,374	6	-	-	97 △97	4,380	3,758	7	614
출연연구기관 지원	222,857	-	-	-	-	222,857	221,644	-	1,213
항만개발 및 관리	28,052	-	-	-	-	28,052	28,016	29	8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112,759	456	-	-	199 △199	113,215	109,354	2,147	1,713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557,079	13,005	-	-	5,301 △6,915	568,469	539,602	18,343	10,524
해양수산연구개발	107,366	126	-	-	-	107,492	106,757	642	93
해양수산연수	5,063	-	-	-	15 △15	5,063	4,683	61	319
해양수산 정보화	46,665	1,438	-	-	80 △80	48,103	45,480	1,748	875
해양수산 행정지원	244,804	1,428	-	-	4,634 △4,585	246,281	242,550	1,275	2,456
해양환경보전	200,188	6,280	-	2,058	6,228 △4,614	210,140	194,980	9,824	5,336
해운산업 선진화	179,238	12,107	-	-	3,429 △3,429	191,345	181,235	5,841	4,269
회계간거래(전출금)	1,365,550	7,695	-	107,420	-	1,480,665	1,454,970	-	25,695
합 계	**3,550,344**	**75,035**	**-**	**109,478**	**21,579 △21,579**	**3,734,857**	**3,575,297**	**89,062**	**70,498**

* 자료 : 해양수산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 변상금 미회수채권 회수율 제고 노력 필요

○ 해양수산부는 변상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1.3%(일반회계)로 저조한 상황이므로, 추징활동 강화, 채권 보전 조치 적기 이행 등 미회수채권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변상금은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해 징수하는 세목으로,

2023년 1억 7,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7,4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5].

【 2023년도 변상금 수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변상금	78	176	2	-	174	79

5)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변상금(12-57-571)

(나) 검토의견

□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제72조[6]에 따라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해 징수하는 것으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해양수산부 소관 변상금은 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라 함),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라 함)에서 각각 세입 조치[7]되고 있는데, 변상금의 세입예산은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간 연례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해양수산부 소관 변상금에 대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의미하는 수납률은 2023년 일반회계, 교특회계 각각 1.3%, 26.0%이고, 5개년 평균도 각각 9.5%, 30.7%로 수납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6)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7) 일반회계에서는 국유재산 무단사용이, 교특회계에서는 항만시설이나 공유수면의 무단 점·사용이, 농특회계에서는 어항시설 무단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변상금에 대한 일반회계, 교특회계 및 농특회계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C/A)	수납률(C/B)
		본예산	추경(A)							
일반회계	'19	71	71	71	221	43	178	-	60.4	19.4
	'20	73	73	73	210	36	174	-	49.2	17.1
	'21	75	75	75	180	6	174	-	8.2	3.4
	'22	76	76	76	186	12	174	-	15.5	6.3
	'23	**78**	**78**	**78**	**176**	**2**	**174**	**-**	**3.0**	**1.3**
교특회계	'19	685	685	685	2,753	331	2,422	-	48.3	48.3
	'20	706	706	706	2,259	679	1,520	60	96.2	30.0
	'21	727	727	727	2,527	453	2,067	7	62.3	17.9
	'22	425	425	425	4,158	1,295	2,864	-	304.7	31.1
	'23	**771**	**771**	**771**	**3,814**	**990**	**2,820**	**3**	**128.4**	**26.0**
농특회계	'23	-	-	-	**117**	-	**117**	-	-	**0.0**

* 자료 : 해양수산부

□ 이와 같이 수납실적이 저조한 원인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주로 체납자의 재력부족, 납기 미도래 등의 사유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면서, 미회수채권 납부독촉, 재산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등을 통해 체납액 회수에 노력 중이나,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채권은 세외수입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자의 금융자산·부동산·소득출처 정보조회가 가능한 국세와는 달리 부동산세·자동차세 과세자료만 확인 가능하여 채권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함.

그런데 실제 해양수산부가 2023년에 변상금 미회수채권 건수 543건 대비 채권 보전·회수 조치를 한 경우는 149건[8]으로 다소 적은 것으로 보이고, 2023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미회수채권 역시 수납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23년 신규 변상금 권리보전 조치 내역 】

(단위: 건, 백만원)

미수납 채권		2023년도 권리보전 조치 현황							
		납부독촉		체납자 주소, 재산조회 등		신규 압류*		기타(가처분, 시효중단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43	3,111	89	540	10	170	4	21	0	0

* '23년말 기준 압류 유지중인 변상금 채권 건수는 46건, 채권액은 432백만원임.
** 자료: 해양수산부

【 2023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변상금 미수납채권 수납실적 】

(단위: 건, 백만원)

'23년 신규 위탁내역		'23년도 추징활동				수납실적	
		납부독촉		체납자 주소, 재산조회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	21	8	21	8	21	0	0

* 자료: 해양수산부

한편, 변상금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5년 이상 장기 체납한 변상금이 지속적으로 미납되고 있기 때문으로, 그 비율이 전체 미수납 변상금의 30.9%에 이르고 있음.

8) 2023년 신규로 권리보전 조치를 한 103건(납부독촉 89건, 재산조회 10건, 신규 압류 4건)과 기존 압류 유지(2023년 이전에 압류된 건) 중인 건수 46건을 합쳐 총 146건임.

【 체납발생경과기간에 따른 미수납액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

체납발생경과기간	변상금		
	건수	금액	비율
1년 미만	67	806	25.9
1년 이상~2년 미만	43	413	13.3
2년 이상~3년 미만	20	654	21.0
3년 이상~4년 미만	18	208	6.7
4년 이상~5년 미만	21	69	2.2
5년 이상	**374**	**962**	**30.9**
총 계	543	3,111	100.0

* 자료: 해양수산부

□ 미회수채권의 증가는 준법의식 약화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장기간 회수되지 않는 채권은 「국유재산법」 제73조의3[9]에 따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어 국가 세입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바, 미회수채권의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변상금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독촉장 발송, 주기적 납부기한 도래 확인 및 채권 납부 독려 등

9) **「국유재산법」** 제73조의3(소멸시효) ①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73조제2항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추징활동을 강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위탁[10]을 확대하여 채권 보전 조치를 적기 이행하는 등 미회수채권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10)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는 장기·악성채권을 위주로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음.

2) 지자체 보조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지자체의 집행 실적 제고 대책 마련 필요

○ 해양수산부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예산을 지자체에서 전액 이월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집행이 가능한 시기에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집행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개요

□ 해양수산부가 2023년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총 1조 1,368억원 규모이고, 이는 해양수산부 전체 예산(7조 9,643억원)의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소관 보조금 예산(1조 7,037억원)의 66.7%에 해당하는 예산 규모임.

【 해양수산부 소관 2023년 예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전체 예산	직접 사업	보조금		융자금	출연금	기타 (예탁금 등)
			지자체	민간			
금액	7,964,324	4,854,749	1,136,809	566,911	403,172	785,301	217,382
비율	100	61.0	14.3	7.1	5.1	9.9	2.6

* 자료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가 최근 5년 동안 집행(교부)한 보조금 예산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은 매년 1조원 내외로 편성되고 있고

해양수산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부터 증가(12.3→15.9%)하다가 2021년 이후에는 소폭 감소(15.9→14.3%)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 소관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분	전체 예산(A)	지자체 보조금(B)	비중(B/A)
2019	6,882,623	846,855	12.3
2020	7,141,791	942,175	13.2
2021	8,345,274	1,325,465	15.9
2022	7,924,156	1,193,092	15.1
2023	7,964,324	1,136,809	14.3

* 자료 : 해양수산부

□ 또한, 지자체 보조금 예산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70% 내외로 나타나고 있음.

【 해양수산부 소관 지자체 자본보조 및 경상보조 예산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분	보조금 합계 (A)	자본보조 (B)	비중 (B/A)	경상보조 (C)	비중 (C/A)
2019	846,855	672,379	79.4	174,476	20.6
2020	942,175	713,530	75.7	228,645	24.3
2021	1,325,465	991,834	74.8	333,631	25.2
2022	1,193,092	840,621	70.5	352,471	29.5
2023	1,136,809	721,586	63.5	415,223	36.5

* 자료 : 해양수산부

□ 한편, 해양수산부 소관 지자체 보조금 예산을 회계 및 기금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4개의 특별회계(농특, 에특, 교특, 지특)와 수산발전기금에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 중 특히 농특회계와 지특회계에 반영된 지자체 보조금이 각각 4,516억원과 4,615억원으로 지자체 보조금 예산 전체의 80.3%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특회계 지자체 보조사업은 연근해어선감척(1,341억원), 국가어항(2,635억원),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660억원)가 주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특회계 지자체 보조사업은 어촌뉴딜300(2,866억원), 어촌신활력 증진(444억원) 등이 핵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 회계 및 기금별 지자체 보조금 보조사업 내역(2023)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예산액	합계
일반회계	경상보조	해양보호구역관리 등 11개 사업	41,332	164,006
	자본보조	해양관광육성 등 15개 사업	122,674	
농특회계	경상보조	연근해어선감척 등 17개 사업	314,518	451,613
	자본보조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 25개 사업	137,095	
에특회계	자본보조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20,624	20,624
교특회계	자본보조	인천남항 등 2개 사업	16,246	16,246
지특회계	경상보조	수산어업행정지원 등 5개 사업	43,896	461,583
	자본보조	어촌뉴딜300 등 13개 사업	417,687	
수발기금	경상보조	해양폐기물정화사업 등 4개 사업	15,477	22,737
	자본보조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 등 2개 사업	7,260	
합 계			1,136,809	1,136,809

* 자료 :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11] 등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가 국가 외의 자(민간 또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되,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 소관 지자체 보조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예산의 14.3%인 1조 1,368억원 규모의 지자체 보조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은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요구되고 이러한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상의 사업관리 등이 필요하나 실제 예산 과정을 살펴보면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음.

□ 보조금의 집행실적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한 실적(교부율)과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에 보조금을 실제 집행한 실적(실집행율)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음.

---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해양수산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중 보조금 교부실적이 부진한 사업(교부율 80%에 미만)은 총 5개 사업으로, 이 중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 자체를 하지 못하였음.

【 2023년 집행부진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내역(집행률 80% 미만)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보조금 예산현액	보조금 교부율	부진사유
해양정원조성사업	2,150	0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타당성 재조사 진행
양식수산물전략품목육성	400	0	사업 수요 부재
내수면자원조성	7,498	79.1	설계변경 협의 등 지연
산지유통시설 지원	3,480	65.5	사업 수요 부족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 교체 지원	453	19.2	사업 수요 부족

* 자료 : 해양수산부

교부실적이 부진한 원인으로는 사업수요 예측 잘못으로 인한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 부족(양식수산물전략품목육성, 산지유통시설지원,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 또는 사업계획 미흡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등(해양정원조성)이 있는데,

사업별로 집행부진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양정원조성**[12]의 경우 충남 가로림만에 국가해양생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예산이 수시배정되었으나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타당성재조사가 진행되면서 보조금 예산을 교부하지 못한 것이고,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13]의 경우 내역사업

12) 일반회계 - 해양정원 조성사업(1031-307)

으로 추진되는 '재해대비 중층침설식 가두리지원' 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해 2차례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였으나 사업신청자가 없어 보조금 예산을 교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내수면자원조성[14]의 경우 내수면 양식어업 지원 등을 통해 내수면 어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등 내역사업들에서 토지매수 협의 및 민간보조사업자 재선정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이 발생해 사업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 보조금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고,

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15]은 내역사업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사업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수요가 부족해 보조금 예산을 교부하지 못하였음.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 교체 지원[16] 사업은 액화산소를 탑재한 활어차의 여객선 선적이 안전성 우려로 제한되면서 활어차를 여객선 적재가 가능한 장비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객선 대신 액화산소를 선적할 수 있는 화물선을 이용하거나, 연륙·연도교를 건설하는 등으로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 수요가 감소하면서 사업수요 자체가 부족하게 되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음.

---

13) 농특회계 -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3140-350)
14) 농특회계 - 내수면자원조성(3141-303)
15) 지특회계 - 산지유통시설 지원(3031-301)
16) 농특회계 -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3040-318)

□ 다음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집행부진사업(실집행률 80% 미만)을 살펴보면, 총 48개 사업(자본보조사업 39개, 경상보조사업 9개)에서 집행부진이 확인되었는데, 해당 사업들에서 발생한 이월액을 합하면 3,221억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도 61.1%에 그치고 있음.

【 2023년 집행부진 지자체 보조사업 실집행내역(집행률 80% 미만)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부처		보조사업자				비고
	예산현액	교부액(전체)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실집행률	
연안관리	4,988	4,988	4,988	2,544	2,241	51.0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가보조항로결손보상금	450	421	421	161	0	32.2	
내항여객선운임보조(지자체)	19,676	19,676	19,676	14,765	0	75.0	
해양사고예방활동지원	3,698	3,082	3,082	2,414	0	78.3	
수산물위생관리	7,433	7,432	9,908	5,991	0	60.5	
친환경양식어업육성	8,250	8,250	51,664	41,181	0	79.7	
친환경 어구보급	50,452	50,452	58,421	35,659	21,147	61.0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500	500	500	140	360	28.0	
수산공익직불제	91,533	85,005	85,005	63,756	-	75.0	
해양보호구역관리	8,669	8,669	14,583	3,974	4,582	27.3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양바이오산업화지원	**350**	**350**	**350**	**24**	**326**	**6.9**	
연안관리	800	800	904	426	275	47.1	
연안정비	**800**	**800**	**800**	**0**	**800**	**0**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지원	12,073	12,073	23,833	11,977	11,693	50.3	
해양관광육성	45,483	43,898	67,128	32,936	34,058	49.1	
세월호인양 및 추모사업지원	**18,732**	**18,732**	**28,422**	**190**	**9,290**	**0.7**	
수산식품 수출단지조성	**14,000**	**14,000**	**22,098**	**241**	**21,857**	**1**	
수산식품산업육성	7,843	7,826	9,226	1,982	7,244	21.5	

세부사업	부처		보조사업자				비고
	예산 현액	교부액 (전체)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실집행률	
수산물해외시장개척	5,685	5,685	5,685	1,295	4,255	22.8	
부산공동어시장현대화	**9,903**	**9,903**	**12,886**	**129**	**12,757**	**1.0**	
유통단계위생안전체계구축	**10,476**	**9,600**	**9,144**	**1,037**	**8,107**	**11.3**	
수산물위생관리	2,197	2,197	2,607	1,952	450	74.9	
환경친화형양식배합사료지원	**4,724**	**4,724**	**5324**	**320**	**0**	**6.0**	
친환경어구보급	3,500	3,500	4,200	2,900	1,300	69.0	
양식수산물전략품목육성	400	0	400	211	189	52.8	
관상어산업육성	6,070	6,070	9,315	4,191	5,124	45.0	
수산부산물자원순환기반구축	1,545	1,545	1,545	634	908	41.0	
내수면자원조성	7,498	5,931	6,231	4,111	2,026	66.0	
자율관리어업육성	5,055	5,055	6,164	4,225	1,921	68.5	
어촌활력기반구축	3,010	2,910	3,351	2,416	684	72.1	
귀어귀촌활성화	**1,500**	**1,500**	**1,500**	**50**	**1,450**	**3.3**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업	650	650	650	249	400	38.3	
수산장비(임대)활용(지자체)	1,800	1,800	1,917	417	1,300	21.8	
어업인삶의질 향상	1,400	1,400	2,024	932	1,092	46.0	
양식등 재해대책비	4,779	4,779	5,701	3,549	2,118	62.3	
수산정보화(정보화)	640	624	624	277	67	44.4	
인천남항	14,000	14,000	20,583	12,646	7,937	61.4	
해양및수자원관리	54,544	54,544	83,900	45,497	35,220	54.2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1,750**	**1,750**	**3,500**	**0**	**3,500**	**0**	
산지유통시설지원	3,480	2,280	3,522	1,195	2,327	33.9	
어촌신활력증진	42,500	40,618	40,618	17,864	22,754	44.0	
어촌뉴딜300	310,157	285,130	400,001	303,937	92,654	76.0	
제주항	2,500	2,500	5,594	3,878	1,371	69.3	
화순항	7,875	7,875	8,975	5,678	3,297	63.3	
추자항	2,294	2,294	4,450	2,765	1,685	62.1	
항만시설유지보수(제주)	11,500	11,500	13,500	10,682	2,388	79.1	
해양폐기물정화사업	2,925	2,925	10,026	7,316	1,517	73.0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복원사업	4,744	4,744	5,694	3,258	2,436	57.2	
계	824,831	784,987	1,080,640	661,972	335,107		

* 자료 : 해양수산부

□ 개별 사업별로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자 선정 후 각종 인허가 등 사전 행정 절차의 지연, 국비와 매칭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방비 확보의 지연, 주민 민원, 이해관계자 간 이견 및 건립사업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및 사업자의 사업 포기, 절대공기 부족 등 다양한 사유가 집행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보조사업의 집행부진 원인별 분류 】

집행부진원인	보조사업
사전 행정절차 지연	유통단계위생안전체계 구축, 해양및수자원관리, 산지유통시설지원, 어촌신활력증진 등
지방비 확보 지연	수산물해외시장개척, 귀어귀촌활성화
주민민원, 이해관계자 이견	부산공동어시장현대화, 어촌뉴딜300, 제주항, 화순항
설계변경	관상어산업육성, 내수면자원조성
사업자의 사업포기	환경친화형양식배합사료지원, 수산정보화 등
절대공기 부족	연안관리, 수산물위생관리, 양식수산물전략품목육성

이 중 특히 예산이 전액 이월되거나 실집행률이 20% 미만인 사업으로, 해양바이오산업화지원(집행률 6.9%), 연안정비(0%), 세월호인양 및 추모사업지원(0.7%), 수산식품 수출단지조성(1%), 부산공동어시장현대화(1%),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구축(11.3%),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지원(6.0%), 귀어귀촌활성화(3.3%),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0%) 등을 들 수 있는데,

해당 사업들의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주로 관계기관 협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업순연, 이해관계자 민원 조정 등에 따른 설계변경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부실했거나 사업준비가 미흡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지자체의 집행이 부진한 주요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보조사업자(지자체)				집행부진 사유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실집행률	
해양바이오산업화지원	350	24	326	6.9	사전 행정절차(중앙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 진행 등으로 인한 사업 순연
연안정비	800	0	800	0	강릉 순긋·사근진지구 국민안심해안사업 행정절차(기본계획 변경 등), 전북 고창 명사십리지구 국민안심해안사업 행정절차(재정투자심사, 계약심사 등) 기간소요에 따른 설계 착수 지연
세월호인양 및 추모사업지원	28,422	190	9,290	0.7	(화랑유원지) 설계용역 행정절차(공법심의, 조달청 적정성 검토 등) 기간 소요 (추모시설) 공사 착공 전 행정절차(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협의에 따른 설계도서 변경으로 공사 발주 지연) 등으로 실집행부진
수산식품수출단지조성	22,098	241	21,857	1	(전남) 적정성 검토('19.6월, KDI)에 따른 기본계획 재수립('20.5~12), 설계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협의 등 관계기관 협의기간 증가(9→17개월) 등으로 착공 지연 (부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문화재지표·표본조사 등 12개 사전행정절차 이행('22.~'23.11)으로 설계 지연
부산공동어시장현대화	12,886	129	12,757	1.0	설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설계 내용변경 요구 등 이견 발생 및 협의·조정하는 과정에서 설계 지연('19~)됨에 따라 착공 지연
유통단계	9,600	1,144	8,456	11.9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은 위판

세부사업	보조사업자(지자체)				집행부진 사유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실집행률	
위생안전체계구축					장 현대화 모델 구축, 저온·친환경 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냉동·냉장 창고 지원 사업 등 시장, 시설 위주의 사업이며, 재정투자심사,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에 따라 실집행 부진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지원	5324	320	0	6.0	양어사료 공장 시설사업 민간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예산 불용(44억원)
귀어귀촌활성화	1,500	50	1,450	3.3	(귀어학교) · '귀어학교 생활관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정('23. 3.~)에서, 일조권 보장 등을 위한 설계변경과 건설자재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가 대폭 증가(15억 → 19.9억)하였고, 추가 사업비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12월)됨에 따라 명시이월 후 사업 추진 · 위 사유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이 변경(별동 증축 → 수평 증축)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기존 건물과의 배치 및 귀어학교 교육생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변경 및 사업비 추가에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연도 내 집행부진 (우수어촌계 지원) · '23년 처음 공모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표 등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보조금이 9월에 교부되고, 지자체 추경 편성과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 추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3,500	0	3,500	0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행정절차 추진 및 기본·실시설계 일정 지연으로 이월액 발생

□ 또한, 이 같은 집행부진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집행

실적 등을 점검하여 보조금을 교부해야 하는 해양수산부가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해온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7] 등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위 집행부진사업들 중 다수에 대하여 예산 현액을 전액 교부하였고, 이 중에는 수산식품수출단지조성,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등 지자체가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으며,

---

1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 보조금 교부 시 점검사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고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조건 등 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친화형양식배합사료지원의 경우 보조금이 지자체에 전액 교부된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사업 자체가 취소되기도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예산 교부로 인해 보조금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된 상황이 확인되고 있음.

□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을 실제 지자체에 교부할 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취지를 감안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집행이 가능한 시기에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설계 단계에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사업 수행 단계에서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점검·관리하며, 단년도 사업으로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을 확대 조정하는 등 지자체의 실집행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해양정원 조성 : 사전계획 수립 철저 필요

○ 해양수산부는 수차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한 사례를 고려하여, 향후 추진하는 해양정원 조성사업에서는 성격·기능이 유사한 사업을 중복하여 포함하지 않고, 집행 여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해양생태가치가 높은 충남 서산의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 보전과 관리에 기반한 해양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상생형 발전 선도모델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21억 5,0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음[18].

【 2023년도 해양정원 조성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양정원 조성	2,150	2,150	-	-	2,150	-	-	2,150	2,000

18)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해양정원 조성(1031-307)

(나) 검토의견

□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충남 서산시의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을 거점으로 친환경·생태관광 등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국비 65% : 지방지 35%)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1,236억원임.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개요 】

구분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위치	충남 서산시, 태안군 가로림만 일대(159.82㎢)		
사업주체	해양수산부, 충청남도(서산시)		
사업기간	'23 ~ '27년		
총사업비	총 1,236억원(국비 834억원, 지방비 402억원)		
예산집행	년도	예산액(백만원)	집행액
	2022	3,585(수시배정)	0
	2023	2,150(수시배정)	0
사업목적	- 해양보호구역을 거점으로 친환경·생태관광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자체 대표 브랜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자료 : 해양수산부

□ 동 사업은 2019년 기본계획 수립 후 같은 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3번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 및 그에 따른 총사업비 등 변경으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중단되고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예산 역시 2022년과 2023년 수시배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액(2022년 35억 8,500만원, 2023년 21억 5,00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음.

- 구체적인 경과를 살펴보면, 본 사업은 2019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9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율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1차 사업계획 변경), 2021년 12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2022년 수시배정예산을 편성했으나 2022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을 중단하고 재차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2차 사업계획 변경).

이후 2022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의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받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50조[19]에 따라 타당성재조사에 들어갔으며, 타당성재조사 진행 중인 2023년 6월 최종 사업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음(3차 사업계획 변경).

【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 추진경과 】

시 기	내 용
2019. 4.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완료(충남도)
2019. 10.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신청(해수부 → 기재부) - 총사업비: 2,715억원
2019. 12.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19.12.19.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9.	기재부 협의 거쳐 총사업비·국고보조율 등 **사업계획 변경 제출** - 총사업비 2,715억원, 일괄 70% 보조 → 총사업비 2,448억원, 평균 64% 보조
2021. 12.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예타 통과를 전제로 2022년도 수시배정예산 35억 8,000만원 편성

19)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시 기	내 용
2022. 1.	**사업계획 변경 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단 요청** * 22.1.27. 예비타당성조사 중단
2022. 5.~	**타당성 재조사 수행** * '22. 5.19. ~, KDI - 총사업비: 1,577억원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않았으나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타당성 재조사 관련 국가재정법 규정에 근거하여 재조사 추진
2022. 12.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타재 통과를 전제로 2023년도 수시배정예산 21억 5,000만원 편성
2023. 6.	**사업계획 변경안 검토·제출(충남도 → 해수부 → KDI)** - 총사업비: 1,236억원
2023. 12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타재 통과를 전제로 2024년도 수시배정예산 20억원 편성
2024. 4	KDI 경제성 분석 완료
2024. 6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실시
2024. 하반기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 (예정)

* 자료 : 해양수산부

□ 한편,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2,448억원에서 1,236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2025년에서 2023~2027년으로 변경되었고, 사업내용도 16개 사업에서 5개 사업으로 축소되었음.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현황 】

시 기	예비타당성조사 중 변경('20.9)	타당성 재조사 추진시 변경('22.5)	최종안('23.6)
총사업비	2,448억원 (국비 1,555/지방비 893)	1,577억원 (국비 1,024/지방비 553)	1,236억원 (국비 834/지방비 402)
사업기간	'21 ~ '25년	'22 ~ '26년	'23 ~ '27년

* 자료 : 해양수산부

- 동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최초 세부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던 16개 프로그램의 경우 생태체험시설, 관광시설 외에 휴양시설, 교육·문화·예술시설, 요식업시설, 상품개발 등 그 종류가 다양하여 통합이 가능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지방재정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은 제외하고 성격·기능이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한 것으로 보여짐.

시 기	예비타당성조사 중 변경('20.9)	타당성 재조사 추진시 변경('22.5)	최종안('23.6)
사업내용	**16개 세부사업** 1 해양정원센터 2 오지리갯벌 복원 3 갯벌정원 4 가로림만 생태학교 5 점박이물범 홍보관 **6 해양문화예술섬** **7 예술창작공간** **8 해양힐링숲** **9 등대정원** 10 가로림만 전망대 11 가로림만 탐방로 12 화합의 다리 **13 식도락 거리** **14 탐방뱃길** **15 가로림만 투어버스** **16 브랜드 및 상품개발**	**12개 세부사업** 1 해양정원센터 2 오지리갯벌 복원 3 갯벌정원 4 가로림만 생태학교 5 점박이물범 홍보관 6 해양문화예술섬 7 예술창작공간 8 해양힐링숲 9 등대정원 10 가로림만 전망대 11 가로림만 탐방로 12 화합의 다리	**5개 세부사업** 1. 가로림만 보전센터 2. 서해갯벌생태공원 3. 점박이물범관찰관 4. 생태탐방로 5. 생태탐방뱃길
변경사유	○ 세부시설 기능 보완 및 공간 재배치, 운영 프로그램 구체화 ○ 타 보조사업과 비교시 국비부담율 변경 필요 등	○ 지방재원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제외 (식도락거리 조성 등) ○ 지방이양된 해양관광자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 폐지	○ 전시, 교육, 체험, 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성격·기능이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

이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사업 구체화 및 유사 사업에 대한 통폐합 등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해양수산부 협의 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임.

2024년 하반기로 예정된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이후에는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임.

□ 특히, 해양수산부는 2023년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에 따라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차별화된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인 바, 현재 사업 준비 중인 포항 호미곶(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 전남 순천·보성 여자만(예비타당성조사 준비 중)에서는 가로림만 해양정원의 사례를 고찰하여 사업계획이 자주 변경됨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성격·기능이 유사한 사업을 중복하여 포함하지 않고, 집행 여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
2. 해양생태계 연구시설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시설
제54조(국고보조)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의2. 제43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의 설치·운영

4)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준설토투기장 확보 등 사업여건에 대한 검토 강화

○ 해양수산부는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의 대상지 선정 시 선정 및 설계 완료 후 사업이 보류되지 않도록 준설토투기장 확보 여부 등 사업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오염도가 개선되지 않은 해역에 대해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은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실시설계, 수거 및 처리, 사후관리 등을 통해 해양오염퇴적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33억 5,200만원 중 132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000만원을 불용하였음[21].

【 2023년도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13,352	13,352	-	-	13,352	13,202	-	150	19,752

21) 회계(기금)-세부사업: 일반회계-오염퇴적물 정화·복원(1033-305)

(나) 검토의견

(1) 정화사업지 선정 시 준설토투기장 확보에 대한 확인 필요

□ 본 사업은 해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반폐쇄성 해역의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해양생태계를 회복하려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2008년부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22]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수탁사업자 해양환경공단)으로 오염퇴적물을 정화하고 있음[23].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은 해역에 대한 ① 오염퇴적물 분포현황조사, ② 정화대상지 선정, ③ 실시설계, ④ 오염퇴적물 수거·처리, ⑤ 사후관리의 단계로 진행됨.

- 우선 조사 대상해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오염도 평가 등을 통해 정화 필요 여부를 결정하고(오염퇴적물 분포현황조사),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해 정화사업지를 결정하며(정화사업지 선정),

---

2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6조(실태조사) ① 해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3.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제16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① 해역관리청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양오염퇴적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관리)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양오염퇴적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재오염 여부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 재오염 등이 우려되는 경우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환경공단과 위·수탁계약 체결

정화사업지에 대한 측량조사, 수질분석, 퇴적물분석 등을 통해 구역별 수거물량·사업기간·사업비 및 수거공법·중간처리·최종처분 방안 등을 도출하고(실시설계),

실시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해역에 대한 오염퇴적물을 수거해 준설토 투기장에 배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종 처리(수거·정화)한 후, 일정기간 동안 해양환경 모니터링(사후 관리)을 실시하는 형태임.

【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사업추진 절차 】

사업 절차	수행내용	특이사항	기타(비고)
오염퇴적물 분포도 조사 (타당성조사)	○ 오염도 확인 (오염범위, 깊이 등)	○ 52개 해역(105,024천㎡)조사완료('04~'23)	연구기관 (KIOST, KOEM 등)
↓			
정화사업지 선정	○ 오염도(30), 추진여건(50), 해역 중요도(10), 주변 여건(10)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사업의 효과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해역관리청 (지자체, 지방청)
↓			
실시설계	○ 정화사업 수행을 위한 상세설계 -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 - 기본 및 실시설계 - 공사비 및 공정산정	○ 현장조사결과 바탕으로 구역별 수거심도 및 수거면적, 수거물량 등 산정	엔지니어링업체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 오염해역에 대한 수거, 정화처리, 운반, 최종처리 등 ○ 2차 오염방지 ○ 폐기물 처리 ○ 사업중 모니터링	○ 수거장비 : 펌프, 밀폐형 그랩, 밀폐형 버킷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체
↓			
해양환경 모니터링	○ 사업의 효과 확인 ○ 사업 전·후의 변화 ○ 개선사항 발굴	○ 사업완료후 5년간 (3년후 지속여부 결정)	연구기관 등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지정업체)

* 자료: 해양환경공단

□ 동 사업에서 오염퇴적물의 수거·정화는 수거된 오염퇴적물을 준설토투기장에 투기하거나 해양에 배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폐기물의 해양배출은 런던협약[24]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해양배출이 가능한 해역 역시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준설토투기장으로의 투기가 오염퇴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음.

따라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준설토투기장이 확보될 필요가 있고, 사업 전 사용 가능한 준설토투기장의 존재 여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그런데 지난 5년간 동 사업의 수행내역을 살펴보면, 준설토투기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확보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정화사업지로 선정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가 지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설계를 수행한 21곳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13곳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3곳은 2024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나, 나머지 해역 중 5곳(마산항 내호, 동해항, 묵호항, 부산 감만항, 울산 온산항 일부)은 실시설계 후 사업 보류 중인 상황임.

이 중 마산항 내호는 지역 환경단체 등의 민원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었고, 동해항, 묵호항, 부산 감만항의 경우 사업대상지 인근에 사용 가능한 준설토 투기장이 부재한 것이 사업착수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24)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런던협약)」, 우리나라는 1992.12월에 가입, 1994.1월에 발효

또한,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2024년 착수사업인 포항 구항의 경우에도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준설토투기장의 수용능력 부족으로 인해 2025년까지 오염퇴적물을 처리한 후, 2026년에는 사업을 일시 중지하고 새로운 준설토투기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등,

준설토투기장의 미확보 또는 수용능력 부족이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지*별 사업 현황 】

연번	대상해역	실태조사	실시설계	수거·정화	상태	비고
1	부산 용호만	2008	2008 2018	2009~2011 2020(부산시)	수거처리 완료 (13개소)	
2	여수 신항	2009	2010	2011		
3	울산 방어진항	2004	2011	2012~2013		
4	부산 남항	2006	2008	2009~2014		
5	진해 행암만	2006	2014	2015~2017		
6	부산 다대포항	2011	2015	2016~2017		
7	울산 장생포항	2006	2014	2015~2019		
8	포항 동빈내항	2015	2016	2017~2019		
9	여수 구항	2005	2016	2017~2020		
10	통영 강구안항	2016	2018	2020~2021		
11	통영 동호항	2016				
12	통영항	2006				
13	부산 감천항	2009	2018	2019~2021		
14	부산 북항	2006	2020	2021~2025	사업 중 (3개소)	
15	포항 구항	2020	2023	2024~2025		
16	울산 온산항	2005	2019	2024~2027		
17	마산항 내호	2019	2020	-	설계완료 (5개소)	보류 중
18	울산 온산항(추가)	2005	2023	-		보류 중
19	동해항	2017	2021	-		보류 중
20	묵호항	2004	2021	-		보류 중
21	부산 감만항	2006	2022	-		보류 중

* 주 : 분포현황조사 이후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21개 해역 대상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재정리

□ 2023년 12월 감사원은 해양환경공단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25]에서 해양수산부가 준설토 처리방안 및 준설토투기장 활용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 사업대상지 우선순위 평가항목에서 준설토 최종 처분 방안의 확보 여부에 대한 배점을 10점(100점 만점)으로 하여 준설토투기장 확보가 불확실해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였다는 지적을 하였음.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 평가표(해양수산부) 】

우선순위 결정 기준		고려요소		환산
항목	점수	세부 항목	배분율	점수
정화사업의 타당성 정도 (해양퇴적물의 오염 정도)	30	1)유해화학물질정화지수(CI_{HC}) 평가 순위	50	15
		2)부영양화정화지수(CI_{ET}) 평가 순위	50	15
정화사업의 추진여건 (지자체의 의지)	50	3)육상 오염원 유입차단 및 관리 수준	30	15
		4)최종처분 방안(해양투기 제외) 확보 여부	**20**	**10**
		5)이해관계자 동의 여부	20	10
		6)사업효과 지속을 위한 사후 관리계획	30	15
해역의 중요도	10	7)해역 특성	40	4
		8)민원발생, 언론보도, 기타 사회적 중요도	30	3
		9)해역이용자수 등 해역이용 정도	30	3
주변 여건 (1km 이내)	10	10)주거시설 여부	30	3
		11)관광시설 여부	50	5
		12)상업/어업 시설 여부	20	2
계				100점

* 주 : 음영처리된 항목은 평가위원이, 그 밖의 항목은 내부기준에 따라 해수부 담당자가 평가함.
* 자료 : 해양수산부

- 실제로 지난 5년간 정화사업지로 선정된 해역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사업여건 검토 결과서를 살펴본 결과 감사원의 지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25) 감사원,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사업대상지 선정절차 미흡」, 2023.12.

일부 정화사업지에서 준설토투기장 확보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정화사업지로 선정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데,

동해항의 경우 별도 준설토 처리방안이 없다고 기재하였으며, 울산 온산항 및 묵호항에 대해서도 준설토 처리방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찾을 수 없는 등 준설토 처리방안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음에도 모두 정화사업지로 선정되어 2023년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사업 착수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5년간 선정된 정화사업지별 사업여건 검토내용 】

주요 검토사항(공통)
○ 대상해역의 현황 : 면적, 주요시설·사업체 현황, 주변인구, 개발현황 등 ○ 정화필요성 : 과거 정화실시 여부, 항내 수질개선·유지 필요성 등 ○ 사전준비 : 이해관계자 의견, 육상오염원 차단 여부, 지자체 추진의지, 민원, 언론 보도, 기타사항으로 **준설토투기장 확보 여부** 등 ○ 사후관리 및 홍보 관련 사항

정화사업지	준설토투기장 관련 검토내용	사업추진현황 (2024년)
부산 북항	준설토 투기장 확보 : 부산항 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	2024년 완료예정
부산 감만항	준설토 투기장 확보 : 부산항 신선대 투기장, 신항 투기장	**사업 보류**[1]
마산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 시 **NGO 등의 의견에 대해서만 검토**	**사업 보류**[2]
동해항	**별도 준설토 처리방안 없음**	**사업 보류**
포항구항	수거·처리한 퇴적물은 해상 운반 후 영일만 항만배후부지 **투기 가능 여부 검토**	2024년 수거·정화 착수
묵호항	**검토내용 없음**	**사업 보류**
울산 온산항	**검토내용 없음**	2024년 수거·정화 착수[3]

* 주 : 1) 부산항 감만부두는 부산항 신항 내 준설토투기장이 조성계획 단계로 '26년 이후 투기가능 예상
2) 마산항의 경우 지역 환경단체 등 민원에 따른 협의기간 소요로 사업 보류('25년 착수계획)
3) 울산 온산항은 2019년 실시설계 후 2023년 추가 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에 수거·정화 착수

* 자료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재구성

□ 이와 같이 준설토투기장의 미확보 또는 수용능력 부족으로 인해 실시설계 이후 사업착수에 이르는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해역상황 변동으로 인해 수거해야 할 퇴적물의 양이나 사용되는 공법이 변경될 수 있고, 예산은 실시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편성되므로 예산편성의 정밀성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정화사업지 선정 시 준설토투기장의 확보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착수한 해역에 대해서는 준설토투기장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사업완료 해역에 대한 중장기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 민간위탁)는 정화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해역에 대해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해수수질·해양생태계 보호 기준[26] 및 정화지수(유해화학물질, 부영양화물질)[27] 충족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 중 주변해역의 2차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후 해양환경 개선 효과를 분석해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기 위함임.

사후관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화사업 완료 후 5년간 매년 1회 이상 수행하되, 3년간 조사를 수행한

26) 「해양환경기준」(해양수산부 고시)
27)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범위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별표1, 2 및 제6조

결과 더 이상 오염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나머지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해양환경공단은 현재까지 정화가 완료된 13개 해역 중 6개 해역에 대해 사후관리를 완료하였고, 7개 해역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23년 사후관리를 진행한 7개 해역 모두 정화사업 이전에 비해 해양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만, 일부 사업지에서 아직 정화기준치를 상회하는 오염도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 추가 오염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 등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장생포항은 사업 후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가 사업 후 4점(정점별 평균치)으로 상승하여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화사업 범위[28]에 있고, 포항 동빈내항은 사업 전 각 11점, 13.9점이던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 및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가 사업 후 각각 4점, 9.6점으로 낮아져 사업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정화사업 범위에 있으며, 통영항의 경우에도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가 사업 전보다 사업 후에 상승하는 등 해역 내 오염이 지속되고 있음.

28)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 2 이상(항만구역인 경우 4 이상),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 6 이상

【 2023년 사후관리 대상 7개 해역 검토현황 】

조사해역 (기간)	구분	해저퇴적물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
장생포항 ('20~'24)	사업전	**2~10(평균 3)**	5.0~16.0(평균 9.2)
	사업후	**1~10(평균 4)**	4.0~7.0(평균 5.2)
동빈내항 ('20~'24)	사업전	**1~22(평균 11)**	**1.0~18.0(평균 13.9)**
	사업후	**3~7(평균 4)**	**6.0~14.0(평균 9.6)**
여수구항 ('21~'25)	사업전	1~5(평균 3)	0.0~6.0(평균 3.2)
	사업후	0~30(평균 2)	0.0~9.0(평균 3.1)
감천항 ('22~'26)	사업전	0~132(평균 23)	0.0~7.0(평균 2.2)
	사업후	1~6(평균 3)	0.0~6.0(평균 4.0)
통영항 **(3개소 통합관리)** ('22~'26)	사업전	0~7(평균 4)	**1.0~7.0(평균 4.2)**
	사업후	1~5(평균 3)	**5.0~9.0(평균 8.1)**

* 자료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재구성

□ 해양수산부는 인근 해역에 육상오염원의 존재 등으로 해양오염이 계속되고 있어, 오염도가 나타나는 해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관할 해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육상오염원 차단 등 해역 내 오염을 지속시키는 원인을 제거·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업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사업완료해역에 대한 오염이 재발 또는 확대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연안정비·해양 및 수자원 관리 : 연안정비사업의 사업효과성 제고와 평가방식 개선 필요

○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의 경우 연안침식 평가 결과 정비사업 이후 오히려 침식등급이 하락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으므로 사업구간 선정방식의 검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평가방식에 있어서 사업추진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지역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연안침식 평가로 바꾸는 등 등급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연안정비 사업」은 해일, 파랑 또는 연안의 침식 등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연안의 쾌적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국가(지방해양수산청)가 시행하는 사업은 '연안정비(일반회계)[29]'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해양 및 수자원 관리(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30])'의 내역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연안정비 사업」은 2023년 예산현액 590억 8,100만원 중 507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74억 2,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2,200만원을 불용하였고,

29)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연안정비(1034-302)
30) 회계(기금)-세부사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해양 및 수자원 관리(1062-301)

「해양 및 수자원 관리 사업」은 2023년 예산액 545억 4,400만원 중 545억 4,4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2023년도 연안정비·해양 및 수자원 관리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연안정비(일반회계)	53,944	6,037	△900	59,081	50,735	7,424	922	55,221
해양 및 수자원 관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4,544	-	-	54,544	54,544	-	-	61,075

(나) 검토의견

□ 「연안정비 사업」은 ①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② 연안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및 ③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함.

해양수산부는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9)'을 수립하여 전국 283개 연안에 대한 정비사업(2조 3,000억원 규모)을 추진하고 있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24개 사업에 4,594억원(국비 3,808억원, 지방비 786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 제3차 기본계획 연안정비사업 추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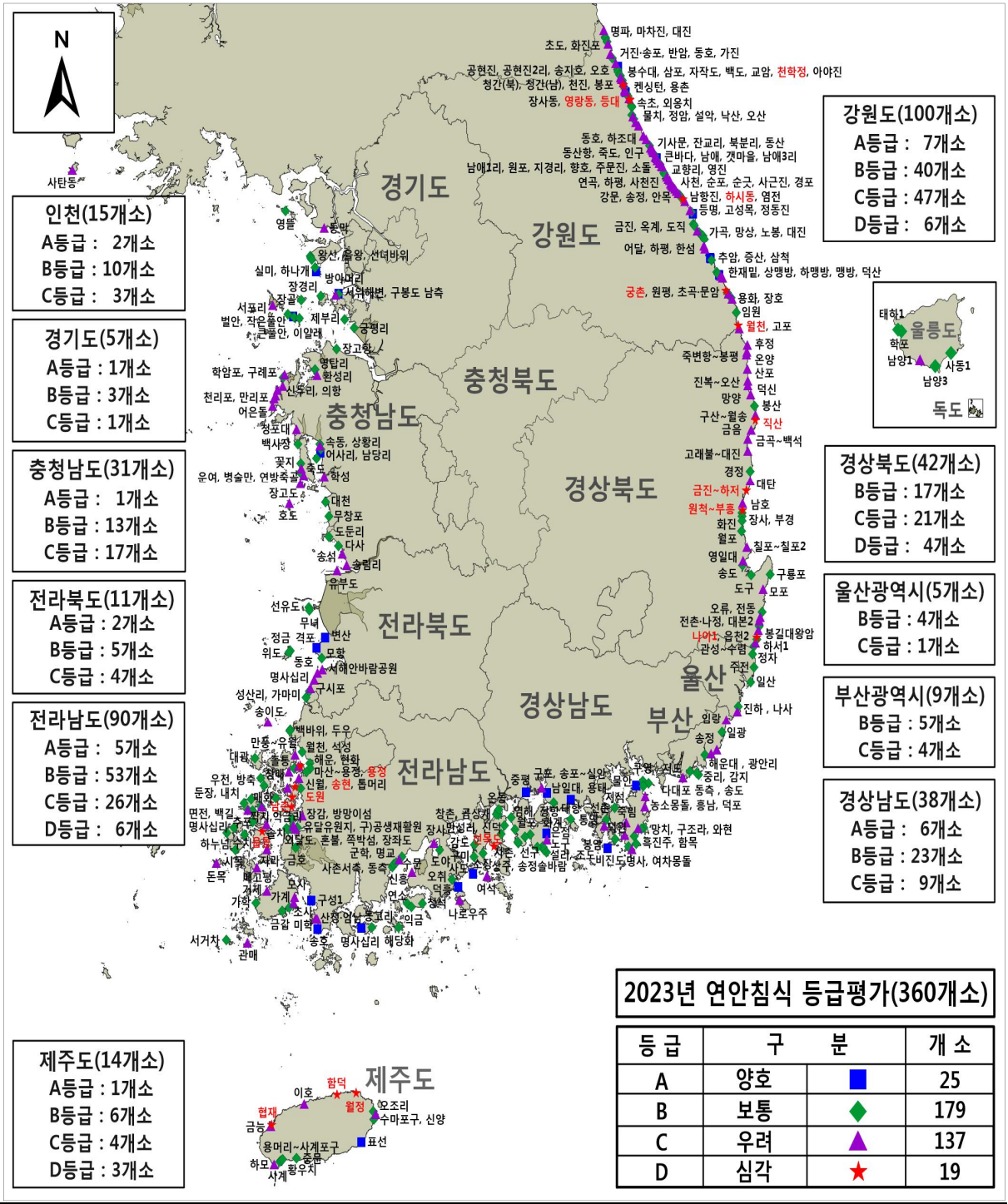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총 계		국가 사업		지자체 사업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3차 기본계획	283	23,009	49	12,745(55.4%)	234	10,264(44.6%)

2023년에는 강릉 정동진해변 등 72개 지구(해양수산부 19개소, 지방자치단체 53개소)에 대한 「연안정비 사업」을 진행하였음.

□ 해양수산부는 체계적인 연안정비를 위해 매년 전국 주요 연안 360개소를 대상으로 백사장, 사구, 해안선의 변화 등을 조사하고 침식 수준을 평가 및 등급화(A(양호), B(보통), C(우려), D(심각))하는 연안침식 등급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2023년도 연안침식 등급평가 결과 및 기준 】



등 급	평가점수	평 가 내 용
A(양호)	80점이상	안정적 퇴적경향이 나타나며 백사장이 잘 보전된 지역
B(보통)	60~80점미만	침·퇴적 경향이 나타나지만 안정적 해빈유지 지역
C(우려)	40~60점미만	침식으로 인해 백사장 및 배후지의 재해발생 가능지역
D(심각)	40점미만	지속적인 침식으로 백사장 및 배후지의 재해발생 위험 지역

* 자료: 해양수산부

□ 그런데 「연안정비 사업」 준공 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전후의 연안침식 등급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정비사업을 진행한 이후에도 C(우려)등급으로 분류되거나 오히려 평가등급이 내려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31].

‘경주 나정해수욕장지구’(사업시행 주체: 해양수산부)는 3년간 1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중방파제를 설치하였으나 방파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부 구간에서 월파가 발생하여 정비 이후에도 여전히 재해발생 가능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서천 유부도지구’는 자연해안의 사구 보호를 위해 침식방지 울타리를, ‘무안 용정지구’ 및 ‘송현지구’는 토사 포락 방지를 위해 호안을 각각 설치하였으나 사업 미시행 구간에서 계속해서 침식이 발생하여 정비사업 이후 오히려 등급이 하락하였음.

【 최근 5년간 연안침식 등급평가 하락 사례[32] 】

구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공법	등급평가 결과		사업시행주체
				정비사업 전	정비사업 후	
경주 나정 해수욕장지구	2016년~2019년	181억원	수중방파제	C	C	해양수산부
서천 유부도지구	2022년	6.5억원	침식방지 울타리	B	C	지방자치단체
무안 용정지구	2020년~2022년	30억원	호안	C	D	
무안 송현지구	2019년~2021년	49억원		B	D	
무안 신월지구	2019년~2021년	30억원		미시행	C	
무안 만풍~유월지구	2019년~2021년	25억원			C	

* 자료: 해양수산부

31) 참고로 2019년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준공 지역 44개소 중 사업시행 이후 등급이 하락한 지역이 7개소(16%)에 달함.

□ 이와 같이「연안정비 사업」 시행 이후 침식등급이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경우 재정 여건에 의해 시급한 구역에 한정하여 사업구역이 선정됨에 따라 침식등급을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구간을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연안정비 사업 대상구역 선정 절차 】

기본계획 수립	사업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	대상사업 확정 및 세부계획 수립
- 시·도시자 의견 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년도 대상사업 수요조사	- 우선순위, 시급성 등 재검토	- 예산 등 감안하여 당해연도 사업 선정 및 관계부처 협의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재정리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면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연안침식이 발생하는 구간을 정확히 설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에 따라 사업 미시행 구간이 발생한다는 점과 해양수산부 인력 부족으로 현장조사가 어려워 사업구역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임.

-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연안정비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30%를 부담해야 하므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먼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 미시행 구간에서 계속해서 침식이 발생함.

32) 정비사업 이후에도 침식등급이 C등급으로 분류된 사례를 포함함

□ 둘째, 현행 연안침식 등급평가는 동해안과 서·남해안의 연안 환경 여건이 다르고 침식·침수 유형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안에 대해 동일한 평가지표 및 배점비율을 적용하고 있어[33] 침식유형에 따른 정확한 사업효과 측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해안 토사의 침식 방지를 위해 호안을 설치할 경우 포락에 따른 침식은 방지되지만 사업 미시행 구간에 대한 연안침식등급이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34].

□ 따라서 특히, 제3차 계획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구수(234개)가 국가 사업 지구수(49개) 보다 많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수요조사 이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적합한 사업구간 설정을 위하여 현장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연안침식 등급평가는 사업구역 및 우선순위 선정의 기준[35]이 되고 정비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침식유형에 따라 평가지표별 비중을 달리 적용하는 등 평가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33) 해빈 폭 변화(30%), 단면적 변화(20%), 침식 안정률(10%), 국부침식(20%), 배후지취약성(20%)
34) 무안 신월지구와 만풍~유월지구의 경우 호안 설치 이후 포락 피해는 감소했지만 사업 미시행 구간에서 일부 침식 발생
35) 국가가 시행하는 연안정비 사업의 경우 연안침식등급이 우선순위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
* 연안정비 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 연안침식등급(40%), 연안재해 위험평가등급(20%), 사업시급성(10%), 정책방향 부합성(5%), 지방자치단체·주민 의지(5%), 정비사업구역(10%), 연안정비 사업 집행실적(10%)

- 해양수산부는 2024년 12월까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대상사업 중 미추진 사업 재검토, 신규 사업지 추가, 정책개선 과제 발굴 등을 포함한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중이므로[36],

연안의 침식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연안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경계획에 적정한 사업구역 설정을 위한 현장조사 강화 및 지형별 특성을 반영한 등급평가 방식 변경 등 개선방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36) **「연안관리법」 제23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고시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 전문인력 사업의 지원자 수 확대방안 마련 필요

○ 해양수산부는 지원자 수가 부족하여 양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연내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프로그램별 예산을 배정·집행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R&D) 사업」은 국내 유일의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서 기관고유 역할과 책임(R&R) 수행에 필수적인 해양과학기술원 4대 전략목표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기후·해양환경 변화 대응, 해양전략자원 개발, 연구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 829억 8,900만원 중 826억 6,900만원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출연하였음.

【 202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R&D)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R&D)	82,989	82,989	-	-	82,989	82,669	-	320	70,082

(나) 검토의견

□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R&D) 사업」 예산으로 수행하는 8개 기본사업 중 하나로 증가하는 해양법 관련 분쟁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편성된 4억 2,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2023년도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결산 현황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사업	420	420	-	-	420	420	-	-	420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출연사업으로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이 시작된 2022년 이후 동사업은 주요 교육프로그램의 지원자 수가 부족하여 추가 모집[37]을 진행하는 등 양성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① 해양법 전공 대학원생 연구지원의 경우 2023년도 지원자 전원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고,

37) (2022년) 1차 모집 2022.4.18.~4.29. 선정 2022.5.12., 추가모집 2022.7.4.~7.8., 추가선정 2022.7.26.
(2023년) 1차 모집 20221.25.~2.22., 선정 2023.3.10., 추가모집 2023.3.14.~3.27., 추가선정 2023.4.13.

② 해양법 해외 단기 아카데미 참가 지원의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2022년에는 계획 인원 5명 대비 4명이 수료했으나, 2023년에는 계획인원 5명 대비 1명이 선발되는 데 그쳤음.

③ 국제기구 인턴쉽 지원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모두 국제기구의 인턴쉽 프로그램에 합격한 인원이 없었고, ④ 해양법 해외연구기관 단기연수 지원의 경우에도 해당 연도 연수자가 없었으며,

⑤ 해양법 관련 자유 주제 공동연구 지원의 경우 2023년도에는 지원자 전원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음.

【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요 프로그램의 지원·선발 현황 】

구분	2022년 선정자수(지원자수)	2023년 선정자수(지원자수)
① 해양법 전공 대학원생 연구지원	8명(10명)	9명(9명)
② 해양법 해외 단기 아카데미 참가 지원	5명(10명) -> 최종 4명 수료	1명(7명)
③ 국제기구 인턴쉽 지원	1명(2명) -> 인턴쉽 미선정	0명(3명)
④ 해양법 해외연구기관 단기연수 지원	-	1명(1명) -> 개인사정으로 연수를 차년도로 연기
⑤ 해양법 관련 자유 주제 공동연구 지원	2명(4명)	5명(5명)
합계	16명(26명)	15명(25명)

*자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와 같이 사업이 추진된 이유에 대해서 사업수행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수료를 요하는 ③국제 인턴쉽 사업이나 해외 아카데미 지원사업(②, ④)의 경우 외국의 주관기관 단계에서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여 국내 선발 인원(선정자)이 인턴쉽 등을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현재 근무 중인 해양법 전문인력이 주변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점과 향후 5~10년 내 정년퇴직이 예정된 인원[38]을 고려하여 해양법 관련 신규 전문인력 확대를 위해 시작된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후 학생들의 전공 선호가 법률시장의 수요가 많은 학문영역으로 집중되면서, 우리나라 국내 해양법 인력에 대한 수요가 소수의 대학교,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 실제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에 지원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없음.

따라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각 사업의 지원자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별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지원 가능 대상자들이 그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 등을 마련하여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8) 2030년까지 6명(대학 4명, 연구기관 2명)이 퇴직할 예정임

□ 한편,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국제기구 인턴쉽지원 및 해양법 해외연구기관 단기연수지원 사업 등의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제해양법 아카데미 개최 및 국제해양법과 해양안보 아카데미 개최 등의 교육사업의 수강인원을 확대[39]하거나, 학술대회, 판례연구회 운용, 교육 관련 기획연구에 사용하는 등으로 잔여 사업비를 집행함.

【 2023년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세부 프로그램 중 미집행 사업 】

(단위: 백만원)

지원사업	대상 및 사업내용, 사업기간	'22년		'23년		'24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③ 국제기구 인턴쉽 지원	- 대상 : 대학(원)생 및 수료생, 해양법 유관기관 실무자 및 연구자 - 내용 :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해양법 관련 국제기구 인턴활동 실비 지원	50	-	30	-	30
④ 해양법 해외연구기관 단기연수지원	- 대상 : 대학(원)생 및 수료생, 해양법 유관기관 실무자 및 연구자 - 내용 : 해외 대학 또는 해양법 연구기관에서의 단기연수 실비 지원	50	-	30	-	30

* 자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9) ① 국제해양법 아카데미 - 대학(원)생 대상 당초 4~50명 모집 예상이었으나 100명 이상 수강, 서울지역에 한정하던 아카데미를 부산 지역으로도 확대 시행
② 해군 및 해군사관생도 대상 해양안보 아카데미 개최(약 120명 대상 2일 간 개최),
③ 해경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최(2022년도 실무자 약 30명 대상 1주 프로그램으로 운영, 2023년도 컨퍼런스 형태로 약 100여명 대상 운영)

【 2023년 세부 프로그램 중 예산 대비 조정 집행 사업 】

(단위: 백만원)

지원사업	대상 및 사업내용, 사업기간	'22년		'23년		'24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국제해양법 아카데미 개최	- 대상 : 대학(원)생 - 내용 : 상반기(서울권), 하반기(부산권)로 나누어 해양법 강의	-	-	50	63	60
국제해양법과 해양안보 아카데미 개최	- 대상 : 해군사관학교 - 내용 : 해군사관학교 생도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양법 강의	30	52	10	31	17
국제해양법 컨퍼런스 개최/유관기관 정책포럼	- 해양법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컨퍼런스 개최 - 해양법 현안의제 활성화 토론회	40	87	36	60	40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설명회 및 심사위원회, 결과보고회 개최비	-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 관련 심사위원회 개최 -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결과 보고회 개최	20	61	20	40	35
기타 소요비용	- 해양법 인력양성 기획 - 출장비, 회의비 등	40	90	14	46	20
계		130	290	130	240	172

이에 대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 주관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국내 연구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 세션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설명임.

□ 그러나, 2022년에 시작된 동 사업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설명회 등의 기획 등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 사업의 편성 목적이 향후 증가하는 해양법 관련 분쟁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해양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아카데미, 컨퍼런스 위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연내 추진가능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별 사업 예산을 정밀하게 배정·집행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7)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 사업출연금을 통한 공공요금 충당 문제

○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박물관의 본래 목적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출연금을 편성하여 사업출연금으로부터 기관운영출연금으로의 세목 조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은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비와 BTL 정부지급금 지급, 국립해양과학관 운영비,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미래해양과학관 건립비 및 선부역사교육원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874억 7,000만원 중 747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112억 7,200만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14억 3,100만원을 불용하였음.[40)]

【 2023년도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72,351	72,351	10,619	4,500	87,470	74,768	11,272	1,431	105,112

40) 회계(기금)-세부사업: 일반회계-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2031-308)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해양박물관 운영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41]에 따라 국립해양박물관의 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는 2023년 예산현액 88억 8,300만원 전액을 출연금으로 교부하였고, 국립해양박물관은 이 중 88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3년도 해양박물관 운영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양박물관 운영	8,883	8,883	-	-	8,883	8,883	-	-	8,634
·기관운영출연금	5,174	5,174	-	966	6,140	6,140	-	-	5,695
·사업출연금	3,709	3,709	-	△966	2,743	2,743	-	-	2,939

41)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재원)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2. 제14조에 따른 차입금
3.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비는 국립해양박물관의 기관 운영을 위한 비용인 기관운영출연금(350-01)과 박물관 고유사업인 자료수집·전시, 전시기획, 학예 및 문화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 사업출연금(350-02)으로 구분되며, 2023년에는 기관운영출연금으로 51억 7,400만원, 사업출연금으로 37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런데, 국립해양박물관의 경우 2021년부터 기관운영출연금에서 지급하는 공공요금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출연금으로부터 세목조정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4,500만원, 2022년에는 3억 9,000만원, 2023년에는 9억 6,600만원으로 조정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2021~2023년도 기관운영출연금 부족분 조정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출연금 예산 전용 금액 (사업출연금→기관운영출연금)	45	390	966

자료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에 따르면 공공요금으로 집행한 금액은 2019년 9억 1,400만원에서 2023년 12억 5,6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42] 2019년 18억 1,200만원이던 기관운영출연금은 2023년 10억 7,6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그 중 공공요금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8억 2,000만원에서 5억 9,000만원으로 줄어들어 공공요금의 연체[43] 및 타 비목으로부터의 조정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임.

42)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공요금 집행 시 적용되는 가스요금 연평균 단가가 상승(2019년 747원/N㎥에서 2023년 1139원/N㎥으로 상승)하였고,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전기요금 연평균 단가 역시 인상(2019년 101.41원/Kwh에서 2023년 146.47원/Kwh으로 상승)되었음.

43) 2022년의 경우 공공요금에서 약 1억 8,000만원의 미납금이 발생해 2023년 예산으로 납부함.

【 2019~2023년도 해양박물관 기관운영출연금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출연금 편성 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기관 운영 출연금	소계(A)	5,175	4,951	5,461	5,151	5,174
	인건비	3,363	3,343	3,933	4,029	4,098
	기관운영경비	1,812	1,608	1,528	1,122	1,076
	- 공공요금 및 제세	820	860	900	752	590
	- 일반수용비	204	185	164	94	114
	- 그 밖의 구성항목	788	563	464	276	372

자료 : 해양수산부

【 2019~2023년도 공공요금 집행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편성	820,060	860,000	899,753	752,036	590,130
집행	913,864	932,595	1,071,702	1,117,766	1,256,050
전기요금	476,618	467,613	482,246	463,995[1)]	682,062
도시가스	285,356	325,171	502,004	564,833[2)]	491,948
상하수도	107,399	99,642	47,489	53,443	47,774
보험	2,737	3,003	2,263	2,164	1,815
각종세금	16,721	15,653	20,481	16,583	16,085
통신요금	15,892	15,685	15,997	16,360	16,143
기타	9,141	5,828	1,222	379	223

주 1) 전기요금 미납액 5,500만원 미포함

2) 가스요금 미납액 1억 2,600만원 미포함

자료 : 해양수산부

□ 이와 같이 기관운영출연금이 적게 편성된 사유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박물관의 자체수입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정부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기관운영출연금이 연속적으로 과소 편성되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나, 해양박물관의 자체수입이 크게 증가(2019년 3,065만원 → 2023년 9,094만원)한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기관운영출연금의 감소폭(2019년 18억 1,200만원 → 2023년 10억 7,200만원)이 다소 큰 측면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출연금으로부터 공공요금 납부예산의 부족분을 조정해 사용하는 일이 반복·확대될 경우[44], 기관 고유의 사무 추진을 위한 사업출연금에 일부 부족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해양박물관의 자체수입 증가와 공공요금 납부 추이를 면밀히 계산하여 적절한 운영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국립해양박물관 자체수익 내역]

(단위 : 원)

구분/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자체수익(A+B)	30,653,025	37,359,572	26,002,623	90,096,427	90,941,921
이자수익(A)	27,717,895	31,810,652	17,438,621	25,109,424	85,598,860
잡이익(B)	2,935,130	5,548,920	8,564,002	64,987,003	5,343,061

자료 : 해양수산부

□ 한편, 해양박물관은 2023년 큰 폭의 공공요금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출연금에서 9억 6,6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총 15억 7,100만원을 공공요금 지출을 위한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나, 정산결과 실제 공공요금 지출액은 12억 5,600만으로 나타났으므로, 정확한 집행액 예측으로 불필요한 세목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4) 2023년의 경우 사업출연금 중 해양자료수집·관리 예산으로부터 8억 4,600백만원을 전시기획 및 운영 예산에서 5,000만원을, 교육 및 홍보사업에서 7,000만원을 세목조정해 공공요금 집행을 위해 사용하였음.

【 2019~2023년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입 및 지출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관운영비 편성액	공공요금 및 제세 수입 및 지출						
		수입					지출	
		출연금 (A)	전년도 이월액 (B)	자체전용 (C)	출연금** 전용(D)	결산액 (A+B+C+D)	지출액	전년대비 증가액
2019년	1,812	820	4	93	-	917	913	44
2020년	1,608	860	1	78	-	939	933	20
2021년	1,528	899	51	88	45	1,083	1,072	139
2022년	1,122	752	-	△24	390	1,118	1,118	46
2023년	1,076	590	15	-	966	1,571	1,256	138

자료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재구성

8) 해양치유시범지구 조성사업 집행부진 방안 마련 필요

○ 해양치유시범지구 조성사업에서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를 잘 이행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해양관광육성 사업」은 해양관광·레저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해양관광·레저 수요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530억 8,800만원 중 508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4,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 6,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45].

45) 회계(기금)-세부사업: 일반회계-해양관광육성(2034-310)

【 2023년도 해양관광육성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양관광인프라 조성	50,269	50,269	-	45,138	43,552 (32,840)	-	1,586	34,106
- 해양치유시범지구 조성사업	13,120	13,120	-	13,120	13,120 (5,264)	-	-	10,565
해양관광콘텐츠 개발	3,012	3,012	-	3,301	2,748 (2,030)	291	262	3,000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3,650	3,650	-	3,630	3,630 (3,178)	-	-	2,730
해양레저관광 정보기반 구축	300	300	19	319	250 (250)	57	13	300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700	700	-	700	700 (700)	-	-	700
합계	57,931	57,931	19	53,088	50,880 (38,998)	348	1,861	40,836

(나) 검토의견

□ 해양치유는 갯벌·소금·해조류·해양심층수·해양경관 등의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해양관광인프라 조성사업」 내 보조사업으로 「해양치유시범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4개 지역(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남 고성, 경북 울진)에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제주에도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해양치유시범지구 조성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명	사업내용	2023년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해양치유시범지구 조성	(목적)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갖춘 곳에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민 복지 증진 도모 (보조사업자) 충남 태안, 경남 고성, 경북 울진 (보조율) 50%	13,120	13,120 [5,264]

* 자료 : 해양수산부

□ 해당 사업의 경우 2023년 기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3곳(경남 고성, 경북 울진, 충남 태안)의 실집행률이 각각 26.3%(경남 고성), 5.4%(경북 울진), 46.9%(충남 태안)로 예산의 집행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보조금의 재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

【 해양치유시범지구 조성사업의 사업지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지역	연도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추경포함)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	불용	실집행률 (B/A)
경남 고성	2020	1,000	1,000	1,000	-	1,000	0	1,000	-	0
	2021	2,000	2,000	2,000	1,000	3,000	1,370	1,630	-	45.7
	2022	2,500	2,500	2,500	1,630	4,130	96	4,034	-	2.3
	2023	4,300	4,300	4,300	4,034	8,334	2,190	6,144	-	**26.3**
경북 울진	2020	1,000	1,000	1,000	-	1,000	975	25	-	97.5
	2021	2,000	2,000	2,000	25	2,025	1,980	45	-	97.8
	2022	2,800	2,800	2,800	45	2,845	2,845	-	-	100
	2023	3,920	3,920	3,920	-	3,920	213	3,707	-	**5.4**
충남 태안	202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100
	2021	2,000	2,000	2,000	-	2,000	1,664	336	-	83.2
	2022	4,200	4,200	4,200	336	4,536	3,342	1,194	-	73.7
	2023	4,900	4,900	4,900	1,194	6,094	2,861	3,233	-	**46.9**

* 자료: 해양수산부

□ 이와 같이 각 사업지별로 공사가 지연되고 보조금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는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는데,

경남 고성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감리용역 발주 불가로 인해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였고, 전년도 이월액이 40억원임에도 2023년 보조금 43억원을 전액 교부하여 이 중 대부분의 금액이 이월되었고,

경북 울진의 경우 2023년부터 2024년 6월 현재까지도 공사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2023년 보조금 39억 2,000만원을 전액 교부하여 이 중 대부분의 금액이 2024년도로 이월됨.

□ 사업지연 내역 및 원인을 살펴보면 충남 태안의 경우 연약지반처리를 위한 공사비 증액 및 주 도급사 경영난으로 인한 도급사업자 교체로 공사 준공이 1년 가량 지연되었고,

경남 고성과 경북 울진의 경우 예산 편성 시의 기준인 「총사업비 관리지침」 상 감리비요율[46]을 적용하는 것보다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47]을 적용할 경우 감리비 인상이 필요하여 감리용역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당초 2023년 상반기로 계획했던 공사 개시가 8개월에서 1년 가량 지연됨.

- 참고로 경남 고성의 경우 감리비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적용 시 23억 4,700만원이나,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적용 시 40억 1,400만원으로 증가 됨.

---

46)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0조(감리비의 조정기준) ① 건설사업의 감리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한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공종별·내역별 분리발주 등으로 인하여 공종별·내역별 개별감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공종별·내역별 공사비에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 1,500억원까지는 공사비의 3.19%, 초과분은 2.98% 적용

4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임.

【 해양치유시범지구 조성사업의 계획 대비 실제 진행 상황 】

구 분		추진계획	실 제
충남 태안	기본 설계	'20. 12. ~ '21. 10.	'20. 12. ~ '21. 10.
	실시 설계	'20. 12. ~ '21. 12.	'20. 12. ~ '21. 12.
	공사 착공	'22. 3. ~ '23. 7.	'22. 3. ~ '24. 9.
경남 고성	계획(기본) 설계	'21. 6. ~ '21. 8.	'21. 6. ~ '22. 1.
	중간 설계	'21. 9. ~ '21. 11.	'22. 2. ~ '22. 5.
	실시 설계	'21. 12. ~ '22. 2.	'22. 6. ~ '22. 10.
	공사 착공	'22. 4. ~ '25. 6.	'23. 10. ~ '26. 12.
경북 울진	계획 설계	'21. 4. ~ '21. 8.	'21. 4. ~ '21. 8.
	중간 설계	'21. 8. ~ '21. 12.	'21. 8. ~ '21. 12.
	실시 설계	'21. 12. ~ '22. 4.	'21. 12. ~ '23. 3.
	공사 착공	'22. 7. ~ '22. 10.	'24. 2. ~ '25. 12.

* 자료 :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실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조사업자가 담당하게 되므로, 보조금 교부 주체인 국가가 사업의 세밀한 부분까지 감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이와 같이 보조금의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편성된 보조금을 대부분 교부하는 것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금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48]에

48)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 진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의 지연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해양수산부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추진이 총 5차례 유찰되는 등 사업기간이 지연(사업 종료시기 '2026년→2029년')되고 있으므로, 총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등 민간의 참여 유인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은 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확보 등 국가적인 극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북극해 고위도에서 연구 수행이 가능한 친환경 쇄빙연구선을 건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예산현액 421억 9,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49].

- 다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 전액이 교부되었으나 지급된 연구개발비 636억 4,300만원 중 38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6월 기준 598억 2,800만원의 미집행액이 남아 있음.

【 2023년도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	42,190	42,190	-	42,190	42,190	-	-	18,103

* 자료 : 해양수산부

49)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 (2042-325)

(나) 검토의견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은 남극·북극 관련 연구를 아라온호 1척으로 모두 수행하고 있는 극지 연구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아라온호 대비 친환경적이고 쇄빙능력이 개선된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하여 극지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기반구축 R&D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전체 사업비 2,765억 3,300만원(총사업비 관리대상 금액은 2,605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총 톤수 16,560톤, 승선인원 100명 규모로 건조할 계획이며, 2022년 3월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가 주관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 사업개요 】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 colspan="6">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th></tr>
<tr><td>사업목적</td><td colspan="6">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확보 등 국가적 극지 이슈 대응을 위해
북극해 고위도 연구수행이 가능한 친환경 쇄빙연구선 1척 건조</td></tr>
<tr><td>사업주체</td><td colspan="6">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6">2022~2029</td></tr>
<tr><td>사업내용</td><td colspan="6">북극해 연구수요 대응을 위해 기존 아라온호 대비 강화된
쇄빙능력(1.0m/3노트→1.5m/3노트) 및 향상된 안전기준을 적용한
16,560톤급의 친환경(LNG-저유황유 이중연료) 쇄빙연구선 건조</td></tr>
<tr><td rowspan="3">전체 사업비</td><td colspan="6">276,533 (총사업비 관리대상 260,526)</td></tr>
<tr><td>년도</td><td>2022년</td><td>2023년</td><td>2024년</td><td>2025년 이후</td><td>총 계</td></tr>
<tr><td>국비</td><td>3,350</td><td>42,190</td><td>18,103</td><td>212,890</td><td>276,533</td></tr>
</table>

구분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		
예산집행	년도	교부액(예산현액)	실집행액
	2022	3,350	3,350
	2023	42,190	42,190
	2024	18,103	18,103

* 자료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당초 2022년부터 2026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설정하고 2022년 기본설계(2022.7월 ~ 2023.2월), 2023년 설계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2023.8월)을 거쳐 2023년 연말까지 입찰공고 및 건조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 추진한 건조계약 1차 입찰이 3차례 유찰되었고, 2024년에도 2차 입찰이 2차례 유찰되어 건조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 추진현황 】

구분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
추진현황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21.6.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 착수 : '22.4. ○ 차세대 쇄빙연구선 기본설계 완료 : '23.2. ○ 설계적정성 검토 완료 : '23.5. ○ 총사업비 1차 조정 완료 : '23.8. ○ 쇄빙연구선 제조구매 1차 입찰공고(3회) 결과 무응찰에 따른 유찰 : '23.12. ○ 설계적정성 (재)검토 및 총사업비 2차 조정 완료 : '24.3. ○ 쇄빙연구선 제조구매 2차 입찰공고(2회) 결과 무응찰에 따른 유찰 : '24.6.~'24.7.

* 자료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최근 민간조선사의 수주물량 증가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떨어지는 데다가 공사기간 및 건조공사비가 부족하기에 유찰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통해 사업 종료시기를 2026년에서 2029년으로, 계약 기간을 31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계획 연구장비에 대한 사업내용 조정을 통해 10억원 가량을 추가 건조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최종 유찰되었음.

【 1·2차 차세대 쇄빙연구선 제조구매 주요 입찰내용 비교 】

(단위: 백만원)

구분	계약기간	예정가격	입찰방식
1차 입찰(유찰) '23.12.	31개월	226,949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국내입찰 등(1·2차 입찰 동일)
2차 입찰(유찰) '24.7.	48개월	227,932	

* 자료 : 해양수산부

- 이처럼 계약이 유찰됨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비수탁계좌(RCMS)에 지급된 연구개발비 636억 4,300만원 중 38억 1,500만원을 선행기반기술 확보, 기본설계비, 건조로드맵 수립 등에 집행했을 뿐 대부분 미집행되어 2024년 6월 기준 미집행액이 598억 2,800만원임.

【 차세대 쇄빙연구선 연구비수탁계좌 집행잔액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2022년~2024년(6월)	63,643	3,815	59,828

* 자료 : 해양수산부

□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극지연구기지는 남극에 2곳(세종기지, 장보고기지), 북극에 1곳(다산기지)으로 총 3곳이며, 기후변화 대응 및 수산자원 개척 등 국가적인 극지 대응 소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기운영 중인 아라온호로만 해당 수요를 모두 감당하다 보니 최근 2년간 연평균 142일을 남북극을 오가는 이동항해에 소요하고, 연구수행에 필수적인 연구항해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신규 쇄빙연구선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2022~2023년 아라온호 운항일수 세부내역 】

(단위: 일)

구분	이동항해			연구항해			외국기항		기지보급	입거수리	시험항해 등	합계
	남극	북극	소계	남극	북극	소계	남극	북극				
2022년	102	35	137	53	49	102	23	8	6	30	59	365
2023년	110	36	146	39	49	88	24	6	9	24	68	365
연평균	106	36	142	46	49	95	24	7	8	27	64	-

* 자료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취항하면 아라온호는 남극 항해·연구를 전담하도록 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북극 항해·연구에 투입할 예정인 바, 각 쇄빙연구선은 이동항해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시간을 연구·시험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현재 2029년으로 연장된 사업기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총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등 민간의 참여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어업지도관리: 국가어업지도선의 계약해지·유찰로 인한 사업지연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해양수산부는 2023년까지 총 312억원이 투입된 국가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이 업체의 부정입찰에 따른 계약해지 이후 유찰로 인해 후속업체 선정이 지연되면서 당초 2024.1월이었던 준공예정일이 2025년 하반기 이후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사업 지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어업지도 관리는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국내외 불법어업 어선 지도·단속 업무수행에 필요한 국가어업지도선 대체·신규 건조,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 및 스마트 불법어업 통합관리시스템 등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570억 3,100만원 중 1,036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428억 3,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5억 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50].

【 2023년 어업지도관리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어업지도관리	131,146	25,915	30	157,031	103,690	42,834	10,507	43,025

50)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어업지도관리(3132-303)

(나) 검토의견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은 노후된 국가어업지도선을 대체 및 신규 건조하여 국내·외 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동 내역사업으로 추진되는 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1,235억원을 투입하여 총 5척의 9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을 건조하려는 사업으로, 동해어업관리단과 서해어업관리단이 각각 2척, 3척씩 분담하여 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어업지도선 900톤급 건조 사업 개요 】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 colspan="7">어업지도선 900톤급 건조 사업</th></tr>
<tr><td>사업목적</td><td colspan="7">「친환경선박법」 관공선 도입 의무화('20.1)에 따라 노후된 국가어업지도선을 친환경 지도선으로 전환</td></tr>
<tr><td>사업주체</td><td colspan="7">5해양수산부(동해·서해어업관리단)</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7">2020년 ~ 2024년</td></tr>
<tr><td>사업규모</td><td colspan="7">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5척) 건조</td></tr>
<tr><td rowspan="3">총사업비</td><td colspan="7">1,235억원</td></tr>
<tr><td>연도</td><td>2020년</td><td>2021년</td><td>2022년</td><td>2023년</td><td>2024년</td><td>총 계</td></tr>
<tr><td>국비</td><td>720</td><td>38,660</td><td>42,171</td><td>41,954</td><td>-</td><td>123,505</td></tr>
<tr><td>건조일정</td><td colspan="7">○ 9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설계 완료 : '21. 7.
○ 9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2척 건조 착수(동해단) : '21. 10.
○ 9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3척 건조 착수(서해단) : '21. 10.
○ 9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3척 건조계약 해지 : '23. 12.
○ 9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2척 건조 준공 : '24. 1.</td></tr>
</table>

*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900톤급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의 2023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편성예산 419억 5,400만원 중 이월액과 불용액이 각각 301억 3,200만원, 80억 8,900만원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25%로 나타나고 있음.

【 어업지도선 900톤급 5척 건조 사업의 2023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동해관리단 2척	15,402	152	15,554	11,710	3,844	0	75.3
서해관리단 3척	26,552	8,902	35,454	1,077	26,288	8,089	3
합계	**41,954**	**9,054**	**51,008**	**12,787**	**30,132**	**8,089**	**25**

* 자료: 해양수산부

이월액의 87%(262억 8,800만원)와 불용액 전액은 서해어업관리단이 수행하는 어업지도선(3척) 건조사업에서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부정입찰을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고, 후속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이 연이어 유찰되면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해관리어업단은 조달청 입찰을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2021년 10월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계약업체와 경쟁업체 간 법적분쟁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제출한 입찰서류 중 허위서류가 있음이 밝혀졌고[51)52)],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당 시점까지의 공정률(39.1%) 및 건조 일정 지연에 따른 노후 지도선의 안전성 우려, 물가상승분 반영에 따른 추가예산 과다소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23.12)하고 타절준공[53]으로 해당 시점까지 건조된 기성고에 대한 대금 312억원을 업체에 지급하는 한편, 기성고를 보존하면서 2023년 내에 잔여 공정을 이행할 업체와 신규 건조계약을 추진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이후 신규업체 선정을 위한 4차례의 입찰이 모두 유찰[54]되면서 2024년 7월 현재까지 신규 건조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당초 어업지도선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재입찰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잔여 건조예상기간을 고려하면 2024년 6월에 입찰공고를 시작해도 2025년 12월이 되어서야 어업지도선이 준공·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55].

---

5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업체가 직접생산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선박건조부지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임대차 계약 체결 의사 없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였다는 것으로, 우선협상대상 선정 업체가 생산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작성한 이면계약서(각서)가 발견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서가 무효(허위)임이 증명된 경우임.

52) 【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소송 경과 】

경쟁업체 가처분 소제기	1심 판결	경쟁업체 항고 및 2심 판결	선정업체의 2심 판결 이의 신청	선정업체의 3심(재항고) 및 판결
2021.10.12.	2022.4.4. (기각)	2022.10.5. (가처분 인용 결정)	2023.6.9. (2심 결정, 인가)	2023.9.4. (기각)

* 자료: 해양수산부

53) 발주자 측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을 뜻함.

54) 해양수산부는 1,2차 입찰공고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방법으로 추진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고 이에 3,4차 입찰공고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추진하였으나, 모두 유찰됨.

55) 해양수산부 추정기간:조달요청('24.6) → 건조계약 체결('24.7) → 품질개선작업('24. 10.) → 1차선 진수('25. 4) → 2차선 진수('25. 6) → 3차선 진수('25.10) → 준공('25.12)

이와 같이 어업지도선의 준공시기가 계속하여 지연될 경우, 지금까지 건조된 기성고의 품질이 저하되고 후속 공정 수행이 어려워져 기투입된 사업비 312억원이 낭비될 소지가 있고,

당초 2024년 1월부터 신규 건조선으로 대체할 예정이었던 무궁화 6·7·8호의 교체시기가 2년 가량 지연됨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선령 30년의 무궁화 6·7호[56]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57].

□ 현재 해양수산부는 당초 입찰공고 금액이 현재의 인상된 물가(자재비) 및 노임 단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24년 내 재입찰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불용액인 119억원[58],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추가 소요 118억원, 기성고에 대한 품질개선 작업에 필요한 22억원[59]을 합한 총 23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필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바,

---

56) 무궁화 8호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의 문제로 운항 정지 상태이며, 대체 건조공사 재개 확정 시 용도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57)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무궁화 6·7호는 매년 상가, 외판두께, 계측, 수리 및 안전점검을 통해 선박검사를 수검하여 운항조건을 유지 중이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사항을 보다 강화하여 적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58) '21·'22년 불용액 8억원, '23년 불용액 81억원 및 타절준공에 따른 국고귀속금액 28억원을 합친 금액임

59) 기성고에 대한 품질 개선 작업으로는 강철로 이루어진 기성물(강판)에 발생한 녹 제거 및 도장(페인트) 작업, 부식된 내부 자재(파이프 등) 산세·재처리(Acid cleaning) 작업, 보수·수리 작업을 위한 기자재(전선, 행거 등) 철거 및 재설치 작업 등이 있음.

해양수산부는 필요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조달청과 입찰행정소요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가어업지도선의 건조가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11)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 유조선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신청 확대를 위한 선종별 차등 지원 방안 마련

○ 해양수산부는 관련 법률 개정 취지 등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목표 지정 척수가 있으나 유조선은 연례적으로 목표 대비 지정척수가 미달된 상황이므로, 유조선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신청을 유도할 수 있는 선종별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사업」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원활한 해상수송체계 유지를 위한 국적 선대 및 선원을 확보하고자 군수품·양곡·원유·액화가스·석탄 또는 제철원료 등 국가 중요 군수 및 전략물자를 운송하는 선박 일부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65억 4,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60].

【 2023년도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6,545	-	-	6,545	6,545	-	-	6,545

60)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6133-303)

(나) 검토의견

□ 해양수산부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군수품,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또는 제철(製鐵) 원료 등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비상시 소집 및 지정화물의 수송 명령을 이행하는 국가필수선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은 국적선원 2명을 추가로 고용할 의무가 있음.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사업」은 국적선원 추가 고용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기준 88척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고 LNG 선박 19척을 제외[61]한 69척에 대해 임금차액 65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음.

61)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88척의 선박 중 LNG 선박 20척은 한국가스공사가 화주로서 선박 사용계약 시 계약 내용에 임금 차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필수선대제도 개요 】

□ 도입배경

○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시 군수물자 및 국가전략물자의 원활한 해상수송체계 유지를 위한 국적 선대 및 선원 확보

□ 지정기준 및 절차

○ 국제총톤수 1만톤 이상이며 선령 20년 미만인 선박으로서 군수품·양곡·원유·액화가스·석탄 또는 제철원료 등 중요물자를 운송하는 선박

○ 매년 지정계획에 따라 선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

① 필수선박 지정계획 확정 (전년도 12월 5일까지)	⇨	② 지정신청(선사) 지정완료(해수부) (전년도말)	⇨	③ 필수선박 임무수행 (당해연도 1.1~12.31)	⇨	④ 손실보상 기준 산정 고시, 보상금 신청 및 지급 (당해연도말)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필수선박 지정선사		필수선박 지정선사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 ↔필수선박 지정선사

□ 의무 부여

○ 국적선원 2명 추가 고용

* 일반 선박은 외국인 부원을 8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반면, 국가필수선박은 외국인 부원을 6명 이내로 제한

○ 비상시 소집명령 및 지정화물 수송명령 이행

○ 교육 또는 훈련 참가(연 1회 이상)

□ 손실 보상금 지급

○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에 따른 선사의 임금부담은 해양수산부에서 보상

* 국가필수선박 승선 한국인 선원과 국제선박 승선 외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차액을 기준으로 부원 2명분 보상

* 자료: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비상사태 발생시 군수물자 및 국가전략물자의 원활한 해상수송체계 유지를 위해 취급 화물을 고려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선종별 지정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음.

【 국가필수선박 선종 및 선적 화물 】

선종(船種)	선적 화물
벌크선	원목, 시멘트, 철광석, 곡류 등
유조선	석유류, 경유류
가스선	LPG·LNG 가스
컨테이너선	일반 화물
자동차선	자동차

* 자료: 해양수산부

□ 그런데 2024년 현재 선종별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벌크선은 목표 지정척수를 초과하고 있는 반면 유조선은 2019년 이래 연례적으로 목표 지정척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 2024년 국가필수선박 선종별 지정현황 】

구 분		전 체	벌크선	유조선	가스선	컨테이너선	자동차선
척 수 (목표/지정)	기존	88/88	24/29	12/8	21/20	20/19	11/12
	개선	88/88	24/29	12/9	21/20	20/18	11/12

** 자료: 해양수산부

특히, 2021년에 유조선 목표 지정척수를 16척에서 12척으로 하향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청 및 지정이 저조한 상황임.

또한, 국가필수선대의 목표 규모는 2006년 30척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88척을 확보한 이후 10년 이상 변화가 없음[62].

【 최근 5년간 선종별 지정현황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지정	목표	지정	목표	지정	목표	지정	목표	지정
벌크선	25척	29척	25척	30척	24척	30척	24척	30척	24척	29척
유조선	16척	6척	16척	8척	12척	6척	12척	6척	12척	8척
가스선	21척	23척	21척	23척	21척	19척	21척	19척	21척	20척
컨테이너선	15척	13척	15척	15척	20척	21척	20척	21척	20척	19척
자동차선	11척	12척	11척	12척	11척	12척	11척	12척	11척	12척
합 계	88척	83척	88척	88척	88척	88척	88척	88척	88척	88척

* 신청 척수와 지정 척수는 동일함, ** 자료: 해양수산부

□ 한편 유조선의 목표 대비 지정 척수 부족과 관련하여 2022년 1월

62) *참고로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해 국가필수선박 지정 미달 사태가 발생함

【 국가필수선박 목표 및 실제 지정 현황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4
목표	30	50	70	88					
지정	30	50	70	88	76	77	88	87	88

개정된「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 목표 지정척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음.[63]

그런데, 유조선이 주로 석유·휘발유 등 핵심 자원을 운반하는 데 이용되고 있음에도 유조선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목표 척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유조선의 목표 대비 지정척수가 부족한 데에는 유조선의 경우 폭발위험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탱커 직무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국적선원 확보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국적선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국가필수선박 지정 수요가 저조하기 때문임.

□ 그러나, 선종별 취급하는 화물의 종류가 달라 국가필수선박의 선종별 지정목표 달성이 중요하다는 점, 유조선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신청이 저조하여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2006년 사업 시작 이후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는 2026년 국가필수선박 지정 확대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유조선의 지정 확대를 위해서는 유조선에 한정하여 임금부담 지급률 상향 등의 선종별 차등 지원 방안 등[64]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

---

63)「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할 경우 비상사태등에 대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목표 지정척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4) 외항화물선사가 친환경선박을 신조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등

12)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지원 : 수혜자 추적조사 및 체계적 사업 평가 필요

○ 산학연계 인턴십을 수료한 취업자 중 비관련 해운물류기관에 취업한 비율이 43.5%고, 수료자 중 졸업 이후에 취업한 인원에 대해서는 취업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수혜자 추적조사 및 체계적인 사업평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은 해운·항만물류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취업·재취업·창업,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49억 3,700만원 중 49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을 불용하였음[65].

【 2023년도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지원	4,937	-	-	4,937	4,920	-	17	6,010

65)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지원(6133-308)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해운·항만물류 분야 종사자,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지식 교육 및 인턴십 운영 등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 제1차 사업(2005년~2009년)을 시작으로 5년 단위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제4차 사업(2020년~2024년)이 진행중이고, 2023년 594명을 포함해 2005년부터 총 19,563명의 해운물류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음[66].

【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료자 현황 】

구분	제4차(2020년~2024년)					
	총합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명)	3,670	1,064	1,066	946	594	-
성과기반 고급인력 과정	672	170	171	166	165	-
맞춤형 실무교육 과정	2,203	661	676	612	254[67]	-
산학연계 인턴십 과정	795	233	219	168	175	-

* 자료: 해양수산부

□ 특히 제4차 사업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전담기관으로 선정하고 6개로 세분화되어 있던 과정을 지원대상·사업목적 등에 따라 3개로 통폐합하였는데,

66) 제1차(2005년~2009년): 1,959명 / 제2차(2010년~2014년): 4,926명 / 제3차(2015년~2019년): 9,008명
67)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COVID-19로 인해 온라인 교육 시행을 허용하였고, 2023년부터는 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수료 인원이 감소하였음

① ‘산학연계 인턴십’은 학사・석사과정 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해운물류 기업 인턴십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 외 ②교수, 연구원 등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성과기반 고급인력 양성’, ③ 현업종사자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선박금융, 스마트 물류 등 실무활용도가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맞춤형 실무교육’이 각각 공모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3개 사업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14억 7,900만원으로 14억 2,500만원이 실집행되었음.

- 이 중 산학연계 인턴십 사업의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산학연계 인턴십 과정은 학사・석사과정 학생 및 취업준비생과 국내외 기업을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취업 연계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2023년도에는 군산대학교 등 6개 대학[68]에 총 6억원을 지원하여 장・단기 인턴십(4주~24주)과 학점 연계를 통한 실습학기제 운영 등을 실시하였음.

그런데 제4차(2020년~2024년) 산학연계 인턴십 수료자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해운항만분야 취업 활성화라는 사업목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당시 산학연계인턴십을 수료한 취업자 중 해운물류기관이 아닌 비관련기관에 취업한 비율이 43.5%임.

특히, ㅈㅇ대학교의 경우 총 5년간 181명의 수료자 중 취업자는 66명인데, 이 중 58%인 38명은 해운물류 분야와 관련 없는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68) 군산대학교, 동서대학교, 성결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이처럼 '산학연계 인턴십' 과정을 수료한 취업자 중 비관련 해운물류 분야로의 취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해운·항만물류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하려는 동 사업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분야 취업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산학연계 인턴십 수료자 취업 현황 】

교육기관	취업자 현황(명)				
	졸업년도	수료자	취업자	해운물류관련기관	비 관련기관
ㄱㅅ대학교	2020	24	-	-	-
	2021	21	11	8	3
	2022	15	14	9	5
	2023	13	11	6	5
	합계	73	36	23	13
ㄷㅅ대학교	2020	20	1	1	-
	2021	20	7	7	-
	2022	20	12	8	4
	2023	25	13	9	4
	합계	85	33	25	8
ㅅㄱ대학교	2020	40	-	-	-
	2021	40	7	4	3
	2022	21	34	19	15
	2023	16	25	8	17
	합계	117	66	31	35
ㅈㅇ대학교	2020	60	4	2	2
	2021	47	24	9	15
	2022	36	26	10	16
	2023	38	12	7	5
	합계	**181**	**66**	28	**38**
ㅎㄱㅎㄱ대학교	2020	35	4	4	-
	2021	42	7	5	2
	2022	38	17	10	7
	2023	46	14	11	3
	합계	161	42	30	12
ㅎㄱㅎㅇ대학교	2020	54	-	-	-
	2021	49	7	2	5
	2022	38	19	13	6
	2023	37	25	14	11
	합계	178	51	29	22
총계		795	294	166(56.5%)	128(**43.5%**)

* 자료: 해양수산부

** 수료자 795명 중 501명에 대한 취업현황은 올해 10월부터 추적조사(KMI) 예정으로 취업률 증가 예상

□ 또한, 총 5년간 795명의 수료자 중 294명에 대해서만 취업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양수산부가 졸업년도에 한정하여 취업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졸업 이후에 취업한 인원이 누락되었기 때문임.

그런데 동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연도의 수료자에 대해서만 취업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취업현황, 취업 유지율, 교육내용 활용여부 등에 대한 추적조사 등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2024년 6월 2023년도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실적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를 통해 각 프로그램의 교육기관별로 정량·정성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기관별 사업개선 방안도 논의되었다는 설명임.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평가기준

○ 총 평가지표(100%) = 정량적 지표(80%) + 정성적 지표(20%)

□ 정량적 지표(80%)

○ 필수성과지표(60%)

평가지표	평가방법	배점(60)	평가점수					
예산집행률	국고보조금 예산집행액 / 지원예산액	15	기준(%)	99이상	99미만~95이상	95미만~90이상	90미만~85이상	85미만
			점수(점)	15	12	9	6	3
목표인력양성 달성률	인력양성 수 / 목표인력 수	10	기준(%)	100	100미만~95이상	95미만~90이상	90미만~85이상	85미만
			점수(점)	10	8	6	4	2
성과목표 달성률	(총 성과활동 달성 수) / (총 목표 활동 수)	20	기준(%)	100	100미만~95이상	95미만~90이상	90미만~85이상	85미만
			점수(점)	20	16	12	8	4
만족도 조사*	공통 만족도 조사 결과	10	기준(%)	95이상	95미만~90이상	90미만~85이상	85미만~80이상	80미만
			점수(점)	10	8	6	4	2
성인지 비율**	사업단 3개년 평균 성인지 비율 대비 당해연도 성인지 비율	5	기준(%)	90이상	90미만~80이상	80미만~70이상	70미만~60이상	60미만
			점수(점)	5	4	3	2	1
감사지적 횟수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지적횟수	–	1건당 5점 감점					

* 만족도 조사는 운영기관(KMI)에서 실시 예정

** 성인지 비율은 전체 인력양성 수 중 여성의 비율임

3차년도 실적평가는 제4차 사업(`20~`24) 참여 시작 연도(`20)부터의 성인지 비율을 기준으로 함

단, 당해연도 전체 사업 참여자 중 여성 비율이 41.5% 이상(해수부 목표치) 달성할 경우 5점으로 평가함

○ 자율성과지표(20%)

- 수행기관별로 제시한 목표대비 성과달성률로 평가(필수성과지표 중복항목 제외, 5개 이상 권고)

평가지표	평가방법	배점(10)	평가점수						
자율 성과지표	목표대비 성과달성률	10	기준(%)	100	100미만~95이상	95미만~90이상	90미만~85이상	85미만~80이상	80
			점수(점)	10	8	6	4	2	

* 각 세부지표별 목표대비 성과달성률을 10점으로 환산

** 총 자율성과지표 점수 (A) = (a+b+c+d+…+g)/Nx2 (각 세부지표 점수: a,b,c,d…g, 세부지표 개수: N)

□ 정성적 지표(20%)

○ 모집·양성, 교육·지원, 사업운영 평가분야를 외부평가위원이 평가함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20)	평가점수					
모집양성	– 모집인원 규모 및 배출인원의 적정성 – 인력양성 목표 및 성과와 사업목적 부합성	5	기준	매우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점수(점)	5	4	3	2	1
교육지원	–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창의성 – 교육 내용의 적정성 – 교육생지원의 다양성·적정성	5	기준	매우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점수(점)	5	4	3	2	1
사업총괄	– 예산항목의 사업목적 부합성 – 개별 세부사업 목적·추진내역·결과와 전체 사업목적 간 연계 수준 – 사업관리 실태 및 관리의 충실성 등	10	기준	매우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점수(점)	10	8	6	4	2

그러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평가지표에 사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취업 유지율, 관련 기관 취업률 등의 정량적 평가지표가 없고, 정성적 지표는 모두 외부인원이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해당 평가가 다소 형식적인 평가에 그친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2025년부터 새롭게 제5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작할 계획인바 제4차 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도에는 체계적인 사업평가를 수행하여 관련 분야 취업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수료자 대상 무작위 추적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전문인력 양성사업 개선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대응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 발전방안(한국해양수산개발원, ’24. 6.~12.)’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임.

13)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해양수산부는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 선정시 선박 확보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확인 및 점검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사업」은 도서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외 도서지역 주민 및 방문객의 안정적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민간선사로 하여금 적자 항로에 여객선을 운항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손액을 보조하려는 등의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236억 700만원 중 234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200만원을 불용하였음[69].

【 2023년도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20,248	-	3,359	23,607	23,445	-	162	23,273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450	-	-	-	421	-	29	900

69)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6134-300)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 도선 등이 운항하지 않는 소외도서의 주민 및 방문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10개 항로에 대한 운영 지원비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집행액이 1억 6,1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35.8%임.

【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개요 】

□ 추진배경

○ 여객선·도선이 미기항하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지자체 공동 역할 필요

□ 사업개요

○ (예산) 9,000만원×10개 항로×국비보조율 50% = 4억 5,000만원

○ (지원대상) 여객선·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소외도서의 해상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선박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 (참여 조건) 선박, 인력, 예산, 접안시설 안전성 확보 필요

○ (지원내용) 용선료 등 선박 확보 비용을 제외한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운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내 국비 지원

○ (선정절차) 소외도서 항로 운영 사업계획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위원장), 학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연구기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등

○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① 계획의 충실성, ② 사업 타당성, ③ 지역 맞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선정 기준	주요 검토사항
계획의 충실성(30%)	• 선박 및 인력 확보 여부 • 지방비 확보계획의 충실성 • 기항지 접안시설의 안전성 확보 여부 등
사업 타당성(40%)	• 사업 취지 부합 여부 • 실거주자 현황 및 주변 해상교통과의 연계성 • 운항 계획 및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
지역 맞춤성(30%)	• 지역 주민 수요 반영 여부 • 관광상품과 연계 등 발전 가능성 • 사후 관리 계획 등

□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내역사업	2023년						2024년도 예산
	예산액 (A)	집행액	실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450	421	161	-	29	35.8	900

□ 향후 계획

< 연도별 항로 확대 계획안 >

구 분	2023년	2025년	2027년
항로 수 (총40개*)	10개 항로	30개 항로	40개 항로

* 선박 1척이 복수 도서에 기항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기 운항 중인 소외도서도 지원

* 자료: 해양수산부

□ 동 내역사업은 항로 운영지원을 희망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사업계획 평가위원회에서 계획의

충실성, 사업 타당성, 지역 맞춤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함.

그런데 2023년도 사업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평가위원회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운항횟수 실적기준으로 신안군 효지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로 운영이 미흡했고, 특히 4개 항로의 경우 운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23년도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집행내역 및 지연 경위 】

(단위 : 회, 천원)

지자체	소외도서	운항횟수	항로개시일	예산액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 부진 및 사업 지연 사유
제주특별 제주시	추포도 횡간도	66	'23. 5. 16.	45,000 (45,000)	9,619	선원 대체인력(건강상)이 없어 운항 차질 발생
전남 신안군	효지도	957	'23. 5. 22	44,000 (44.000)	20,656	정상추진
경남 고성군	자란도	8	'23. 12. 13.	43,000 (43,000)	30,673	행정선이 없어 감척어선을 개조·수리하고 기타선으로 용도 변경('23. 12.)
전남 여수시	대운두도	26	'23. 12. 19.	45,000 (45,000)	18,403	행정선이 없어 어선을 무상임대 계약하여 기타선으로 용도 변경('23. 11.)
전남 여수시	소두라도 소횡간도	10	'23. 12. 27.	45,000 (45,000)	23,663	행정선이 없어 감척어선을 개조· 수리하고 기타선으로 용도 변경('23. 11.)
전남 여수시	추도	6	'23. 12. 28.	45,000 (45,000)	27,377	행정선이 없어 감척어선을 개조· 수리하고 기타선으로 용도 변경('23. 12.)
전남 완도군	넙도	-	'24. 1. 26.	45,000 (45,000)	18.584	**행정선이 없어** 감척어선을 개조· 수리하고 기타선으로 용도 변경('24. 1.)
경남 통영시	오곡도	-	'24. 3. 4	45,000 (45,000)	0	도선 기항지 추가에 따른 해경 면허조건 협의('23.11.)·이행
충남 태안군	외도	-	'24. 4. 1.	45,000 (45,000)	0	**행정선이 없어** 어선을 무상임대 계약하여 기타선으로 용도 변경('23. 12.)하였으나 선원고용 지연('24. 3.)
전남 완도군	다랑도	-	'24. 4. 10.	19,000 (19,000)	11.620	**행정선이 없어** 감척어선을 개조· 수리하고 기타선으로 용도 변경('24. 1.)하였으나 선원고용 지연('24. 4.)

* 항로개시일 순서로 나열

** 자료: 해양수산부

□ 이처럼 동 내역사업의 운항실적이 낮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데에는 소외도서 항로 운영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박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소외도서에 기항하기 위한 신규 선박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유휴 도선이나 활용 가능한 행정선이 없어 연말이 되어서야 감척 어선 등을 행정선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해당 용도변경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운항 개시가 지연되었음.

이 사업은 선박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의 전제조건인 선박확보 현황 또는 계획이 중요한 요소이고, 선박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의 현재 상황을 보건대, 사업대상 선정시 먼저 선박 및 인력 확보 여부를 검토하고, 만약 당장 활용 가능한 선박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확보 계획 및 일정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양식에는 구체적인 선박 확보 계획이 누락[70]되어 있는 미비점이 있음.

70) 2023년도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 모집공고에 첨부된 소외도서 항로운영 사업 계획서 양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확보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선박 현황

선명	소유자	건조년도	톤수	마력	정원	**확보계획**
00호	*000*	*2000*	*2.3*	*150*	*6*	***용선, 구입, 건조***

따라서, 2027년 ‘소외도서 제로(zero)화[71]’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 선정시 선박 및 선원 확보 계획을 미리 점검하여 원활한 항로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공모 신청 당시 사업계획서에 선박확보 현황 또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는 입장이나, 선박 확보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한 확인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확인 및 점검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71) 국정과제 41-4. 연안여객선 공공성 강화 및 섬 지역 1일 생활권 구축

14) 국고여객선 건조: 신규 국가보조항로 지정 전에 사전계획 철저 필요

○ 국고여객선 건조 예산이 접안시설에 부적합한 선형구조에 맞춰 편성되어 총사업비 조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향후 신규 국가보조항로 지정 전에 충분한 현장조사 및 의견 수렴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고, 사전에 폐업예상항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고여객선 건조 사업」은 국가보조항로 운항 여객선 중 노후선 또는 항로여건에 부적합한 선박을 대체 건조 후 항로에 투입하여 도서지역의 안정적 해상교통수단 확보 및 선박·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62억 4,600만원 중 39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22억 1,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200만원을 불용하였음[72].

【 2023년도 국고여객선 건조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고여객선 건조	6,642	-	△396	6,246	3,945	2,219	82	9,980

72)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국고여객선 건조(6134-302)

(나) 검토의견

□ 해양수산부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선박 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국가보조항로 제도를 통해[73] 현재 102개 연안여객선 항로 중 수익성이 떨어지는 29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운영 중임[74].

「국고여객선 건조 사업」은 국가보조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여객선 중 노후화되거나 항로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을 대체하기 위한 선박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대천-외연도 항로에 투입될 선박 신규 건조 등을 위해 6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집행액은 39억 4,500만원임.

□ 이 중 대천-외연도 항로의 구체적인 사업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2022년 11월까지 민간선사가 운항하던 일반항로였으나 선사가 경영악화에 따라 해당 항로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고, 신규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쳤으나 신청자가 없어 항로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73) 「해운법」
제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74) 2024년 6월 기준 연안여객선 항로는 일반항로 73개(민간선사 운영 58개,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대상 항로 12개, 지방자치단체 자체 운영 3개)와 보조항로 29개로 분류할 수 있음

이에 섬 주민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2023년도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국고여객선 건조예산 24억원(총사업비 60억원)을 반영하였음.

【 대천-외연도 항로 국가보조항로 지정 경위 】

'22. 9. 8. : 대천-외연도 항로 단절 우려에 따른 신규사업자 공모(1차, 신청자 없음)
'22. 10. 27. : 대천-외연도 운항선사(㈜ 신한해운) 폐업신고서 제출**('22. 11. 7. 폐업)**
'22. 10. 28. : 대천-외연도 항로 단절 우려에 따른 신규사업자 공모(2차, 신청자 없음)
'22. 12. 24. : 대천-외연도 항로 국고여객선 건조 예산 24억원 편성
'23. 1. ~ 2. : 이용자 간담회 개최(3회, 보령시)
'23. 3. 21. : 국가보조항로(대천-외연도) 운항관련 업무협약 체결(대산지방해양수산청-보령시)
* '23년 7월부터 **국고여객선 건조 시까지 운항결손금은 해양수산부, 장기 민간 용선료는 보령시가 부담**
'23. 3. : 기본설계용역 착공
'23. 3. 24. : 국가보조항로 운항용역 사업자 공모(1차, 유찰)
'23. 4. 27. : 국고여객선 착수보고회 개최
* 접안시설 고려시 단동선이 아닌 쌍동선 건조 필요
** **당초 예산으로 쌍동선 건조시 정원 감소(現 180명 → 100명) 및 항해시간 증가(260분 → 300분 이상)** 로 보조항로 지정 이후 교통환경이 오히려 악화되어 **지역 주민들의 반대**
'23. 5. 3. : 국가보조항로 운항용역 사업자 공모(2차, 유찰)
'23. 5. 31. : 국가보조항로 운항용역 사업자 공모(3차, 유찰)
'23. 6. 28. : 단독응찰자(㈜ 신한해운)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완료
'23. 7. 1. : 대천-외연도 항로 국가보조항로 지정(운항사업자 ㈜신한해운)

* 자료: 해양수산부

□ 그런데 기본설계 과정에서 설계용역사 및 선박 운항 전문가 등이 접안 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답사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간담회와 설계용역 사전 협의회 등을 거친 결과 당초 계획대로 단동선[75]을 건조할 경우 접안이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75) 하나의 선체만을 가지는 일반적인 선박

또한, 쌍동선[76]으로 건조할 경우 안정적인 접안이 가능하지만 당초 예산으로는 정원 감소(現 180명 → 100명) 및 항해시간 증가(現 260분 → 300분 이상)로 보조항로 지정 이후 오히려 교통환경이 악화된다는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에 총사업비를 기존 60억원에서 85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설계 변경에 따라 2023년도 예산 24억원 중 1억 8,200만원만 집행하고 22억 1,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됨.

보령시는 국고여객선 건조 시까지 항로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신고한 기존 민간선사에 용선료를 지급하고 선박을 용선하여 항로를 다시 운영하고 있고, 운항에 따른 결손금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

폐업신고 이후 대천-외연도 항로는 다음과 같이 운영되었음.

- '22. 11.~12.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보령시의 요청으로 ㈜신한해운 운항 연장 - '23. 1.~ 6. : 보령시에서 ㈜신한해운에 용선료와 운항결손금 지급하여 운항 - '23. 7.~ : 국가보조항로 지정 이후 ㈜신한해운에 용선료(보령시), 운항결손금 (해양수산부) 지급하여 운항

□ 이 사업은 갑작스러운 민간선사의 폐업으로 충분한 사전조사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힘든 측면이 있었겠지만, 부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 지연이 발생한 점이 있음.

76) 같은 형의 2개의 선체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갑판 위에서 결합한 선박

- 설계 변경으로 인한 국고여객선 준공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관광객은 불가피하게 노후화된 선박[77]을 지속해서 이용해야 하고, 보령시는 월 1억원 이상을 용선비로 계속 지급하게 되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며, 노후선 이용에 따른 안전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사들의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인하여 향후에도 대천-외연도 항로와 같이 일반항로에서 국가보조항로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임.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주기적으로 국가보조항로 전환 희망 여부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국가보조항로 지정 전에 충분한 현장조사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적정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77) 현재 대천-외연도 항로에는 ㈜신한해운 소유 웨스트프론티어호가 운항중으로, 웨스트프론티어호의 선령은 23년임(진수일 '01. 2. 1.)

15)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해양안전체험시설 지원기준 및 비용 분담비율을 포함한 사업지침 사전 마련 필요

○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부산 해양레저안전체험관 건립지원 사업은 건립비 등 분담에 대한 이견으로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음. ○ 사업 착수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 분담비율에 대한 이견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안전체험시설 건립·운영 지원기준, 비용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명확한 사업지침을 사전에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은 여객선 등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 강화 및 선박 통항안전성 평가·진단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확보하고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의 건립 및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97억 6,500만원 중 81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500만원을 불용하였음[78].

【 2023년도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9,632	133	-	9,765	8,191	169	1,405	10,251

78)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6332-302)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부산 해양레저안전체험관 건립지원 사업은 부산광역시에 영남권 해양공간 맞춤형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문화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해양레저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위해 7억 5,000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보조에 대한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으로 전액 불용되었음.

【 부산 해양레저안전체험관 건립지원 사업 개요 】

(단위 : 백만원)

구분	부산 해양레저안전체험관 건립지원 사업		
건립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60번지 일원(용호만)		
사업주체	부산광역시		
사업기간	2023년~2026년(3년)		
사업규모	지상 3층, 지하 1층(건축면적 3,300㎡, 총면적 7,369.10㎡)		
총사업비	49,500(용지보상비 제외 : 41,600)		
국비 보조율	50%		
예산집행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2023	750	0
	2024	-	-

* 자료: 해양수산부

- 이 사업의 경과를 보면, 2021년 4월 부산광역시는 해양수산부에 영남권 해양레저안전체험관 건립 지원(국비 60%, 지방비 40%)을 요청하였고, 2022년도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해양레저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 연구' 예산 2억원이 증액 반영되어 타당성 조사가 실시됨('22. 4. ~ '23. 2.).

-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립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당초 부산광역시가 요청한 바와 달리 건립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향후 운영비는 부산광역시에서 전액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자 부산광역시는 국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국비 보조율에 대한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 간 의견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아 결국 2023년 8월 부산광역시는 사업을 포기하였고 예산 7억 5,00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음.

【 부산 해양레저안전체험관 건립지원 사업 추진경위 】

- '21. 4. : 영남권 해양(레저)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요청(부산광역시)
  * 총사업비 375억원(국비 225억원(60%), 지방비 150억원(40%))
- '21. 10.~12. : 해양레저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 연구 예산 2억원 증액(국회)
- '22. 4. : 부산 해양레저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실시(~23. 2.)
- '22. 10.~12. : 실시설계비 등 7.5억원(15억원의 50%, 자치단체자본보조) 반영(국회, 수시배정)
- '23. 2. : 부산 해양레저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 완료(한국해양대)
  * 총사업비 495억원(건립 타당성 인정)
  ** 부지비를 제외한 건립비 416억원 중 50%를 국비로 지원, 향후 운영비는 부산광역시 부담
- '23. 2.~3. :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결과에 국비 추가 지원사항 반영을 요청(부산광역시)
- '23. 3 : 부산광역시에 건립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 회신(해양수산부)
  * 건립을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및 건립을 추진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명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을 요청
- '23. 5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신규등록 요청(해양수산부)
- '23. 8. : 부산시에서 사업포기 알림(부산광역시 공문)

* 자료: 해양수산부

□ 이와 같이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 사이에 국비 보조비율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한 것은 시설 법적 근거의 성격 차이에 대한 것으로 보여짐.

- 현재 해양수산부는 본 세부사업을 통해 해양안전체험관 및 국민해양안전관도 운영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비로 해양안전체험관과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에 소요된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계속해서 그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79]」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에서 위 시설의 건립 및 운영 지원사업을 추모사업으로 결정('15. 9.)했기 때문이며,

- 부산 해양레저안전체험관 건립지원 사업은「해사안전법[80](현행 "해사안전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이고, 추후 다른 해양안전체험시설을 건립하게 될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성격은 추모사업이 아닌 해양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것임.

---

79)「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80)「해사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해양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한 해사안전 지식·정보의 제공, 해사안전 교육 및 해사안전 문화의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7조의2(해양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양안전 교육 및 해양안전 체험활동 사업
5. 그 밖에 해양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 해양안전체험관·국민해양안전관 개요 】

구분	해양안전체험관	국민해양안전관
위치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전라남도 진도군 팽목항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체험관)	국민해양안전관, 유스호스텔, 해양안전정원
운영내용	해양생존 체험, 이안류 체험, 침수선박탈출 체험 등 20종	해양생존 체험, 선박경도 체험, 해양직업 체험 등 13종
사업주체 (건립·운영)	경기도	진도군
건립기간	2015년~2021년(6년)	2015년~2021년(6년)
개관연도	2021년	2023년
건립비 (국비 보조율)	400억원(75%)	270억원(100%)
운영비 (국비 보조율)	33.3억원 ('21~'23: 60% → '24. 50%)	25.4억원 ('23. 60% → '24. 50%)

* 자료: 해양수산부

□ 국가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이 불용될 경우,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착수 전에 사전적으로 해양안전체험시설 건립·운영 지원기준, 비용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명확한 사업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해양안전체험관과 국민해양안전관 역시 개관 이후 2023년까지는 운영비에 대한 국비보조율이 60%였으나 2024년부터는 50%로 하향 조정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의 경우 「해양관광 SOC 사업 시행지침('20. 3.)」에 따라 지원기준을 '국비 50%. · 지방비 50%'로 명시하고 있음.

【 해양관광 SOC 사업 시행지침 일부 발췌 】

Ⅰ. 총칙

1. 목적

□ 「해양관광 SOC 사업」 시행지침은 해양관광 SOC 사업 대상지 선정, 사업계획 수립(변경) 및 시행, 사후관리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2. 해양관광 SOC 사업의 개요

□ (범위) 권역별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해양레저관광 거점, 마리나 비즈센터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 (근거법령)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보조사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보조사업의 규정준수 의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3. 지원의 형태 및 지원한도

□ (재 원) 일반회계(지자체보조)

□ (지원기준) 국비 50%, 지방비 50%(자부담 별도)

□ (사업규모)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 (지원범위)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

-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관리·보전, 이용

* 레저선박 정박·보관시설, 교육·창업 지원센터, 테마형 특화시설 등

□ (사업기간) 5년 이내(계획수립기간 포함)

- 1 -

* 자료: 해양수산부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3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재산수입 28억 2,000만원, 경상이전수입 284억 4,2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4억 1,800만원 등 319억 9,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1,242억 1,700만원이 증가한 1,562억 1,500만원이 되었음.

□ 징수결정액 1,562억 1,500만원 중 재산수입으로 15억 3,300만원, 경상이전수입으로 270억 1,600만원, 관유물매각대로 1억 200만원 등 총 1,369억 3,300만원을 수납하였고, 관계기관 예산부족 및 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해 192억 8,3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3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2,820**	**1,836**	**1,533**	**-**	**303**	**△1,287**
토지대여료	-	1	-	-	-1	-
기타관유물대여료	7	-	-	-	-	△7
기타재산이자수입	1,969	1,835	1,532	-	303	△437
기타재산이자외수입	844	-	-	-	-	△844
경상이전수입	**28,442**	**45,996**	**27,016**	**-**	**18,979**	**△1,426**
과태료	73	150	127	-	23	54
징계부과금	-	217	-	-	217	0
과징금	-	497	491	-	6	491
변상금	-	117	-	-	117	-
위약금	940	1,099	397	-	702	△543
가산금	-	50	1	-	49	1
기타경상이전수입	27,429	45,866	26,001	-	17,865	△1,428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18**	**862**	**862**	**-**	**-**	**444**
면허료및수수료	244	369	369	-	-	125
실습수입	20	-	-	-	-	△20
기타잡수입	154	493	493	-	-	339
수입대체경비수입	**146**	**-**	**-**	**-**	**-**	**△146**
기타재산이자외수입	146	-	-	-	-	△146
관유물매각대	**172**	**102**	**102**	**-**	**-**	**△70**
기타고정자산매각대	153	10	10	-	-	△143
토지매각대	19	88	88	-	-	69
재고자산매각대	-	3	3	-	-	3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	**107,420**	**107,420**	**-**	**-**	**107,420**
일반회계전입금	-	107,420	107,420	-	-	107,420
합 계	**31,998**	**156,215**	**136,933**	**-**	**19,283**	**104,935**

* 자료 : 해양수산부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당초 예산액은 1조 4,552억 7,4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732억 9,200만원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6,359억 8,600만원으로 증가함.

□ 예산현액 중 수산식품 고부가가치화 729억 7,200만원,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2,524억 7,800만원,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3,661억 1,700만원, 어촌어항활성화 3,608억 4,400만원, 어업인소득 안정지원 4,337억 2,900만원, 원양협력 378억 9,300만원 등을 지출하였고,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275억 6,300만원,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35억 5,100만원 등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어업인소득 안정지원 397억 5,700만원,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218억 800만원 등을 불용처리함.

【 2023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이월액	불용액
		전년이월	초과지출	예비비	이·전용				
수산식품 고부가가치화	69,882	4,199	-	-	1,599 △1,599	74,081	72,972	754	355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150,631	5,040	-	107,135	3,459 △4,446	261,819	252,478	3,551	5,791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392,661	22,827	-	-	-	415,488	366,117	27,563	21,808
어촌어항활성화	331,030	39,430	-	-	-	370,460	360,844	3,075	6,541
어업인소득 안정지원	472,281	246	-	-	11,691 △10,703	473,514	433,729	28	39,757
원양협력	38,789	1,550	-	285	310 △310	40,264	37,893	2,134	597
합 계	**1,455,274**	**73,292**	**-**	**107,420**	**17,058 △17,058**	**1,635,986**	**1,524,032**	**37,104**	**74,850**

* 자료 : 해양수산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지원: 배합사료 성능개선 등 배합사료 사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필요

○ 해양수산부는 양식배합사료의 성능에 대한 어가의 신뢰부족 등의 사유로 배합사료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해양수산부의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제도 시행이 유예되고 민간사업자도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배합사료 생산시설 구축사업을 포기하고 있으므로, 성장 효율이 높은 배합사료를 개발하고 배합사료 수요를 확보하는 등 배합사료 사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지원」 사업은 수산동물용 사료에 포함되는 성분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저비용·고효율 배합사료의 기술개발·공급을 통해 양식어장 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79억 2,400만원 중 73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300만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6,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81].

【 2023년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지원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지원	7,924	-	-	7,924	7,353	503	68	7,090

81)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특회계-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지원(3140-300)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양식산업에서 기존 사료보다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 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어사료 전문생산시설 구축', '사용확대기반구축', '친환경배합사료 공장건립' 등의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 중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구축'은 안정적인 배합사료 공급과 사료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연간 3만톤 수준의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2년에 경상남도(경남)와 제주특별자치도(제주) 2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음.

【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구축사업 개요 】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 colspan="6">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구축사업</th></tr>
<tr><td>사업목적</td><td colspan="6">안정적인 배합사료 공급과 사료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구축 지원</td></tr>
<tr><td>사업주체</td><td colspan="6">지방자치단체(제주, 경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50</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6">2022년 ~ 2024년 (종료)</td></tr>
<tr><td>사업규모</td><td colspan="6">제주 1개소, 경남 하동 1개소</td></tr>
<tr><td rowspan="3">총사업비</td><td colspan="6">95.24억원(국비)
* 제주: 20억원('22), 경남: 75.24억원('22~'24)</td></tr>
<tr><td>연도</td><td>2021년</td><td>2022년</td><td>2023년</td><td>2024년</td><td>총 계</td></tr>
<tr><td>국비</td><td>-</td><td>26</td><td>44.04</td><td>25.2</td><td>95.24</td></tr>
<tr><td>건립일정</td><td colspan="6">○ 제주 배합사료 공장 증축 준공 : '22. 2.~ '22. 12
○ 경남 배합사료 공장 신축 준공: '22. 2.~'24.12</td></tr>
</table>

* 자료: 해양수산부

제주의 경우 2022년에 편성된 20억원의 예산 중 2023년으로 이월된 10억원 전액을 2024년으로 재이월하였는데 이는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양어사료 전문시설은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임.

한편, 경남(하동군)의 경우 2023년에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구축 예산으로 44억 400만원이 편성[82]되었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실제 집행한 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6억원을 합산한 50억 40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음.

【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구축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제주	0	1,000	1,000	0	1,000	0	0
경남	4,404	600	5,004	0	0	5,004	0

* 제주의 '23년 이월 예산 1,000백만원은 '24년 전액 집행 예정
** 자료: 해양수산부

경남 지역 사업비가 전액 불용된 것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 총사업비의 50%를 부담하는 민간사업자(수협사료)가 자체 예산으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23.9)한 결과 동 사업이 수익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83]하여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하동군이

82) 공장 1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에 연부율 58.53%와 국비 보조율 30%를 적용하였음.
83) 해당 용역보고서는 신공장 건립 시 당기순이익이 2029년까지 순손실로 예상되며, 이때 누적 결손금은 약 90억원으로 예상되므로 투자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함.

2024년 1월에 사업을 최종 포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84].

또한, 해양수산부는 2024년에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건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 당초 경남 하동군과 수협사료가 동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해양수산부가 배합사료 공급·사용 확대를 위해 배합사료 활성화 대책[85]을 발표하면서 배합사료에 대한 수요 증가를 기대하였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배합사료 사용비율이 30%에 미달하고 있고, 공급규모 역시 18만 톤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등 배합사료 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도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를 기한 없이 유예한 상황임.

【 배합사료 사용비율 추이 】

(단위: 백만원, %)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사료 사용량	680,125	677,163	651,258	649,349	639,781	639,313
배합사료 사용량	165,391	172,177	174,286	190,032	185,081	185,081
배합사료 사용 비율	24.3%	25.4%	26.8%	29.3%	28.9%	27.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무역협회, 통계청

84) 경남 지역의 사업비 전액 반납을 위해 사업 정산을 완료('24.5.)함.

85) 해양수산부는 2018년 10월 배합사료 공급규모를 2022년까지 23만 톤, 2027년까지 30만 톤으로 확대하고, 사용률은 2022년까지 45%, 2027년까지 75%로 상향하여 장기적으로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배합사료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배합사료 공급 규모 추이 】

(단위: 톤)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배합사료 공급 규모	165,391	172,177	174,286	190,032	185,081	177,51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무역협회

□ 어업인들이 배합사료보다 기존의 생사료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배합사료의 경우 생사료 대비 성장 효율이 낮아 사육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상품 출하까지 소요되는 어업경비 증가로 경제적 수익성이 낮고, 일부 양식품종의 경우 배합사료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 등 배합사료의 성능에 대한 양식업자 및 유통업자의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이처럼 배합사료 사용에 따른 어가 부담 증가, 배합사료의 품질에 대한 불신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배합사료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업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수익성 부족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사용확대기반 구축'에서 저비용·고효율 사료개발을 위해 연간 23억원 안팎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86], 배합사료의 성능개선 및 품종 부합성

제고를 위한 집중연구를 통해 성장 효율이 높은 배합사료를 개발하여 배합사료에 대한 양식어민의 선호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배합사료 관련 직불제도 개선[87] 등 배합사료에 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6) 2019년 19억원, 2020, 2021년 23억원, 2022년 21억 4,900만원, 2023년 2,232만원이 편성됨.

87)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사업에서 현재 4개 어종(넙치, 돔, 볼락, 가자미류)에 대한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체 해수면·내수면 양식 어종까지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간육성까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생사료 혼용어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2) 친환경 어구보급: 생분해어구 보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해양수산부는 현재 생분해어구의 보급률이 높지 않은 상황(2023년 기준 14.6%)임을 감안하여 생분해어구의 생산단가 인하, 어업인의 선호도가 높은 자망 어종 중심의 어구보급 등 생분해어구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친환경어구 보급 사업」은 어업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일론 등 어구와 어업 폐기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업인들에게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고, 어업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자원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539억 5,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88]

【 2023년도 친환경 어구보급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친환경 어구보급	53,952	-	-	53,952	53,952	-	-	34,870

88)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특회계-친환경 어구보급(3140-303)

(나) 검토의견

□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에서 어업 폐기물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및 수산자원 손실[89]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닷속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 어구[90]와 친환경 인증부표[91]를 각각 보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생분해어구보급’과 ‘인증부표보급’은 지자체 보조사업[92]으로, 2023년 생분해어구보급에 편성된 59억원 중 78.9%인 46억 5,500만원이 실집행되었고, 친환경인증부표보급에 424억 8,200만원이 편성되어 245억 4,300만원이 실집행되었음.

【 2023년도 생분해어구 및 인증부표 보급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교부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생분해어구보급	5,900	5,900	4,655	290	1,003	78.9
인증부표보급	42,482	42,482	24,543	19,694	451	57.7

* 자료: 해양수산부

89) 어업활동 중 유실되어 해저에 침적된 폐어구로 인해 수산자원 손실*, 해양오염** 및 선박사고***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폐어구·폐어망 등에 수산생물이 걸려 폐사하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연간 어업생산금액의 10%인 4,392억원의 손실 발생('23년 기준)
** 수거된 침적(수중)쓰레기의 90%이상이 폐어구('18, 어장수거사업 분석 결과)
*** 최근 5년간('19~'23) 국내 해양사고 14,802건 중 폐어구에 등 해상부유물 의한 사고 1,839건 (12.4%)

90) 바닷속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 분해되는 어구

91) 스티로폼 부표의 어장환경 훼손에 따라,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성능이 개선된 부표

92) ‘생분해어구보급’은 [차액지원(생분해 구입가격 - 나일론 가격) + 추가지원(나일론 가격 × 40%)]에 대하여 국고 70%, 지방비 30%로, ‘인증부표보급’은 인증부표 구입 시 국고 35%, 지방비 35%, 자담 30%로 운영되고 있음.

□ 이 중 ‘생분해어구보급사업’의 경우 2023년도 실집행률이 78.9%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월은 주로 생분해어구 생산 단계에서 납품 지연으로, 불용은 기존의 나일론 어구 등 선호에 따른 사업 미참여 및 포기에 따른 것임.

해양수산부는 당초 유실률이 높은 자망 및 통발 어구를 생분해성 어구로 대체함으로써 생분해어구의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생분해성 어구 연구와 개발에 착수해 2023년까지 자망 16종, 통발 6종 등을 포함한 총 25종의 생분해성 어구를 개발하여 보급해 왔고, 세계 최초로 개발한 생분해어구의 국제 규격화를 통해 수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밝히고 있음.

□ 그런데 2023년 기준 조업 중인 자망·통발 어선 5,715척[93] 중 생분해성 어구가 보급된 어선은 832척으로 보급률은 14.6%에 불과하고, 최근 5년 동안 연간 보급률도 8% ~ 14% 사이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5년간(2019~2023년) 생분해어구 보급률 】

(단위: 척,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업척수	4,153	3,570	4,770	5,091	5,715
지원척수	333	464	545	604	832
보 급 률	8.0	13.0	11.4	11.9	14.6

*자료: 해양수산부

93) 전체 자망·통발 어선 중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에 참여한 어업에 속한 어선 수 기준

어업별 보급률 편차도 큰 편으로 붉은대게 자망, 감성돔 자망, 대게 자망 등 일부 어업에서는 보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꽃게자망과 같이 조업어선 수가 많은 어업에서 보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인 보급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보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 재료 특성상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재고를 유지하지 않고 계약 후 생산이 이루어져 일시 대량 납품에 한계가 있고 교체주기가 잦은 생분해어구에 비하여 사시사철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재사용이 용이한 나일론 어구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는 입장이며,

다만, 붉은대게 자망, 감성동 자망, 대게 자망 등은 생분해어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어종[94]으로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생분해어구 보급률 】

(단위: 척, %)

구분	합계	대게 자망	붉은대게 자망	꽃게 자망	참조기 자망	붕장어 통발	문어 통발	꽃게 통발	감성돔 자망
조업척수	5,715	475	20	3,825	146	28	381	794	46
지원척수	832	264	20	380	80	4	19	37	28
보 급 률	14.6	55.6	100.0	9.9	54.8	14.3	5.0	4.7	60.9

* 자료: 해양수산부

94) 나일론보다 생분해 그물감에서 대게 어획물을 채취할 때 다리 떨어짐과 같은 어획물 손상이 적어 작업이 편리하며, 이에 따른 인력 저감 효과 확인(기존 어구 5인 필요 → 생분해 어구 4인 작업 가능)

또한, 생분해어구 사용 만족도 조사[95]에 따르면 생분해어구 사용의 불만족 이유로 '생분해어구의 성능이 기대에 못 미쳐서'가 52.6%로, '지원규모가 작아서'가 24.6%로 높게 나타났는데,

성능 문제는 생분해어구가 어구 유실을 감안하여 1~2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는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이고,

지원규모와 관련하여서는 생분해어구 가격이 나일론어구보다 적게는 2.8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비싼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으로 두 어구의 차액은 물론 나일론 가격의 40%를 추가 지원하여 어업인의 부담금액을 나일론 어구 구매 시보다 40% 정도 낮춰주고 있으나, 생분해어구는 나일론 어구보다 더 자주 교체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생분해어구 및 나일론어구 가격 차이 】

(단위: 원)

품 명	규 격	나일론	생분해
대게자망	240×2530×17	24,102	83,490
붉은대게자망	212×1430×17	10,484	36,320
꽃게자망(완제품)	150×2000×13	33,244	92,640
문어통발	35×15합×15	3,436	20,240
꽃게통발	35×21합×21	6,173	28,800

* 자료: 해양수산부

95) 2023년 FTA 국내보완대책 어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24.5 발간)

□ 생분해어구 보급 사업은 집행 저조로 2024년 예산이 2023년에 비하여 24억 4,600만원이 감소한 35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24년부터 해양환경 오염과 수산자원 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통발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어업인이 사용이 끝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96]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 사업에서는 어구 유실률[97]이 높고 생분해어구에 대한 어업인의 선호도도 높은 자망 어종을 중심으로 집중 보급을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자망 어종부터 단계적으로 생분해어구 사용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도 있어 보임.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어민들이 생분해어구를 선호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생분해어구의 낮은 내구성으로 인한 잦은 교체주기, 나일론 어구 대비 비싼 가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들 수 있는데,

생분해어구의 내구성이 낮은 것은 처음부터 어구가 조업 중 유실될 것을 감안하여 잘 분해되는 방향으로 설계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점을 어업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어업인들이 이를 생분해어구의 성능 미달 문제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

96) 어구보증금제는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임. 2024.1월부터 통발어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에 확대 시행할 계획임.

97) 조업 수심이 깊고 근해에서 이루어지는 자망어업은 어구관리의 어려움으로 다른 어구(12~25%) 보다 유실률(33%)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어구 전 주기 관리체계 기반 강화를 위한 어구실태조사 보고서」 '23.12 발간

비싼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수작업 위주의 어구 제작 대신 대량생산 시설을 구축하여 생산단가 인하를 도모하는 등 생분해 어구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것으로 보임.

3)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 지원 장비 확대 등 어가의 사업 수요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해양수산부는 지원 장비의 종류 확대, 홍보 강화 등 내역사업인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어가의 신청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 사업은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자원순환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22억 4,500만원 중 22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98].

【 2023년도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	2,245	-	-	2,245	2,236	-	9	2,249

98) 회계(기금)-세부사업: 농특회계-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3140-355)

(나) 검토의견

□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 사업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22.7.21. 시행)됨에 따라, 수산부산물[99]의 친환경적·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2023년부터 신규 반영된 사업임.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자원순환 인프라구축' 사업은 굴 껍데기에서 유기물과 플라스틱 코팅사(絲) 등을 제거하는 전처리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처리시설은 ① 굴채취 해상작업대에서 1차 유기물을 제거하는 '해상세척장비', ② 굴까기 작업장에서 코팅사를 분리하는 '코팅사 분리기', ③ 미생물을 이용하여 굴껍데기 냄새를 저감하는 '악취 저감시설'임.

【 자원순환 인프라구축 사업의 세부내용 】

구분	자원순환 인프라구축 사업			
사업내용	굴 껍데기에서 유기물과 코팅사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시설 지원			
주요내용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1	해상세척 장비	굴채취 해상작업대에서 1차 유기물 제거	6억원 (개소당 40백만원×50개×30%)
	2	코팅사 분리기	굴까기 작업장에서 코팅사 분리	9억원 (개소당 60백만원×50개×30%)
	3	악취 저감시설	미생물을 이용하여 굴껍데기 냄새 저감	4,500만원 (개소당 3백만원×50개×30%)

99)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말함.

구분	자원순환 인프라구축 사업
사업대상	박신장을 운영하는 수하식 굴 양식어업인 등
사업기간	2023년~계속
2023년 예산	총 51억 5,000만원(국비30% 지방비40% 자담30%), 국비 15억 4,500만원

* 자료: 해양수산부

2023년에는 ‘해상세척장비’, ‘코팅사 분리기’, ‘악취 저감시설’을 각각 50대씩 보급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으로 15억 4,500만원이 편성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단계에서 6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800만원이 이월되어 실집행률은 41%로 나타났음.

이는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3년도 내에 총 138개소의 굴박신장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이와 달리 실제 연내 지원대상 어가는 99개소로 계획 대비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자원순환 인프라구축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전라남도	36	34	-	2	94.4
경상남도	1,509	601	908	-	39.8
합계	1,545	635	908	3	41.1

* 자료: 해양수산부

이와 같이 지원대상 어가가 계획대비 저조한 것에는 홍보부족, 물가상승에 따른 경영난 지속으로 인해 어민들이 자부담 비용(사업비의 30%)에 대한 부담감이 상승한 점, 지원 대상 장비가 해상세척장비, 코팅사분리기, 악취저감시설의 3종으로 제한되어 있어 수요가 저조했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자원순환 인프라구축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지역	사업량[1]	예산액	'23.12.31 기준		
			집행량[2]	집행액	실집행률
통영시	83개소	994	55개소	510	51.3
거제시	11개소	333	2개소	2	0.6
남해군	6개소	91	3개소	58	63.7
고성군	1개소	91	2개소	32	35.2
여수시	37개소	36	37개소	33	94.4
총합	**138개소**	**1,545**	**99개소**	**635**	**41.1**

* 자료: 해양수산부

□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을 통한 지원 대상 장비를 현행의 3종 대비 확대하는 내용으로 2024년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였고, 이를 통해 어가의 신청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현재 어가의 신청률이 계획 대비 저조하여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점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상기 지침의 개정과 같이 지원 대상 장비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어가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어가의 신청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23년 대비 2024년 동 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

2023년	2024년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기준(국비 기준) - 1차 유기물 제거를 위한 해상 세척 장비(40백만원 이내) - 이물질 제거를 위한 코팅사 분리기(60백만원 이내) - 미생물을 이용하여 악취 저감시설(3백만원 이내)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기준(총액 기준 **1개소당 최대 103백만원**) - 1차 유기물 제거를 위한 **육·해상** 세척장비 - 이물질 제거를 위한 장비(**해상 코팅사절단기, 패각분쇄기, 패각 수송 컨베이어 등**) - 미생물 **등을 이용한** 악취 저감시설

* 자료: 해양수산부

4) 연근해어선감척: 감척신청 어민의 신청 철회 최소화 등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감정평가 이후 감척신청 철회 비율이 25% 정도이므로, 집행개선을 위하여 선정절차의 조기착수와 감정평가 결과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신청철회 및 그로 인한 집행부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인한 수산자원량의 증대, 잔존어업인의 경영 여건 개선 등 감척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사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 및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연근해어선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341억 5,600만원 중 1,184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157억 1,000만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3,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100].

【 2023년도 연근해어선감척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연근해어선감척	134,078	78	-	134,156	118,410	15,710	35	162,607

100)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특회계-연근해어선감척(3145-300)

(나) 검토의견

□ 연근해어선감척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101]가 감척 대상 어업을 선정한 후 감척 희망자를 우선 선정(자율감척)하고 목표 미달 시 직권으로 감척 어선을 지정(직권감척)하며[102],

감척 대상 어선이 정해지면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선주에게는 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의 잔존가치에 대한 매입지원금을, 어선원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개요 】

구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사업목적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구조조정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
추진방식	▪ 자율감척(어업인의 신청) ▪ 직권감척(자율감척 신청 저조 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
지원내용	▪ 지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 평년수익액의 3년분×100% ** 실직어선원 지원(통상임금의 최대 6개월분) ▪ 불이익 조치: 자율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후 감척 포기 시 3년간 자율감척 신청 불가, 직권감척 불응자는 면세유, 영어자금 신규융자 지원 축소 조치

* 자료 : 해양수산부

101) 근해어업은 해수부장관이, 연안어업은 시·도지사가 감척 대상 어업을 선정함.
102) 2022년 이후 직권감척은 실시된 바 없으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 감척은 모두 자율감척으로 실시됨.

(1) 감정평가 이후 감척신청 철회 최소화 방안 등 마련 필요

□ 2023년에는 연근해어선 감척을 위한 예산으로 1,325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자체가 1,170억 6,800만원을 교부받아 이 중 936억 3,300만원을 집행하여 70.6%의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2023년도 연근해어선 감척 실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본예산 (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연안어선·정치망	25,757	25,757	1,834	27,591	13,185	6,008	1,549	51.2
근해어선	106,821	91,311	23,558	114,869	80,448	9,327	6,034	75.3
합계	132,578	117,068	25,392	142,460	93,633	15,335	7,583	70.6

*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집행액은 제외한 금액임
**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정평가 등 사업 진행 기간 소요, 사업대상자 감정평가 이후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2차 대상자 선정으로 사업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대상자 선정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는 감척 대상자를 조기 선정(당해연도 2월→전년도 12월)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예비후보자를 사전에 추가 선정(대상자의 50%)하여 감척 포기자 발생 시 즉시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를 통해

대상자 선정 지연에 따른 문제는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같이 기존 신청자의 사업포기에 대비해 예비후보자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율감척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 이후 감척신청 철회 시 3년간 감척 신청을 할 수 없는 불이익으로 받게 되므로 이들이 신청을 중도 철회하지 않고 최대한 감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재 선주에 대한 감척지원금은 대상 어선 평년수익액의 3년분(폐업지원금)[103]과 어선·어구의 잔존가치(매입지원금)를 감정평가하여 산정되고 있는데,

감척 희망어업인은 통상 경영수지가 악화된 상태에서 감척을 신청하게 되므로 감척지원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감척 신청 당시 감척지원금을 예측하기 어려워[104], 감정평가 이후 감척신청을 철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2023년의 경우 감척신청을 한 근해어선 중 28.3%가 감정평가 이후 감척신청을 철회하여 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103) (산정방법) 평년수익액 = 평균어획량(3년)* × 평균 연간판매단가(1년) - 평년어업경비(1년)**
* 단, 변동폭이 전년도 대비 1.5배 이상일 경우 해당연도만큼 소급하여 기산한 3년 적용
** 단, 변동폭이 전년도 대비 1.5배 이상일 경우 인근 비슷한 규모, 같은종류 어업 2개이상의 평균 적용

104) 폐업지원금 산정 방식은 기존 어업별·톤급별 기준가격 지급에서 2021년 이후 개별감정평가를 통한 폐업지원금 산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어업인이 감척 사업 참여시 감척지원금의 예상 금액을 알 수 없게 됨.

따라서 어업인들이 기존 업종별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액에 대해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어획량 급감으로 인해 어획량의 적은 어선의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적어 감척신청을 하지 않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감정평가 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감척 희망어업인의 신청철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해양수산부는 1994년부터 동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2023년까지 30년간 총 1조 5,553억원의 예산 투입으로 전체 어선의 40.3%인 2만 172척을 감척하였고[105],

【 '94~'23년 연근해어선 감척 실적 】

(단위: 척, %, 억원)

구분	전체 척수(A)*	감척 척수(B)	감척 비율(B/A)	금액
근해어선	6,541	1,663	25.4	8,072
연안어선	43,520	18,509	42.5	7,481
합계	50,061	20,172	40.3	15,553

* 전체 척수(B)는 '94년 연근해어선 등록어선 기준
** 자료: 해양수산부

105) 이하에서는 2023년 신규 도입된 정치망어업은 제외함.

최근에는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19～’23)’에 따른 총 1,300척(근해 300척, 연안 1,000척)의 감척 목표 중 실제 1,221척(근해 295척, 연안 926척)을 감척함으로써 93.9%의 달성률을 보임.

【 ’19～’23년 연근해어선 감척 실적 현황 】

(단위: 척)

구분	’19	’20	’21	’22	’23	합계(A)	목표(B)	감척비율(A/B)
근해어선	13	53	86	67	76	295	300	98.3
연안어선	360	176	109	105	176	926	1,000	92.6
합계	373	229	195	172	252	1,221	1,300	93.9

* 자료: 해양수산부

□ 동 감척사업은 수산자원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 및 어가의 경영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연안어선의 경우 순이익률이 유지되고 있으나[106],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순이익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감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경영여건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근해어업 최근 5년간 순이익률 추이 】

(단위: %)

구분	’18	’19	’20	’21	’22
순이익률	22.2	20.9	25.4	19.9	16.3

* 자료: 해양수산부

한편, 수산자원량은 해양수산부가 당초 목표한 자원량(503만 톤)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106) 연안어업은 최근 5년간 50% 내외의 순이익률을 보이고 있음.

【 수산자원량 추이 】

(단위: 만톤)

구분	'18	'19	'20	'21	'22
수산자원량	361	327	307	345	394
목표자원량* 대비 비율	71.7	65.0	61.0	68.6	78.3

* 목표자원량 503만톤 달성 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량은 매년 최대 약 131만톤으로 추정
** 2023년도 수산자원량은 추정 중
*** 자료: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의 어선세력은 3만 7,238척으로 현재 어업생산량 대비 어선 척수는 일본의 4.5배, 노르웨이의 6배에 해당하는 등 여전히 과다하여 향후 9,060척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제3차 기본계획('24~'28)상 감척물량으로 2,024척(근해 524척, 연안 1,500척)을 산정[107]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인한 수산자원량의 증대, 잔존어업인의 경영 여건 개선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현재 경영개선 효과가 미흡한 근해어업을 중심으로 감척사업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들을 분석해 이를 해소해 나가는 등, 감척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임.

107)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목표치 산정근거는 업종별 어획강도와 적정자원량을 1차적으로 고려(목표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하고, 2차적으로 어획강도가 강한 근해어선 집중감척을 목표로 자원량 회복과 근해업종 순수익률 증가를 고려하여 최종 목표를 산정하였음.

5) 어업인 삶의 질 향상

○ 해양수산부는 여성어업인들의 수검률이 계획 대비 부족하여 예산액의 이월·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여성어업인특화검진사업과 관련하여 검진병원 확대의 지속적 추진, 특화건강검진 항목의 차별성에 대한 홍보 등 수검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추진 시 지역별 어업 특성 및 수요에 기반한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효용성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어업인의 질환 조사, 어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 대한 인력 지원,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등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29억 2,300만원 중 29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을 불용하였음[108].

【 2023년도 어업인 삶의 질 향상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어업인 삶의 질 향상	2,864	59	-	2.923	2,903	-	20	2,967

108)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특회계-어업인 삶의 질 향상(3440-312)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어업인질환조사’, ‘낙도지역어업인 안전쉼터’,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여성어업인 특화검진’ 등 총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어업인질환조사’를 제외한 7개 내역사업을 민간 또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

【 2023년도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내역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예산액	비고
어업인질환조사	200	직접수행
전문지원기관 운영	300	민간경상보조
어업안전보건센터	360	
어촌생활돌봄지원	53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371	
어업활동지원	180	자치단체경상보조
낙도지역어업인 안전쉼터	1,000	자치단체자본보조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400	
합 계	**2,864**	

* 자료: 해양수산부 자료 재구성

이 중 사업시행주체의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여성어업인특화건강검진’,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사업으로 실집행률이 각각 39.4%, 23.2%, 19%로 나타났음.

【 2023년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실집행 부진 내역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시행주체	해수부		사업시행주체					
		예산(A)	집행액	교부액	예산현액	집행액(C)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C/A)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원진직업병관리재단	371	371	371	371	146	225	-	39.4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지자체	1,000	1,000	1,000	1,000	232	768	-	23.2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지자체	400	400	400	400	76	324	-	19

* 자료: 해양수산부

(1)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여성어업인 검진기관 접근성 개선 및 검진항목의 차별성 집중 홍보 필요

□ 먼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은 45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등 여성어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특화건강검진 비용[109]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주체인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이 2023년 예산현액 3억 7,100만원 중 1억 4,600만원을 실집행하고 2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3년에 이월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1,800명의 여성어업인을 검진대상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562명의 여성어업인만이 특화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 교부된 보조금 중 검진비용에 해당하는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109) 특화건강검진 비용은 국가가 90%를 부담하고, 여성어업인의 자부담은 10%임.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연내에 검진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추가로 검진을 희망하는 여성어업인이 있어 원진직업병관리재단과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당초의 2023년 연말에서 2024년 2월로 연장하였고, 집행잔액 2억 2,500만원을 이월하여 112명의 여성어업인에 대한 추가 검진을 실시했으며, 최종적으로 1억 4,700만원을 불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2023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보조사업비	집행액 ('23.12월말)	집행액 ('24.2월말)	집행잔액 ('24.2월말)
검진비용	265	100	120	145
행정비용 (기관 업추비, 운영비 등)	106	46	104	2
합계	**371**	**146**	**224**	**147**

* 자료: 해양수산부

□ 동 사업의 경우 사업개시연도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당초 수검인원 계획 대비 실제 수검인원의 비율이 각각 36.8%, 37.4%로 사업목표에 미달하고 있음.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목표 및 실제 수검인원 】

(단위: 명, %)

연도	수검 목표 인원(A)	실제 수검인원(B) ('24.2월 말까지)	수검률(B/A)
2022년	1,500	552	36.8
2023년	1,800	674	37.4

* 자료: 해양수산부

이와 같이 수검률이 저조한 주요 사유는 2023년에 검진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전국 6개 시·도에 12개소밖에 되지 않았고,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어업인이 많은 등 검진병원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과 일반 국가건강검진과의 차별성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검진대상자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도 수검률 저조의 원인 중 하나로 보임.

【 특화건강검진 내용 비교 】

검진내용	항목	국가검진 중복여부	비고
근골격계질환 (신체부담작업, 중량물취급)	슬관절, 요추, 수골	x	-(특검) 슬관절(무릎), 요추(허리), 수골(손가락) X-ray 촬영 및 의사의 신체 진찰 -(국검) 미실시
	근골격계증상 선별설문 등	x	
골절위험 (낙상)	골밀도검사(DEXA, 요추와 대퇴골)	o	-(특검) 2년 주기로 골밀도 검사(만54, 66세 제외) -(국검) 만 54세, 66세 여성만 대상
	근육량측정(다주파수측정법), inbody	x	-(특검) 체성분 분석으로 골격근량, 체지방량 등 측정 -(국검) 미실시
심혈관계질환 (온열, 스트레스)	LDL 콜레스테롤	△	-(특검) 2년 주기로 LDL콜레스테롤 측정 -(국검) 4년 주기로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측정
	당화혈색소(HbA1C)	x	-(특검) 당화혈색소(최근 3개월 평균 혈당 수치) -(국검) 공복 혈당검사(측정 당시 혈당 수치)
난청 (소음)	순음청력검사 (0.5K, 1K, 2K, 4K)	x	-(특검) 0.5K, 1K, 2K, 4K 각 주파수별 청력 역치(dB) 측정 -(국검) 1K주파수에서 40dB 역치 유무 측정

*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2024년에는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완화(병원급→의원급)하여 검진기관 확대(전국 33개소)를 추진 중이고, 병원선을 보유한 시·도(경남, 인천, 전남, 충남)와 병원선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시·도당 3개소 안팎의 검진기관 추가 지정만으로는 접근성 개선에 한계가 있고, 병원선 활용도 공중보건의의 추가진료 부담 및 추가 비용 소요 등의 문제로 추진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보임.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의료기관 추천을 독려하는 등 검진병원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병원선 활용을 위하여 재정당국 및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특화건강검진사업 홍보 시 검진항목의 차별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여성어업인들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요 확인 등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다음으로,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은 지자체가 사업시행주체가 되어 2개 연도 동안 외국인 어업근로자의 숙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에는 2022년 사업지로 선정된 강원도 강릉항과 경북 오산항에 각각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2차 연도 사업비 4억원을 편성[110]하였으나, 이 중 7,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2,400만원을 이월하였음.

【 2023년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 대상	2023년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경북(오산항)	200	-	200	17	183	-
강원도(강릉항)	200	181	381	240	141	-

* 자료: 해양수산부

이와 같이 이월액이 발생한 것은 오산항의 경우 사업자 변경으로, 강릉항의 경우 지자체 추경예산 확보와 부지이용 협의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복지회관의 건립 일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임[111]

110) 개소당 총사업비 8억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임.
111) 오산항 및 강릉항의 경우 3년차인 2024년 건립을 완료하고 각각 4월 및 6월부터 운영 중에 있음.

□ 동 사업은 부지확보, 행정절차, 민원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고려하여 2020년부터 기존 단년차 사업에서 2년차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해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이월액이 발생[112]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현재 건립 중이거나 건립할 예정인 사업지[113]에서 이월액 과다 발생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단계별 장애요소를 고려하여 지자체의 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복지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10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을 통해 2024년 현재까지 총 9개의 복지회관이 건립되었고 추가로 3개의 복지회관이 건립될 예정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에 9개소, 경상북도에 2개소, 전라남도에 1개소가 건립 또는 건립될 예정임.

【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지역별 누적개소수 】

(단위: 개소수)

연도	2010	2011	2014	2015	2017	2018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누적
강원도	1	1	1	1	1	1	-	1	(2)*	9
경북	-	-	-	-	-	-	1	1	-	2
전남	-	-	-	-	-	-	-	-	(1)	1

* 건립 예정

** 자료: 해양수산부

112)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경북 죽변항의 경우 사업자 변경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2023년에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음.

113)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강원도 2개소와 전남 1개소의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이 강원도에 집중된 점에 대하여 동 사업이 당초 2010년 어선어업의 비율이 높은 강원도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수협 등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선어업과 달리 단체로 출어를 나가지 않는 양식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동 기숙시설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거나[114],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부족 및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해 신청이 적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외국인 어업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등 복지 향상을 통해 외국인의 어촌 이탈을 방지하여 어업인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복지회관 이용대상인 외국인어업근로자(E-9, E-10 비자)의 수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 외국인어업근로자수 연도별 추이 】

(단위: 명)

비자 구분 / 연도		계	어업종사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실근무 인원 (연말기준)	2019	18,697	8,665	10,032
	2020	16,643	6,850	9,793
	2021	14,593	5,678	8,915
	2022	17,879	8,707	9,163
	2023	20,145	11,011	9,250

* 자료: 해양수산부

114)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충남·전남의 경우 양식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어업근로자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지역별 복지회관의 건립수요를 파악하여 지역별 어업 특성 및 수요에 기반한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이 복지회관 건립의 효용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 사업 신청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수산 공익직불제

○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직불금의 2023년 계획 대비 지급인원이 49% 수준이므로, 승선기간 등 지급자격요건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직불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이 계획 대비 69% 수준이고, 그 중에서도 44%만이 실제 직불금을 지급 받고 있으므로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이 실제 직불금 지급 단계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은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934억 3,400만원 중 867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66억 7,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115].

【 2023년도 수산 공익직불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수산 공익직불제	93,328	106	-	93,434	86,762	-	6,672	106,233

115)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특회계-수산 공익직불제(3460-310)

(나) 검토의견

□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은 2014년에 도서·접경지역을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및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을 추가하였고, 2023년부터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을 기존 조건불리지역뿐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의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전환하여 총 4개의 직불제가 운영되고 있음.

【 2023년도 수산공익직불제 사업의 구성 및 지원내용 】

구 성	지원 내용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	▪ 어업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내 비(非) 소규모어가 지원 * 조건불리지역(2014년~)의 경우 동 사업 내 포함
경영이양 직불	▪ 신규 어업인 유입을 위해 어업경영을 50세 이하의 젊은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 지원
수산자원보호 직불	▪ 총허용어획량(TAC), 감척 등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 지원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	▪ 친환경수산물 인증 또는 100% 배합사료 사용 등 친환경 양식을 이행하는 양식어가 지원

* 자료 : 해양수산부

4개의 직불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실집행률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 '수산자원보호 직불',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 '경영이양 직불' 각각 63.4%, 68.9%, 82%, 46.4%임.

【 수산 공익직불제 내역사업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해수부			지자체				
	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예산 현액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	51,224	47,060	47,060	47,060	32,461	-	14,598	63.4
수산자원보호 직불	11,934	9,971	9,971	9,971	8,218	-	1,746	68.9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	27,865	27,720	27,720	27,720	22,837	-	4,883	82.0
경영이양 직불	500	254	254	254	232	-	22	46.4

(1) 어선원 직불 사업: 직불금 지급요건의 타당성 검토 필요

□ 2023년부터 시행된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사업은 2022년 9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이라 함)의 개정에 따라 도입[116]된 것으로, 지급대상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의무이행 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었음.

이 중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소유자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 어업 외 소득 2,000만원 미만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2023년에는 편성된 180억원 중 89억 5,000만원만을 해당 지자체에서 집행함.

116) 소규모어가 직불의 경우 규모, 잡는 어종, 기술 등에 따라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소규모어가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어선원 직불의 경우 해난구조 등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어선원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어촌을 유지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2023년도 어선원 직불 개요 】

구분	내 용
어선원	▪ (목적)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통해 어선원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 도모
	▪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어업 외 소득 2천만원 미만 등
	▪ (지급단가·예산) 연 120만원/180억원

* 자료 : 해양수산부

□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 1만 5,000명의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지급을 받은 어선원은 계획 대비 49% 수준인 7,458명으로 편성인원과 집행인원간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 2023년도 어선원 직불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산출근거	실집행	실집행률
어선원	18,000	·15,000명×120만원×100%+행정비(직불금 1.7%)	8,950 (7,458명)	49.7

* 자료: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직불금 지급 어선원수가 당초 계획 대비 49% 수준인 것에 대하여 수산자원감소, 유류비 상승 등으로 6개월 이상 승선기준을 충족하는 내국인 어선원 수가 부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편성을 위한 직불금 지급 대상수 추산 시 실제 소득기준이나 승선기준 등을 충족할 수 있는 어선원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다소 미흡한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짐.

□ 특히, 현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117]상 어업종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1년에 60일 이상'인 점 및 일부 어종은 연간 실제 조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00일에 미치지 못하는 점[118] 등을 고려할 때, 현행 6개월 승선 요건은 다소 엄격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대상자의 실제 근무여건·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재 자격요건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등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11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118)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안선망은 전어를 주로 어획하는 업종인데 전어의 금어기가 5월1일에서 7월15일까지로 약 80일가까이 조업이 불가능하고, 1년(365일)중 조업이 가능한 260일 중 태풍, 풍랑주의보 등으로 조업을 못하는 기간과 어획물 양륙, 조업에 나가기 위하여 어구 정비, 식품 구매 등을 위해 사용하는 기간도 추가적으로 조업일수에서 제외할 경우 실제로 연안선망 어선들의 연간 조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97일정도에 불과함.

(2) 수산자원보호 직불: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 어선의 의무 이행 관리 필요

□ ‘수산자원보호 직불’사업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TAC)[119] 할당 준수 및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한 어업인 등에 대하여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개요 】

구분	수산자원보호 직불사업
지급대상	▪ 연근해어업허가 어선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또는 상법상 회사
지급조건	▪ 준수의무(TAC(기본) + 휴어 등 선택의무 2개 이상) 설정 * 선택의무는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해양쓰레기 수거, 어선 감척, 생분해성 어구 사용, 종자 방류 등
지급제한	▪ 준수의무(TAC(기본) + 휴어 등 선택의무 2개 이상) 미이행 ▪ 수산관계법령 위반(감액), 교육 미이수(감액) 등
지급단가	▪ 2t 이하 어선(정액):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 2t 초과 어선(비례): 1척당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역진적인 지급단가로 구성

* 자료 : 해양수산부

이 사업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에는 2022년과 동일하게 1,467척의 어선에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중 30.1%인 443척에 대하여 직불금이 지급됨에 따라 119억 3,400만원 중 82억 1,800만원만이 집행되었음.

119)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제도는 자원량에 맞는 적정 어획량을 설정하고 어선별로 그 범위 내에서 어획하도록 하는 제도임.

【 수산자원보호 직불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	산출근거	실집행	실집행률
2021	8,134	·1,000척×800만원×100%+행정비(직불금 1.7%)	5,607 (699척)	68.9
2022	11,934	·1,467척×800만원×100%+행정비(직불금 1.7%)	7,890 (705척)	66.1
2023	11,934	·1,467척×800만원×100%+행정비(직불금 1.7%)	8,218 (443척)	68.8

* 자료 : 해양수산부

□ 동 사업의 직불금 지급대상 어선 선정 및 예산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과 2023년 계획 어선 수는 각각 1,467척이나,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의 수는 각각 1,217척, 1,017척으로 계획 대비 83%, 69% 수준이고,

선정된 어선 중에서 실제 직불금을 지급받은 어선은 각각 705척, 443척으로 그 비율이 각각 58%, 44%임.

【 수산자원보호 직불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	계획 어선 (A)	선정 어선 (B)	실지급 어선(C)	미지급 어선	(B/A)	(C/A)	(C/B)
2021	8,134	1,000척	1,039척	699척	340척	104%	70%	67%
2022	11,934	1,467	1,217척	705척	512척	83%	48%	58%
2023	11,934	1,467	1,017척	443척	574척	69%	30%	44%

* 자료 : 해양수산부 자료 재구성

□ 해양수산부는 예산편성 당시의 계획 어선 수 보다 적은 수의 어선을 지급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당초 어선 1척당 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실제 신청 시에는 1척당 지급금액이 해당 지급단가를 상회하는 경우도 많아 예산으로 지급 가능한 범위에서 지급대상 어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다음으로, 2023년도 직불금 지급 어선수가 선정된 어선 수의 44% 수준인 것은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어선이 의무이행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실제 조업중단 의무 미이행 어선이 2022년 123척에서 2023년 389척으로 증가하였고 해양쓰레기 수거 미이행 어선 및 전체의무 미이행 어선도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미지급 사유 】

(단위: 척)

구분	2021	2022	2023
미지급 어선수	**340**	**512**	**574**
전체의무 미이행	1	-	46
어획량제한 미이행	118	193	77
조업일수 부족	2	36	4
조업중단 미이행	**153**	**123**	**389**
해양쓰레기 수거 미이행	-	13	43
[그밖의의무] 생분해성 어구	1	54	-
[그밖의의무] 종자방류	-	31	-
[그밖의의무] 휴무일 지정	-	15	-
기타	65	48	15

* 사유가 여러개인 경우 가장 미이행 비율이 높은 항목을 대표 미지급 사유로 하여 집계

* 자료: 해양수산부 자료 재구성

해양수산부는 조업중단 의무 미이행 어선이 급증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어선단체에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개별 어업인들이 조업상황, 어황변동, 어업경영상황에 따라 미이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특정 사유를 미이행 원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현재 해양수산부는 TAC 제도 확대 방침[120]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예산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해양수산부는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이 실제 직불금 지급 단계에서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탈락하지 않도록 의무 이행의 주요 장애요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20) 해양수산부는 '28년부터 연근해 어획량 100%에 대해 총허용어획량(TAC)을 적용할 예정임(현재는 50% 수준).

7) 연안국과의 협력(ODA): 신규 ODA사업에 대한 사업공모 참여기관 확대 노력 필요

○ 해양수산부는 ODA사업 추진 시 2023년 30개 사업 중 17개 사업을 공모없이 추진하였고, 12개 사업은 단독공모로 결정되었는바 사업공모 참여기관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은 개발도상국 및 해외도서국과의 개발협력과 지원, 국제사회에서의 의무 이행 등을 통해 연안국과의 우호적 협력을 확대하고 해외어장에서의 안정적 조업활동을 통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예산현액 298억 1,800만원 중 277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 2,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7,000만원을 불용하였음[121].

【 2023년도 해양수산 ODA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연안국과의 협력(ODA)	28,730	28,730	1,088	-	29,818	27,722	1,926	170	43,647

121) 회계(기금)-세부사업: 농특회계-연안국과의 협력(ODA) (3542-302)

(나) 검토의견

□ 해양수산부는 「국제개발협력법」, 「원양산업기본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해운, 항만, 수산, 해양과학, 기술개발, 해양환경, 해양관광 및 해양정보 관련 산업 및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 분야에 관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122]를 수행하고 있음.

해양수산부의 ODA는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수행기관 공고·선정 및 사업수행을 맡고 ODA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사업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개별 ODA 사업과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안국과의 협력(ODA) 세부사업에, ODA전문기관 운영지원 예산은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세부사업[123]에 편성되어 있음.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의 ODA사업은 큰 규모로 확대되었는데, 2019년에 17개국 대상 19건(예산액 104억 7,300만원)이었던 사업규모가 2023년에는 27개국 대상 30개 사업(예산액 287억 3,000만원)으로 확대됨.

122)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 등의 원조
123) 회계(기금)-세부사업: 농특회계-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3542-301)

【 최근 5년간 해양수산 ODA 실시 내역 】

(단위 : 백만원, 개)

연도	사업건수	예산		집행액	수혜국 수*
		예산액	예산현액		
2019	19	10,473	12,156	10,807	17
2020	23	15,820	16,617	14,183	13
2021	25	12,532	14,077	12,618	19
2022	20	14,808	15,946	14,590	16
2023	30	28,730	29,818	27,722	27
2024	39	43,647	45,573	18,742 ('24.5월 말)	25

* 자료: 해양수산부

□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2023년 신규 ODA 사업을 선정하면서 총 30개 사업 중 17개 사업은 공모를 실시하지 않았고 13개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였음.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관해 우선 11개 사업의 경우 국제기구 사업으로 공모의 대상이 아니고, 6개 사업의 경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수원국 정부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사업추진을 요청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사업시행자 한 곳뿐인 경우로서 공모를 실시하기 부적합한 경우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공모를 실시한 13개 사업을 보더라도, 이 중 12개 사업에서 1개 기관의 단독응모로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어, 사실상 공모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2023년 해양수산부 신규 ODA 사업공모 등 내역】

		사업명	사업시행자	공모 실시일자	응찰 건수
일반용역비	1	(조지아) 해양조사 인프라 구축	㈜유에스티21 컨소시움	2023.4.13	1개
	2	(인니) 인도네시아 양식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기술지원	㈜현대아산	2023.5.18.	1개
	3	(베트남) 베트남 북부지역 수산양식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		2023.4.14.	2개
	4	(인니) 인도네시아 국가해양관리를 위한 한국 정지궤도위성 활용시스템 구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일반) '23.3.3. (정보화) '23.2.21.	(일반) 1개 (정보화) 1개
	5	(사모아) 기후변화대응 해양산성화 관측 고도화 및 지속성 확보지원		2023.5.31.	1개
	6	(인니) 그린스마트 해양수산과학 교육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사업		2023.8.8.	1개
	7	(페루) 페루 기후변화 대응 수산양식교육 역량 강화사업		(일반)'23.10.16. (기술)'23.11.06.	(일반)1개 (기술)1개
	8	(마셜제도) 해수온도차 발전 및 배출수 이용을 위한 마샬아일랜드 SDGs 역량강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023.8.3.	1개
	9	(투발루) 투발루 어촌특화개발사업	농어촌공사	(기술)'23.2.15. (일반)'23.7.26.	(기술)1개 (일반)1개
	10	(다국가) 여수 해양법 아카데미 초청연수사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3.4.20.	1개
	11	(다국가)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		2023.3.8.	1개
	12	(다국가) 타당성 조사		수의계약으로 공모미실시	
	13	(다국가) ODA 사업평가			
민간경상보조	14	(베트남·필리핀·인니 등) 국제 승선실습 프로그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비공모형 민간보조사업 (공모 미실시)	
	15	(다국가) 연안도서국 수산 기술 및 정책연수	부경대학교 (사)해외어업협력센터		
	16	(세네갈) 수산해양경제부 역량강화 사업			
	17	(키르기즈공화국) 키르기스스탄공화국 수산양식개발센터 설립 사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8	(가나)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 역량강화 사업			
	19	(스리랑카) 콜롬보항·골항 항로표지 개발사업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사업명			사업시행자	공모 실시일자	응찰 건수
국제부담금	20	(스리랑카 등)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양식 산업 개발 지원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국제기구 사업으로 공모 미실시	
	21	(키리바시·카보베르데) 군소도서국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모델 개발 및 도입			
	22	(모잠비크, 캄보디아)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촌 개발사업			
	23	(필리핀) 개발도상국 해상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용역량	국제해사기구 (IMO)		
	24	(필리핀·베트남) 선박 온실가스 저감 공동대응체계 구축			
	25	(베트남 등) 선박(어선) 폐기물 저감 사업			
	26	(베트남·통가 등) 해사부문 친환경·해양디지털분야 여성역량강화			
	27	(통가·바누아투) IMO 협약이행 역량 강화 및 국제해사 리더 전문교육			
	28	(다국가) 해양생태계 보전 국제협력 강화(IUCN 협력프로그램 운영)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29	(다국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분담금			
	30	(동티모르·필리핀) 동아시아 해역 해양플라스틱 오염 저감 사업	동아시아해역조정기구 (PEMSEA)		

* 자료 : 해양수산부

□ 이와 같이 대부분의 공모사업에서 단독응모로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수원국의 열악한 행정여건 등 ODA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기획, 발굴 등 사업요청서 제출 이전 단계부터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가 수원국과 미리 협의하면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 ODA와 관련된 기술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 및 업체도 매우 한정적이어서 이와 같은 단독응모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특히, 2023년 신규사업 중 사업제안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9개 사업 중 7개 사업에서 사업제안기관이 공모에 단독응모하여 사업시행자로 결정되었음.

- 이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기관(사업제안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원국과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사전타당성조사도 수행한 후, 수원국으로부터 사업요청서가 제출되면 사업공모에 단독 응모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경우로서[124], 이와 같은 점이 ODA사업 공모 시 단독응모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크게 작용하고 있음.

□ 그런데, ODA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공모를 실시하는 것은 여러 업체 또는 기관 간 경쟁을 통해 최적의 사업시행자를 찾으려는 목적임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기관 또는 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해양수산부 및 전문기관은 사업발굴노력을 강화하고 사전타당성 검토 역량 확충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 해양수산부 ODA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24) 실제로 2023년 신규사업 중

3. 교통시설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3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경상이전수입 364억 2,6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695억 8,500만원,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조 3,655억 5,000만원 등 1조 5,888억 4,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전년도세계잉여금 등으로 230억 7,200만원이 증가한 1조 6,119억 1,800만원이 되었음.

□ 징수결정액 1조 6,119억 1,800만원 중 경상이전수입으로 207억 1,1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으로 1,222억 7,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조 3,475억 5,000만원 등 총 1조 5,862억 8,500만원을 수납하였고, 관계기관 예산부족 및 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해 255억 5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3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11,349**	**7,721**	**6,967**	**1**	**753**	**△4,382**
토지대여료	1,282	3,423	2,850	-	573	△1,568
건물대여료	794	106	82	-	24	△712
기타관유물대여료	615	15	15	-	-	△600
정부출자수입	4,280	2,927	2,927	-	-	△1,353
기타민간이자수입	4	70	-	-	70	△4
기타재산이자수입	3,761	1,179	1,093	1	86	△2,668
기타재산이자외수입	613	-	-	-	-	△613
경상이전수입	**36,426**	**29,697**	**20,711**	**16**	**8,970**	**△15,715**
벌금및과료	28	103	-	4	99	△28
과태료	225	370	226	-	144	1
과징금	52	784	760	-	23	708
변상금	771	3,814	990	3	2,820	219
위약금	4,019	3,425	1,476	-	1,950	△2,543
가산금	199	1,191	332	6	853	133
기타경상이전수입	31,132	20,010	16,927	2	3,081	△14,205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69,585**	**138,167**	**122,279**	**111**	**15,777**	**△47,306**
면허료및수수료	16,547	18,127	14,863	-	3,264	△1,684
항공항만수입	146,375	117,864	106,313	111	11,440	△40,062
기타잡수입	6,663	2,176	1,103	-	1,073	△5,560
관유물매각대	**5,936**	**2,431**	**2,426**	**-**	**5**	**△3,510**
건물매각대	-	578	578	-	-	578
기계기구매각대	-	2	2	-	-	2
기타고정자산매각대	667	52	52	-	-	△615
토지매각대	5,237	1,789	1,785	-	5	△3,452
재고자산매각대	32	10	10	-	-	△22
세계잉여금	**-**	**86,352**	**86,352**	**-**	**-**	**86,352**
전년도세계잉여금	-	86,352	86,352	-	-	86,352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365,550**	**1,347,550**	**1,347,550**	**-**	**-**	**△18,000**
일반회계전입금	1,365,550	1,347,550	1,347,550	-	-	△18,000
합 계	**1,588,846**	**1,611,918**	**1,586,285**	**127**	**25,505**	**△2,561**

* 자료 : 해양수산부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은 당초 예산액은 1조 5,888억 4,6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이 719억 6,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조 6,608억 900만원으로 증가함.

□ 예산현액 중 해양수산연구개발 1,036억 3,400만원, 항만개발 및 관리 1조 3,319억 7,900만원,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544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항만개발 및 관리 942억 6,000만원,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2억 3,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항만개발 및 관리 755억 1,800만원,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7억 6,900만원을 불용처리함.

【 2023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이월액	불용액
		전년이월	초과지출	예비비	이·전용				
해양수산연구개발	103,634	-	-	-	-	103,634	103,634	-	-
항만개발 및 관리	1,430,124	71,633	-	-	82,990 △82,990	1,501,757	1,331,979	94,260	75,518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55,088	330	-	-	66 △66	55,418	54,417	232	769
합 계	**1,588,846**	**71,963**	**-**	**-**	**83,056 △83,056**	**1,660,809**	**1,490,030**	**94,492**	**76,288**

* 자료 : 해양수산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새만금신항 : 방파제(연장) 사업의 다른 사업으로의 예산조정 최소화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착공지연에 따라 불용되어야 할 2023년도 예산 239억 1,900만원 중 99.3%인 237억 6,300만원을 전용등을 통하여 다른 사업을 수행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른 사업으로의 예산조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새만금 신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파제(연장)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새만금신항 사업」은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배후 산업 지원 및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 항만을 육성하기 위해 새만금신항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예산현액 1,694억 6,100만원 중 1,526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89억 8,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7억 7,700만원을 불용하였음[125].

【 2023년도 새만금신항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새만금신항	168,179	2,282	△1,000	169,461	152,695	8,988	7,777	162,800
방파제(연장)	23,919	-	△23,763	156	-	-	156	3,360

125) 회계(기금)-세부사업 :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새만금신항(5050-324)

(나) 검토의견

□ 새만금신항 사업 중 내역사업인 「방파제(연장) 사업」은 새만금신항 내 개발예정인 민자부두의 정온도[126] 확보를 위해 기존 방파제(3.1km)에 250m를 추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239억 1,900만원이나 전액 집행하지 못함.

【 방파제(연장) 사업개요 】

(단위 : 백만원)

구분	방파제(연장) 사업						
사업위치	전북 군산시 새만금2호 방조제 전면						
사업주체	해양수산부(군산지방해양수산청)						
사업기간	2021년 ~ 2027년						
사업규모	방파제 연장 250m						
총사업비	828억 2,600만원(국비 100%)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이후	총 계
	국비 (백만원)	3,489	100	23,919	3,360	51,958	82,826
예산집행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2021	3,489(3,489)		2,383(2,383)			
	2022	100(712)		612(612)			
	2023	23,919(156)		-(-)			

* 자료 : 해양수산부

126) 항만의 박지(泊地, 배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해안 지역) 내에 수면의 정온(靜穩, 고요하고 평온함)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항만에서 하역 또는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물결의 높이(파고)를 말함. 적정한 파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초대형선은 파고 0.7m~1.5m, 중·대형 선박은 0.5m, 소형선은 0.3m 이하를 기준으로 방파제 등 항만시설을 설계함 (출처: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

□ 해양수산부는 제2차 신항만 기본계획 수립 시 당초 방파제 연장 길이를 400m로 설정하였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화물부두의 항내 정온도 및 항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등을 위하여 연장 규모를 250m로 조정하게 되었음.

그러나 방파제 연장길이의 축소(400m→250m)에도 불구하고 설계 과정에서 「항만분야 설계기준」 개정('21. 11.)[127]에 따른 방파제 마루높이 증고와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등이 반영되어 예상 소요비용이 135억원(현행 829억원→요구안 963억) 증가하였음.

이에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설계의 적정성 검토 과정를 거치도록 하였고,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사업비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128].

【 방파제(연장) 사업 공사지연 경위 】

- '09. 10. :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시행(KDI)
  * (방파제) 1단계 4.1km + **2단계 1km**
- '10. 10. : 기본계획 재검토
  * (방파제) 1단계(~'20) 3.1km + **2단계(~'30) 400m**
- '19. 8. : 제2차 신항만 기본계획 수립
  *(방파제) 1단계(~'30) 3.1km + **연장 400m**

127) 설계파 재현빈도 상향(50년 → 100년)

128)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설계의 적정성 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4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에 그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그 검토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1. 6. ~ '22. 6.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화물부두의 항내정온도, 항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 등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파제 연장규모 조정(400→250m)**
- '22. 7. : 항만기본계획 변경고시(**방파제 연장 규모 : 400m → 250m**)
- '22. 12. :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제출(해수부→기재부)
- '22. 12. : 설계의 적정성 검토 의뢰(기재부→KDI)
- '23. 1.~ '23. 5. : 설계의 적정성 검토
  * 총사업비 : (현행) 828억원 → (요구) 963억원 / **증 135억원**
- '23. 6. ~ : 설계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총사업비 조정 협의 진행중(기재부)

* 자료 : 해양수산부

□ 이처럼 당초 2023년 착공이 계획된 「방파제(연장) 사업」은 설계의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등의 사전 절차 이행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어 2023년 예산전액이 불용될 상황이었으나,

해양수산부는 동 내역사업의 2023년도 예산 239억 1,900만원 중 99.3%인 237억 6,300만원을 새만금 신항 사업 중 내역사업으로 192억 조정하여 집행하였고, 45억은 타사업인 울산신항 남방파제 보강사업으로 전용하였으며, 1억 5,600만원을 불용함.

【 최근 3년간 방파제(연장) 사업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1	3,489	-	-	3,489	2,383	68.3%	612	494
2022	100	612	-	712	612	86%	-	100
2023	23,919	-	**△23,763**	156	-	**0%**	-	156

* 자료 : 해양수산부

【 방파제(연장) 사업 전용등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금액	⇒		사업명	금액	사유
방파제(연장)	23,763		내역조정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1단계) 축조공사	18,289	매립호안 조기 축조를 위한 소요 공사비 확보
				새만금 신항 북측방파호안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	974	물가변동 반영을 위한 소요 공사비 확보
			전용	**울산신항** 남방파제(1-2공구) 보강공사	4,500	연속시공(고압분사)을 위한 공사비 추가 확보

이와 같이 절차소요로 예산집행이 어려운 경우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필요한 측면이 있겠으나, 2023년도 예산 239억 1,900만원 중 99.3%인 237억 6,300만원을 다른 내역사업으로 조정하거나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그 규모면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회가 의결한 예산 편성 취지에 따라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예산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새만금신항 사업」내 재정부두(2선석) 이외 추가로 건설되는 화물부두(민자부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장래 새만금신항 화물부두의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부두 공사에 선행[129]하여 항만내 정온도 확보시설인 방파제(연장)의 기반시설이 적기에 건설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할 때,

129) 통상적으로, 항만을 건설할 때 외곽시설인 방파제를 먼저 건설하여 외해로부터 불어오는 파랑을 막아 항만 안쪽 공간인 항만 내 부두, 매립 등의 공사를 통해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고 있음

방파제(연장) 공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2023년 6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재정당국과의 총사업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공사 발주 및 착수 이후 집행관리에 힘쓸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2024년 총사업비 조정 협의 및 공사 발주를 완료하고 2027년까지 방파제 연장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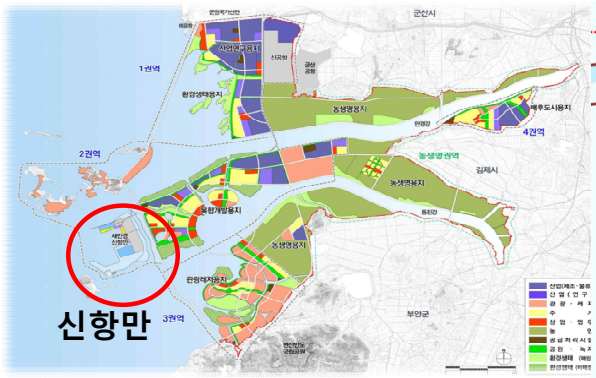
□ 참고로, 「새만금신항 사업」은 항만·물류 기반 인프라의 적기 조성, 대형선박이 접안 가능한 부두시설 및 진입항로 확보, 친도시형 항만 건설 등을 목적으로 새만금신항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조 2,291억원(재정 1조 9,390억원, 민자 1조 2,901억원)이고 2040년까지 잡화부두 6선석, 크루즈부두 1선석 등 총 9선석을 구축할 계획임.

□ 사업목적

○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배후 산업지원 및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 항만 육성

< 새만금신항 위치 >



< 새만금신항 개발계획 >



□ 규모

○ (재정) 호안 16.3km, 방파제 3.1km(추가 0.25km), 준설 1식, 잡화부두 2선석 등

○ (민자) 배후부지조성, '컨' 1선석, 잡화부두 3선석 등

□ (총사업비/사업기간) 1조 9,390억원(재정), 1조 2,901억원(민자) / '10년 ~ '40년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사업(공사)기간
완료 사업			
① 방파제 공사	방파제 3.1km	2,916	'10. 12. ~ '16. 11. ('11. 12. ~ '16. 11.)
②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진입도로 0.7km, 방파호안1.5km 등	1,225	'14. 4. ~ '23. 4. ('17. 12. ~ '23. 4.)
③ 가호안 및 매립호안	가호안 1.9km, 매립호안 1.5km 등	806	'15. 6. ~'21. 2. ('17. 12. ~ '21. 2.)
공사 중 사업			
④ 북측방파호안 및 관리부두	방파호안 1,585m, 관리부두 1식	1,605	'18. 3. ~ '25. 12. ('20. 12. ~ '25. 12.)
⑤ 접안시설(1단계)	5만톤급 2선석(잡화부두) 등	2,555	'20. 3. ~ '26. 1. ('22. 8. ~'26. 1.)
⑥ 항로 및 박지준설(매립)	준설 1,545만㎥	672	'20. 3. ~ '25. 7. ('22. 6. ~ '25. 7.)
발주(예정) 사업			
⑦ 방파제(연장)	방파제 250m 연장	828	'21. ~ '27.(예정)
⑧ 진입도로 등 개설	진입도로 720m, 내부 진입도로 1,636m 등	994	'21. ~ '27.(예정)

2) 마리나 항만: 사업추진 부진에 따른 이월예산의 불용

○ 마리나 항만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액이 이월되고, 이월된 예산액은 불용되는 등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이 부진하므로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의 이행을 철저히 관리·감독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마리나 항만 사업」은 각 권역별로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조성해 해양관광중심지,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처리,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인프라로 활용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23년도 예산현액 184억 9,700만원 중 7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84억 6,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3억 3,100만원을 불용하였음[130].

【 2023년도 마리나 항만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마리나 항만	8,789	8,789	9,708	-	18,497	701	8,465	9,331	3,300

130) 회계(기금)-세부사업: 교통시설특별회계-마리나 항만(5062-301)

(나) 검토의견

□ 본 세부사업은 동해·서해·남해의 각 권역별로 국가가 지원하는 거점 마리나항만을 조성해 인근 마리나항만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는 각 사업지마다 300억 원 미만의 국비를 지원해 방파제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그 밖에 클럽하우스나 상업시설, 해상복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은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가 자금을 조달하여 건설·운영하는 형태로 추진됨.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과 2015년 총 9곳을 거점형 마리나항만 대상지로 선정하였는데, 이 중 6곳은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이 체결됨(당진 왜목은 이후 협약 해지).

□ 거점형 마리나항만으로 선정되어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6곳의 사업지 중 2023년 국비 투입 공사(기반공사)가 완료되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2곳으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협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당진 왜목), 사업계획 검토 장기화(부산 해운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의 장기화(안산 방아머리, 여수 웅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거점형 마리나항만 사업지별 추진 현황[1] 】

대상지	사업내용	진행상황('23년)
울진 후포	○사업시행자 : 경북도(울진군) ('15.4 ~) ○면적/규모 : 170,433㎡ / 계류시설 307척 ○총사업비 : 669억원(국비 259, 도비 64, 군비 346) ○사업기간 : 2015~2020(기반시설)/ 2021~2022(건축)	○1단계 기반시설, 매립 및 부지조성 준공('19.11.) ○2단계 건축물 등 조성 완료('22.8.)
창원 진해명동	○사업시행자 : 경남도(창원시) ('16.11~) ○면적/규모 : 112,139㎡ / 계류시설 300척 ○총사업비 : 840억원(국비 284, 지방비 556) ○사업기간 : 2014~2024	○기반시설, 매립 및 부지 **조성공사 진행 중**(~ '24.12.)
안산 방아머리[2]	○사업시행자 : 경기도(안산시) ('16.2~) ○면적/규모 : 144,700㎡ / 계류시설 312척 ○총사업비 : 1,811억원(국비 284, 지방비 1,527) ○사업기간 : 2016~2027	○실시계획 승인 협의 시 **관계기관 이견으로 지연** ('23.4.~)
여수 웅천[3]	○사업시행자 : 전남도(여수시) ('16.2~) ○면적/규모 : 164,890㎡ / 계류시설 300척 ○총사업비 : 1,165억원(국비 290, 지방비 875) ○사업기간 : 2020~2027	○지방재정 투자심사(2단계) 반려로 **타당성 재조사 시행으로 지연**('23.12~)
부산 해운대 (운촌)	○사업시행자 : 삼미컨소시엄('16.11~) ○면적/규모 : 141,120㎡ / 계류시설 250척 ○총사업비 : 852억원(국비 274, 민간 578) ○사업기간 : 2024~2028	○**사업계획 검토 중**
당진 왜목	○사업시행자 : ㈜CLGG코리아('17.7~) *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22.8.)	○사업시행자의 실시협약상 의무 위반으로 **협약 해지**

* 주 1)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지 기준
2)3) 2023년도 예산편성사업(안산 방아머리, 여수 웅천)은 **음영으로 표시**
* 자료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여수 웅천 사업과 안산 방아머리 사업을 보면 두 사업지 모두 최초 예산편성 회계연도(여수 웅천 2021년도, 안산 방아머리 2022년도)부터 2024년 6월 현재까지 집행 실적이 없고, 2023년에는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른 재이월 불가[131]로 인해 여수 웅천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이월된 83억 1,000만원이 2023년에 전액 불용되었고, 안산 방아머리 또한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이월된 10억원이 전액 불용되는 등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이 부진한 상황임.

【 여수 웅천,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의 연도별 국비예산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지	연도	사업수행주체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	불용	실집행률 (B/A)
여수 웅천	2021	700	-	-250	450	-	-	450	-
	2022	8,310	-	-	8,310	-	8,310	-	-
	2023	**4,140**	**8,310**	**-**	**12,450**	**-**	**4,140**	**8,310**	**-**
안산 방아머리	2022	1,000	-	-	1,000	-	1,000	-	-
	2023	**4,233**	**1,000**	**-**	**5,233**	**-**	**4,233**	**1,000**	-

* 자료 : 해양수산부

□ 이와 같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사업지별로 살펴보면, 여수 웅천 마리나의 경우 2023년 8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2단계) 반려 및 타당성 재조사 의뢰(2023. 10월)로 인해 사업이 지연됨.

---

131)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5.(생략)

- 이는 2018년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1단계) 시 산출된 총사업비가 이후 물가상승, 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 등의 사유로 증가(797억원→1,165억원)하면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것임.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재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4년 연내 공사계약을 의뢰할 예정이라 밝히고 있음.

【 여수 웅천 마리나 사업 추진경과 】

구분	여수 웅천 마리나 사업
추진경과	○ 마리나항만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9.4.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 반려 : '23.8. ○ 타당성 재조사 의뢰(행안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3.10.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2단계 투자심사 의뢰 : '24.7. ○ (향후) 계약 의뢰 : '24.11. ○ (향후) 준공 예정 : '27.12.

□ 다음으로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의 경우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 진행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마리나항만의 입지(시화방조제) 관련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아울러 동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된 입지가 이미 한 차례 변경된 바 있고[132], 2022년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설계자문을 받는 과정[133]에서

132) 최초 안산 대부도 일대를 입지로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위치가 갯벌지역으로 수심을 유지하기 어려워 별도 준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현재의 시화방조제 위치로 입지를 변경하였음.

13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 시 실시계획을 작성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자문을 1회 이상 받고 그 자문결과를 반영해 승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공사구간의 안전성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설계도서를 전면 수정하는 등 2023년 이전에도 설계 및 사전절차에 대한 대응이 일부 미흡하여 사업이 지연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짐.

-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해상교통안전 및 시화방조제의 안전성이 입증되어야만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협의 필요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것임.

해양수산부는 2023년 안산시에서 방조제 지반조사 협의를 진행하는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향후 2024년 11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연내 공사계약을 의뢰할 예정이라 밝히고 있음.

【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 사업 추진경과 】

구분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 사업
추진경과	○ 마리나항만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 ○ 실시계획 승인 협의의견 조치계획 관련 검증협의체 진행 : '23.4. ○ 방조제 지반조사 협의(안산시, 국토부, 해수부) : '23.12.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 '24.2. ○ (향후) 실시계획 승인 : '24.11. ○ (향후) 계약 의뢰 : '24.12. ○ (향후) 준공 예정 : '27년

* 자료 : 해양수산부

□ 동 세부사업의 경우 사업전반에 걸친 반복적인 지연 및 예산이월에 대해 2021회계연도 결산 심의과정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134]를 받은 바가 있고,

당시 해양수산부는 현실적인 행정절차 이행계획 마련 및 사업시행자와의 정례적 협의를 통한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여수 웅천마리나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신규 공사 발주 전 예측 가능한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히 수행하여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음[135].

그러나 이후에도 사전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지연이 반복되었고 이월되었던 예산액 전액이 불용되는 등 사업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의 이행을 철저히 관리·감독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34) “해양수산부는 2026년까지 여수웅천마리나가 완성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추후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사전절차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제도개선)

135)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2023.1.)

3)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의 타당성 보완과 부지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3D 수리모형실험시설 추가)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부지 확보가 어려워져 사업의 추진이 중단되었는데, 해양수산부는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타당성을 보완하고 부지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은 연안침식 원인 규명, 항만구조물 안전성 검증 등 방재연구와 해안·항만 건설기술의 검증 및 상용화 연구 등을 수행하는 대형 수리모형 실험시설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57억 1,500만원 중 57억 5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하고 남은 예산현액 1,000만원 전액을 불용하였음[136].

【 2023년도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5,715	-	△5,705	10	-	-	10	-

136) 회계(기금)-세부사업 :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5063-304)

(나) 검토의견

□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방재연구 및 해안항만 건설기술 실증 등을 수행하기 위한 수리모형 실험시설을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예산액 57억 1,500만원 중 99% 해당하는 57억 500만원을 광양항(3단계) 및 군장항(2단계)로 전용[137]하였고, 남은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사업 추진일정 순연으로 불용하여 2022년에 이어 전액 미집행하였음.

【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						
2020년	1,600	1,600	-	1,600	875	427	298	54.7%
2021년	100	100	-	527	421	-	106	79.9%
2022년	11,812	1,012		1,012	-	-	1,012	0%
2023년	5,715	5,715	△5,705	10	-	-	10	0%

* 자료: 해양수산부

137) 2023년도 예산 전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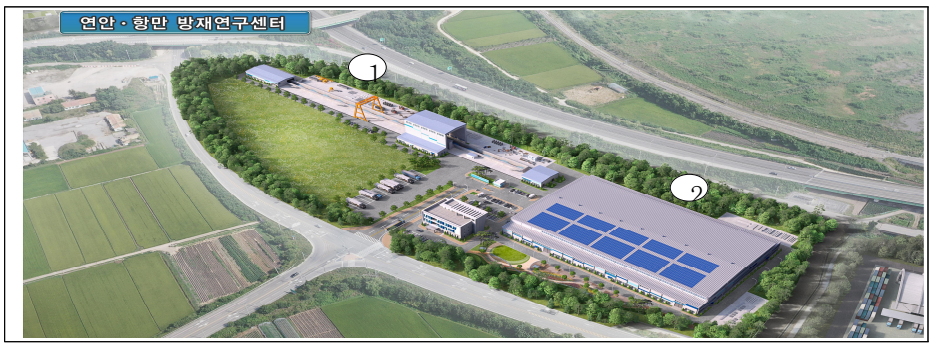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3.11.30.)	계		5,705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5063-304)	420-03 (공사비)	4,421	광양항(3단계) (5050-316)	410-00 (보상비)	「토지보상법」 제76조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감정평가 결과('23.10.)를 반영한 보상비 반영
		420-01 (기본조사 설계비)	1,081	군장항(2단계) (5058-314)	310-02 (배상금)	"군장항 항로준설(2단계)공사" 준공이후, 시공사에서 제기한 공사대금(간접비) 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소송 판결금의 지연이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하여 배상금(4,719백만원) 확보 필요
		420-03 (감리비)	203			

□ 본 사업은 당초 타당성 조사('18. 5. ~ 11.) 결과[138]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 강릉시 옥계지구에 '2차원 수로 실험동'을 포함한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4년간[139] 총사업비는 452억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았음.[140]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20. 3. ~ '21. 8.) 과정에서 강원도의 요청으로 '3차원 수조 실험동'을 추가 건립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가 1,166억원으로 증액되어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0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게 됨[141].

【 연안항만 방재연구 시설현황 】



138) 경제성 분석 결과 B/C = 1.006

139) 2020년~2021년(2년간)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22년~2025년(4년간) : 착공 및 완공

140)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4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141)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재조사의 요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국가재정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전체 조감도(2D, 3D)	
	
	
① 2D 수리모형실험시설	② 3D 수리모형실험시설

타당성재조사 추진 중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 타당성재조사” 1차 점검회의 시('23.1월)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경제성 분석(B/C) 결과가 0.23으로 제시되었는데,

해양수산부는 해당 수치로는 타당성재조사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2023년 2월 타당성재조사를 철회하였고, 이후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음.

그런데, 해양재해 증가추세에 따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 시설의 구축이 시급하나, 동 사업은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실시 후 철회로 인하여 2024년부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미흡하여 부지확보도 어려워짐.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당초 계획대로 2차원 수로 실험동 건립을 우선 추진하되, 향후 3차원 수조 실험동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항만협회 등과 함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타당성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임[142].

【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사업 지연경위 】

- '18. 11. :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타당성조사(강원대, 전남대, 관동대)
  * 2차원 단면수로 포함된 시스템 구축(3차원 평면수조 제외), B/C = 1.006
- '19. 12. :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 예산(2020년도) 편성
  * 총사업비 452억원, 사업기간: 2020년~2023년 (3차원 평면수조 제외)
- '20. 3. ~ '21. 8. :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 총사업비 1,162억원으로 증액, 사업기간: 2021년~2027년 (3차원 평면수조 포함)
- '21. 10. ~ '23. 2. :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 타당성재조사 실시 및 철회
  * 2023년 2월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B/C결과가 0.23에 불과하여 미리 철회 (3차원 평면수조 포함)
- '23. 3. : 강릉 옥계지구 무상 사용허가 신청(해수부 → 강원도)
- '23. 6. : 건물 축조시 기부채납 조건 등으로만 무상임대 가능하다는 회신(강원도 → 해수부)
- 현재 : 2차원 수리실험동 건립 우선 추진 등 사업계획 재검토

* 자료: 해양수산부

□ 동 사업의 경과를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2023년 2월에 타당성 재조사를 철회하였지만, 부지 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대로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 및 2차원 수로 실험동의 건립을 추진하고자 강원도와 해양수산부가 2021년 11월에 체결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서('21. 11.)'[143]를

142)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관련 연구용역'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방재연구센터 운영방안 검토' 사업을 통해 2023년 5월부터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 운영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중임(2023년도 예산 5,000만원 중 4,800만원 집행, 200만원 불용)

143) 강원도는 2020년 6월에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였음.

근거로 2023년 3월 강원도에 연구센터 건립 대상지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를 신청함.

그런데, 2023년 6월 강원도는 영구시설물 축조시 부지 교환 또는 기부채납[144] 조건으로만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음.

해양수산부는 강원도가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의향서('20. 6.)'와 해양수산부와 강원도가 체결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서('21. 11.)'[145]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별도의 조건 없이 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센터 운영 종료 시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설명이나, 강원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건부 사용허가만 가능하다는 입장임.

그 결과 해양수산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2차원 수로 실험동 건립을 추진하거나 타당성을 보완하더라도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건립부지도 확보되지 못한 상황임.

---

14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145)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2020년 6월에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를 유치하기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음.

【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의향서 및 업무협약서 】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의향서

해수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의향서

▪ 해양수산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강원도 유치**를 희망하여 아래와 같이 유치 의향서를 제출함

□ 건립개요

○ 사업예산 : 약 1,296억원 내외

○ 규　　모 : 2차원, 3차원 수리실험시설 및 수치분석센터 등

○ 사업기간 : 2020 ~ 2023년(예상)

□ 유치 필요성

○ 기후변화로 인한 고파랑, 태풍 등 해양재해 증가추세에 따라 연안침식 원인규명 등 방재연구센터 구축 필요

○ 침식방지시설 후 소규모 실험에 의한 해안선 변화 오차·오류로 2차, 3차 피해발생 → 예산낭비

○ **전국 최대 침식발생 지역**인 강원 동해안에 실규모급 수리실험시설 건립으로 과학적·체계적 침식방지대책 강구

- 침·퇴적 모니터링 + 수치해석 + 2차원 수로 + 3차원 수조 병행

※ 강원 동해안 침식현황(2018기준,102개 해변) : **심각 27, 우려 53,** 보통 22

〈강원도 유치 노력〉

◆ 동해안 침식방재연구센터 건립 추진계획 수립 및 건의 : '16. 2월
◆ 연안방재연구센터 건립 필요성 및 입지여건 분석용역 : '17. 9월
◆ 예산반영을 위한 도 차원 노력(국회, 기재부 방문 설득) : 수시
- 강원도 국회의원 지원 · 협조 등
◆ 침식방재연구센터 해외사례(미국, 캐나다) 견학 : '19. 12월

□ 강원도 지원 사항

○ 센터건립 **부지 무상 제공**(부지관련 제반처리 비용 부담 등)

◆ 소 재 지 : [redacted]유구역 부지)
◆ 제공방법 : [redacted]
◆ 부지면적 : 67,794㎡(173억원 상당)
◆ 임대기간 : 연구센터 운영 종료시까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 지원사항
- 건립예정 부지에 대한 연약지반 처리 및 유지관리
- 연구용 용수료 및 하수처리 비용 등 관련법령 내 감면 지원
- 연구센터(연구시설) 사용 전기료 감면 방안 적극 검토
- 건립계획(시설, 규모 등) 및 유치 확정시 행·재정적 적극 지원

상기와 같이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강원도 유치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6월　일

강원도환동해본부장　　고 영 선 (인)

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 동 학 (인)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서

-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에 관한 -

업 무 협 약 서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해양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구축 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본 협약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구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 대상부지의 무상 제공 및 사용과 관련된 협약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협력내용) 협약기관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호의 협약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 해양수산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①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부지 내에 구축 및 운영
② 동해안의 연안침식 문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연구를 적극 수행
③ 사업기간 동안 환경오염 예방, 지역주민들과의 상생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

2. 강원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①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구축에 필요한 부지를 무상 제공
② 구축에 필요한 건축 인·허가 등 따른 행정적 업무 지원
③ 그 외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경비 감면 등 적극 협력

* 소재지 :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일원(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부지)

제3조(협약의 효력, 변경 등) 이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협약의 변경 및 해지는 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안유지) 협약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협약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협약서의 개정 또는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우호적으로 처리한다.

제6조(협약의 준수)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1월 26일

해양수산부 장관 문 성 혁 (인)

강원도 도지사 최 문 순 (인)

* 자료: 해양수산부

□ 그런데 건립부지 관련 관계 법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재연구센터를 건립하려는 옥계지구 부지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국가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소유부지에 조성되는 방재연구센터(수리실험시설, 운영동 등) 시설 일체의 소유권을 강원도가 취득하는 방식인 기부채납 등의 조건이 수반됨.[146]

또한, 강원도가 제출한 유치 의향서를 보면, 부지 무상임대의 근거 법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대한 내용이며,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대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147]

이처럼 국가가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에 건물을 건립하고 부지 무상사용허가[148]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채납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법령에

---

14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14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4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명시된 내용으로서 해양수산부는 이를 부지 선정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했어야 할 사안이었으나, 관련 법령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였음.

따라서 향후 해양수산부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재검토를 통해 타당성을 보완하고 부지확보 방안을 마련[149]할 필요가 있어 보임.

149) 참고로 현재 해양수산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등 유사 입법례에 따라 조건부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반영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 8월경에 발의될 예정이고, 동 법안이 통과시 강원도 소유부지 사용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임.

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3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재산수입 3,100만원, 경상이전수입 38억 1,7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기타 경상이전수입액 감소 등으로 8억 4,300만원이 감소한 30억 500만원이 되었음.

□ 징수결정액 30억 500만원 중 재산수입으로 4억 8,600만원, 경상이전수입으로 8억 6,300만원을 수납하였고, 관계기관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16억 5,6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3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31**	**560**	**486**	**-**	**74**	**455**
기타재산이자수입	25	560	486	-	74	461
기타재산이자외수입	6	-	-	-	-	△6
경상이전수입	**3,817**	**2,445**	**863**	**-**	**1,581**	**△2,954**
가산금	-	1	-	-	1	-
기타경상이전수입	3,817	2,444	863	-	1,581	△2,954
합 계	**3,848**	**3,005**	**1,349**	**-**	**1,656**	**△2,499**

* 자료 : 해양수산부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당초 예산액은 663억 2,800만원으로 증감없이 예산현액 663억 2,800만원과 동일함.

□ 예산현액 중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222억 900만원, 해운산업 선진화 252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은 없으며,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2,000만원, 해운산업 선진화 188억 5,300만원을 불용처리함.

【 2023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이월액	불용액
		전년이월	초과지출	예비비	이·전용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22,229	-	-	-	-	22,229	22,209	-	20
해운산업 선진화	44,099	-	-	-	-	44,099	25,246	-	18,853
합 계	**66,328**	**-**	**-**	**-**	**-**	**66,328**	**47,455**	**-**	**18,873**

* 자료 : 해양수산부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3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재산수입 5억 600만원, 경상이전수입 122억 6,9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기타경상이전수입액 감소로 95억 700만원이 감소한 32억 6,800만원이 되었음.

□ 징수결정액 32억 6,800만원 중 경상이전수입으로 17억 4,200만원, 재산수입으로 9,700만원 등 총 18억 3,900만원을 수납하였고, 관계기관 예산부족으로 인해 14억 2,9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3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506**	**149**	**97**	**-**	**52**	**△409**
기타재산이자수입	506	149	97	-	52	△409
경상이전수입	**12,269**	**3,119**	**1,742**	**-**	**1,377**	**△10,527**
기타경상이전수입	12,269	3,119	1,742	-	1,377	△10,527
합 계	**12,775**	**3,268**	**1,839**	**-**	**1,429**	**△10,936**

* 자료 : 해양수산부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당초 예산액은 4,681억 1,500만원으로 증감없이 예산현액 4,681억 1,500만원과 동일함.

□ 예산현액 중 해양환경보전 567억 7,200만원, 수산식품 고부가가치화 28억 5,000만원,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22억 8,000만원,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228억 7,100만원, 어촌어항활성화 3,164억 5,500만원, 항만 개발 및 관리 357억 9,200만원 등을 지출하였고, 수산물 유통 및 안전 관리 12억원, 어촌어항활성화 209억 4,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어촌어항활성화 38억 3,300만원을 불용처리함.

【 2023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이월액	불용액
		전년이월	초과지출	예비비	이·전용				
해양환경보전	56,772	-	-	-	-	56,772	56,772	-	-
수산식품 고부가가치화	2,850	-	-	-	-	2,850	2,850	-	-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3,480	-	-	-	-	3,480	2,280	1,200	-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22,871	-	-	-	-	22,871	22,871	-	-
어촌어항활성화	341,233	-	-	-	-	341,233	316,455	20,945	3,833
해양수산 연구개발	2,135	-	-	-	-	2,135	2,135	-	-
항만개발 및 관리	35,792	-	-	-	-	35,792	35,792	-	-
해양수산행정 지원	2,982	-	-	-	-	2,982	2,982	-	-
합 계	468,115	-	-	-	-	468,115	442,137	22,145	3,833

* 자료 : 해양수산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지 선정 평가체계 개선 및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점검 철저를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

○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 이전에 추진된 어촌뉴딜 300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기간 지연과 사업선정 이후 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 선정 단계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거점 육성, 낙후된 생활인프라 개선 등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443억 9,000만원 중 425억원을 집행하고, 10억 2,300만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8억 6,700만원을 불용하였음.[150]

【 2023회계연도 어촌신활력증진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어촌신활력증진	44,390	-	-	44,390	42,500	1,023	867	96,180

* 자료 : 해양수산부

150) 회계(기금)-세부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어촌신활력증진(3301-303)

(나) 검토의견

□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어촌뉴딜 300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기획된 것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300개의 어촌을 대상으로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어촌경제·생활환경 개선 및 신규인력 정착 지원 등 어촌생활권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음.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서 예산액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23년도의 집행내역을 보면 편성된 예산현액 425억원 중 406억 1,8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 가운데 178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227억 5,500만원을 이월하여 실집행률은 42%로 나타나고 있음.

【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해양수산부				지자체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교부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42,500	40,618	-	-	40,618	40,618	17,864	22,755	-	42.0

* 자료 : 해양수산부

이와 같이 실집행이 부진한 사유에 관해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 중 매칭 지방비를 편성하지 못한 곳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함에 따라 편성된 예산 중 10억 2,300만원을 이월하는 등 18억

8,2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이후인 사업개시연도 1월에 사업 대상지를 발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확보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추가 시일이 소요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이전에 추진된 어촌뉴딜 300사업과 동일하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에서 “지특회계”라 함) 내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특회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서 ① 지자체의 공모계획서 작성·제출→ ② 해수부의 사업지 평가·선정→ ③ 지자체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④ 지자체의 사업 시행순으로 추진되는 등 구조적인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

그런데 어촌뉴딜 300사업의 경우 사업 첫해의 집행률이 49.2%로 부진하였고, 그 이후로 연쇄적으로 사업이 순연되면서 매년 이월 및 재이월이 발생[151]하였음. 사업기간 역시 늘어나 당초 사업기간인 3년 이내에 사업이 준공된 사업지의 비율이 2019년 사업지의 경우 34.3%, 2020년 사업지는 1.7%, 2021년 사업지는 0%로 나타나는 등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된 측면이 있음.

151) [혁신어촌조성 사업 연도별 재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보조금 교부연도	재이월 연도	예산액	실집행액	재이월액
2019	2021	51,694	33,015	18,638
2020	2022	79,129	52,290	25,999
2021	2023	91,888	53,935	31,146
2022	2024	97,692	47,637	48,563

*자료: 해양수산부

【 어촌뉴딜 300사업의 연도별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해양수산부				지자체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2019	171,500	171,500	-	-	171,500	-	171,500	84,388	87,112	-	49.2
2020	430,500	430,500	-	-	430,500	87,112	517,612	384,135	133,436	41	74.2
2021	518,000	510,331	-	7,669,	510,331	133,436	643,767	492,130	149,203	2,443	76.4
2022	514,425	474,492	26,061	13,872	474,492	149,203	623,695	480,341	135,283	8,071	77.0
2023	278,216	278,216	19,833	2,963	255,420	135,283	390,702	299,467	87,946	3,289	76.6

* 자료 : 해양수산부

【 어촌뉴딜 300사업의 준공 현황 】

(단위: 개소, %)

사업준공 / 사업시작		사업 준공 상황					
사업 시작년도	총 사업수	2021년 (준공)	2022년 (준공)	2023년 (준공)	2024년 4월 말 기준 (준공)	2024년 4월 말 기준 (진행중)	2025년 (진행예정)
2019년 사업	70	24	30	16	-		-
2020년 사업	120	-	2	43	12	63	
2021년 사업	60	-	-	-	1	12	47
2022년 사업	50	-	-	-		0	50
3년 이내에 사업이 준공된 경우		24/70 = 34.3%	2/120 =1.7%	-	-		-
계획 대비 준공하여야 하는 사업 수		70	120	60	50		-

* 자료 : 해양수산부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후속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서 이와 같은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36조(검사) 등에 근거하여 사업주관부처로서 집행점검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실집행부진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어촌뉴딜 300사업의 주요 집행부진 사유】

유형	집행부진 사유 주요 내용
사전 절차 이행	▪ 지방재정투자심사(1개월 내외), 매칭지방비 편성, 입찰 공고(최대 40일) 등에 시간 소요
인·허가 지연	▪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해양공간적합성 협의, 공유수면 점·사용, 건축 인·허가 등과 갯벌보호구역·국립공원구역 등에서의 사업 시행 시 절대 협의 기간 소요
공사 중 민원	▪ 설계 변경 요구, 사업 위치 반대, 토지 편입·보상비 갈등 등 - 주민↔시공사, 주민↔주민, 주민↔행정기관 간 의견 대립 - 민원 해소를 위한 계획 변경 시 추가 인·허가 기간 소요
절대공기 부족	▪ 해상기상여건, 폭우·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폭염·혹한 등에 따른 공사 중지,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자재수급 차질 등
이월의 악순환	▪ 이월예산 우선 집행에 따른 집행 부진 지속

□ 또한,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한 2024년 감사원 감사 결과[152] 해양수산부에서 지자체가 제출한 공모계획서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하여 사업지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모계획서와 다른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점이 확인되었는데,

152) 감사원은 해수부가 2018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지 선정평가,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원 감사보고서,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실태, 2024.2 참조

【 공모계획 대비 기본계획 변경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

연도	사업지	공모계획서		공모계획서→기본계획서					기본계획서	
				제외사업			신규사업			
		사업수	사업비 (A)	사업수	사업비 (B)	비율 [(B/A)*100]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2019	70	680	755,326	239	197,940	26.2	239	141,340	703	704,430
2020	120	1,230	1,178,994	382	236,395	20.0	443	193,258	1,324	1,126,837
2021	60	589	513,991	148	64,566	12.6	183	70,046	634	538,285
2022	50	560	439,858	149	62,344	14.2	103	40,683	502	440,299
계	300	3,059	2,888,169	918	561,245	19.4	968	445,327	3,163	2,809,851

* 자료: 감사원 감사보고서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승인 절차를 엄격히 하여 공모계획 대비 기본계획의 변경 규모가 50% 이상이면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다만, 후속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변경 여지를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업지 선정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 시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기본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심의를 보다 엄격히 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해양수산부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경우 어촌뉴딜 300사업 시 적용했던 절차에 추가적으로 평가단 조별 종합평가를 도입해 평가자 간 종합토의 후 조별 최종평가를 실시하게 하는 등 평가절차를 강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어촌뉴딜 300사업에서와 같이 사업지 선정 후 계획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경우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사업 효과성도 저해될 수 있으므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서는 사업지 선정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평가를 엄격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6. 수산발전기금

가. 개 요

1) 수입결산

□ 2023년 수산발전기금은 사업운용수익(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등) 5,876억 3,500만원, 정부내부수입 1,526억 2,400만원, 여유자금회수 951억 5,800만원 등 총 8,354억 1,70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사업운용수익(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등) 164억 3,400만원, 정부내부수입 8억 6,200만원 및 여유자금 회수 71억 6,300만원 증가 등으로 244억 5,900만원 증가한 8,598억 7,600만원이었음.

□ 징수결정액 중 사업운용수익(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등)으로 6,040억 6,900만원, 정부내부수입 1,534억 8,600만원, 여유자금 회수 1,023억 2,100만원을 수납하였고, 경상이전수입(법정부담금 등)에서 납부기한 미도래 등으로 미수납액 208억 7,700만원이 발생하였음.

【 2023년도 수산발전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수입계획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가 (C-A)
재산수입	**8,244**	**12,300**	**12,292**	**-**	**7**	**4,048**
기타민간이자수입	5,454	6,728	6,728	-	-	1,274
기타재산이자수입	2,790	5,572	5,565	-	7	2,775
경상이전수입	**59,748**	**93,416**	**75,104**	**-**	**18,312**	**15,356**
징계 부과금 등	-	338	-	-	338	-
가산금	11	151	43	-	108	32
위약금	356	220	220	-	-	△136
법정부담금	57,838	84,028	66,589	-	17,439	8,751
기타경상이전수입	1,543	8,678	8,251	-	427	6,708
재화및용역판매수입	**6,212**	**14,261**	**11,703**	**-**	**2,558**	**5,491**
면허료및수수료 등	6,212	14,261	11,703	-	2,558	5,491
관유물매각대	**60,982**	**82,267**	**82,267**	**-**	**-**	21,285
재고자산매각대	60,982	82,267	82,267	-	-	21,285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52,449**	**422,703**	**422,703**	**-**	**-**	**△29,746**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452,449	422,703	422,703	-	-	△29,746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95,158**	**102,321**	**102,321**	**-**	**-**	7,163
한국은행예치금회수	-	546	546	-	-	546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5,158	101,775	101,775	-	-	6,617
정부내부수입	**152,624**	**153,486**	**153,486**	**-**	**-**	**862**
기금예탁 원금	150,000	150,000	150,000	-	-	-
기금예탁금이자	2,624	3,486	3,486	-	-	862
합 계	**835,417**	**859,876**	**859,876**	**-**	**20,877**	**24,459**

* 자료 : 해양수산부

2) 지출결산

□ 2023년도 수산발전기금 지출결산을 보면 당초 지출계획은 8,354억 1,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 금액 20억 9,000만원이 반영되어, 계획 현액이 8,375억 7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회계연도 중 불용전망 사업비를 활용하여 수산행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었음.

□ 지출계획 현액 8,375억 700만원 중 해양환경보전 등 사업의 일반지출로 5,835억 4,200만원, 여유자금운용으로 2,763억 3,400만원 등 총 8,598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해양환경보전 38억 4,800만원, 어업인소득안정지원 1,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해양환경보전 5억 4,700만원, 수산식품고부가가치 8억 9,100만원, 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 801억 3,000만원, 수산자원관리및조성 2,400만원, 어업인소득안정지원 30억 100만원, 수산행정 1,300만원, 기금거래 500억원 등 총 1,346억 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2023년도 수산발전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지출 계획	계획 변경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 이월액	불용액
		전년 이월	초과 지출	예비비 사용	이·전용				
해양환경보전	51,894	2,041	-	-	-	53,935	49,540	3,848	547
수산식품고부가가치화	132,401	-	-	-	-	132,401	131,510	-	891
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	412,361	30	-	-	-	412,391	332,260	-	80,130
수산자원관리및조성	17,619	-	-	-	-	17,619	17,595	-	24
어업인소득안정지원	45,266	19	-	-	-	45,245	42,226	18	3,001
원양협력	9,000	-	-	-	-	9,000	9,000	-	-
수산행정	1,424	-	-	-	19 △19	1,424	1,411	-	13
기금간거래(공자기금예탁)	50,000	-	-	-	-	50,000	-	-	50,000
여유자금운용	115,492	-	-	-	-	115,492	276,334	-	-
합계	**835,417**	**2,090**	**-**	**-**	**19 △19**	**837,507**	**859,876**	**3,866**	**134,607**

* 자료 : 해양수산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정화명령 제도 활성화 및 드론활용 해양쓰레기 관리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하여 해양쓰레기 발생원인행위자에 대한 해양쓰레기 수거·정화명령 제도 활용에 필요한 정책 연구, 대상자 선별법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 및 해양환경공단은 내구연한 경과 드론에 대한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드론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항만 등 주요 해역의 침적쓰레기 수거·처리,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처리 지원,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정화운반선 건조 및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363억원 중 358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9,600만원을 불용하였음[153].

【 2023년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36,300	36,300	-	-	36,300	35,804	-	496	48,229

153) 회계(기금)-세부사업: 수산발전기금-해양폐기물 정화사업(1065-301)

(나) 검토의견

(1) 해양쓰레기 수거·정화명령 제도 활용방안에 관한 조사 필요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이라 함)은 해역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거 또는 정화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해역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집행한 후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해양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행위자 책임부담의 원칙에 따라 처리 또는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명령 관련 근거조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8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및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해당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제1호에 따른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경우
3. 해당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한 피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다는 것이 확실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역관리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사실을 보고받은 해역관리청은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해당 해역의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정화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부유폐기물의 수거) ② 해역관리청은 부유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부유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침적폐기물의 수거) ② 해역관리청은 침적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침적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② 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양오염퇴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화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을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화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해역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려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①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경우 해당 사실을 해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휴업·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하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대집행)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정화 명령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거명령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명령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거명령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화명령
6. 제22조에 따른 처리명령

그런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수거·정화명령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수거·정화명령 및 이에 따른 대집행을 한 사례가 없음.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처리는 원인자부담 원칙을 기조로 하고 있으나, 해안 쓰레기의 특성상 원인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거·정화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정화를 위해 집행하는 예산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서만 168억 7,000만원(2023년 기준)[154] 에 이르는 등 매년 국가예산을 들여 해양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에서 구체적인 원인행위자를 찾기 어렵다는 사유로 원인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최근 5년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량을 보면, 연도별 차이는 있지만 대략 13만 톤 정도이고, 침적쓰레기(약 19%)·부유쓰레기(약 8%)·해안가쓰레기(약 73%)로 이루어져 있음.

154)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내역사업인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편성·집행된 예산만 집계한 것으로,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 등 사업은 모두 제외한 금액임.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배출원인행위자 규명 및 책임부과를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거나 상대적으로 발생원인이 명확한 곳을 선별하는 등 해양오염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거·정화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 최근 5년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량[155]

- 유형별 해양쓰레기 수거량

(단위 : 톤)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침적쓰레기	25,799	18,212	18,944	22,287	25,282
부유쓰레기	7,713	8,558	6,067	6,691	10,630
해안가쓰레기	75,132	111,592	95,725	97,077	96,018
전체 수거량(톤)	**108,644**	**138,362**	**120,736**	**126,035**	**131,930**

- 주체별(지자체, 국가) 해양쓰레기 수거량

(단위 : 톤)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부산	4,056	3,415	7,156	5,185	4,061
	인천	161	1,495	5,200	5,190	5,513
	울산	763	2,142	2,289	3,094	2,589
	경기	1,374	1,226	1,538	2,020	2,061
	충남	12,135	14,648	12,625	12,823	15,017
	경북	6,273	10,090	6,861	12,895	5,068
	경남	16,984	13,551	7,321	8,645	13,102
	전북	3,388	4,223	4,539	5,775	6,102
	전남	31,704	41,325	33,535	34,671	42,475
	강원	8,138	14,848	4,372	4,146	7,072
	제주	11,760	16,622	21,489	17,017	10,698
	소계	96,736	123,585	106,925	111,461	113,758
	해양환경공단	8,382	8,640	8,195	8,635	12,634
	한국어촌어항공단	3,526	6,137	4,806	5,299	4,925
	한국수산회			809	640	614
	소계	11,908	14,777	13,810	14,574	18,173
총합계		108,644	138,362	120,735	126,035	131,930

155)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음.

(2) 드론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필요

□ 내역사업인 「드론활용 해양쓰레기 관리사업」은 선박으로 접근이 어려운 항만구역에 대한 부유쓰레기 확인에 드론을 활용하여 청항선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항만구역 내 청항선 운용을 전담하는 해양환경공단이 2019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해양환경공단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청항·방제 드론으로 총 40대의 드론을 구매(7대 멸실)하였으며, 이 중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예산으로 구매한 드론은 12대임.

【 해양환경공단의 드론구매·보유 현황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청항드론 (백만원, 대)	예산액	3	6	14	14	14	14	14	14	93
	실집행	2.7	5.8	13.6	13.5	13.5	-	-	12	61.1
	구매	1	2	3	3	3	-	-	3	15
	멸실	-	2	1	-	-	-	-	-	3
	현존	1	0	2	3	3	-	-	3	**12**
방제드론 (대)	구매	-	2	6	6	3	8	-	-	25
	멸실	-	-	-	-	-	1	3	-	4
	현존	-	2	6	6	3	7	-3	-	**21**

* 자료 : 해양환경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 해양환경공단은 2022년과 2023년 드론 구매를 위해 교부된 동 사업 예산액을 전액 미집행하고 다른 사업[156]에 활용하거나(2022년) 불용(2023년)하였는데, 그 원인에 대해 2022년은 중국산 드론에 대한 정보 유출 우려에 따른 도입 중단 요구로 인해, 2023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사회(중국)의 드론 수출통제로 인해 도입이 불가능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해양환경공단의 드론활용 해양쓰레기 관리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해양환경공단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	불용	실집행률 (B/A)
2021	14	1	15	14	-	0.6	93.3
2022	14	-	14	14*	-	0.3	100
2023	14	-	14	-	14	-	0

* 주 : 2022년 드론관련 예산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타 사업으로 집행
* 자료 : 해양환경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런데 해양환경공단은 2022년 중국산 드론에 대한 보안 문제로 드론를 구매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구매처 다변화 등 사업수행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짐.

또한, 2년간 신규 드론을 구매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청항드론 12대 중 8대가 내구연한(2 ~ 3년)이 경과한 것으로

156) 1,400만원 중 100만원은 드론 소모품(배터리) 구매에, 1,300만원은 동일 세부사업(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내 '해양쓰레기 줄이기 인식증진'에 사용함

나타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한 드론이 많아지면 사업효과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해양환경공단은 드론 구매처 다변화를 통해 여러 변수에 대응하는 한편, 내구연한이 경과한 드론을 적시에 교체하여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24년 기준 내구연한 경과 드론 현황 】

(단위: 백만원)

지사	현존 드론 수	내구연한 경과 드론 수				
		계	도입시기			
			2017	2018	2019	2020
부산	2	1	-	-	-	1
인천	2	1	-	-	-	1
여수	1	1	-	-	1	-
울산	1	0	-	-	-	-
대산	1	1	-	-	-	1
마산	1	1	-	-	-	1
목포	2	1	-	1	-	-
제주	2	2	1	-	1	-
계	12	8	1	1	2	4

* 자료 : 해양환경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 한편, 해양환경공단의 드론 활용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드론 운영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동 사업을 통해 구매한 드론은 청항선의 효율 제고를 위해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확보한 것이므로,

드론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용실적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해양환경공단 청항드론 활용 실적】

〔단위: 대, 회, 시간(h)·분(m)〕

연도	구 분	부산	인천	여수	울산	대산	마산	목포	제주	계
2021	드론 수	1	2	1	1	1	1	2	2	11
	운용횟수	31	33	161	61	104	51	18	80	539
	운용시간	32h30m	22h30m	86h00m	58h00m	54h45m	28h30m	10h55m	40h50m	334h
2022	드론 수	1	2	1	1	1	1	2	2	11
	운용횟수	19	53	163	31	88	35	68	38	495
	운용시간	13h30m	35h00m	87h00m	32h00m	48h00m	18h00m	37h55m	19h00m	290h25m
2023	드론 수	1	2	1	1	1	1	2	2	11
	운용횟수	5	39	167	30	93	38	36	54	462
	운용시간	1h50m	26h30m	113h30m	24h30m	49h30m	20h30m	18h06m	25h30m	279h56m
2024 (~6월)	드론 수	2	2	1	1	1	1	2	2	12
	운용횟수	-	13	57	13	12	5	22	23	145
	운용시간	-	8h30m	36h00m	6h30m	6h00m	2h30m	9h35m	10h00m	79h5m

* 자료 : 해양환경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해양경찰청 소관

Ⅰ.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2023년도 결산 개요

가. 총 괄

□ 2023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액은 53억 8,800만원이고, 79억 5,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54억 2,300만원(68.2%)이 수납되고 3,6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으며, 24억 9,700만원(31.4%)은 미수납되었음.

【 2023년도 세입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수납증감 (B-A)
5,388	7,956	5,423	36	2,497	35

* 자료 : 해양경찰청

□ 세출예산 규모는 1조 8,108억 8,1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89억 2,900만원을 증액한 예산현액은 1조 8,298억 1,000만원이고, 이 중 1조 8,054억 7,200만원(98.7%)이 집행되고, 195억 5,900만원(1.1%)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7억 7,900만원(0.3%)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세출 예산액	예산(지출)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 이월	예비비	이체	전용	이용	추경				
1,810,881	18,929	-	-	17,334 △17,334	15,815 △15,815	-	1,829,810	1,805,472	19,559	4,779

* 자료 : 해양경찰청

나. 세입·세출

1) 세 입

□ 2023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3억 8,800만원이고, 79억 5,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54억 2,300만원(68.2%)이 수납되었고 3,6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으며, 24억 9,700만원(31.4%)은 미수납되었음.

미수납액 24억 9,700만원은 변상금 21억 9,800만원, 과태료 1억 1,500만원 등임.

【 2023년도 회계별 세입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일반회계	5,388	7,956	5,423	36	2,497	35

* 자료 : 해양경찰청

□ 변상금 미수납액 21억 9,800만원 중 세월호 해양오염변상금 14억 7,900만원은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외 소액 체납 변상금 7억 1,900만원은 납기 미도래 및 체납자 재력 부족에 따른 것임.

□ 불납결손액은 3,600만원은 채납자 사망 등 채권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비용에 대한 불납결손 결정에 따른 것임.

2) 세 출

□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조 8,108억 8,1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89억 2,900만원을 증액한 예산현액은 1조 8,298억 1,000만원임.

이 중 1조 8,054억 7,200만원(98.7%)이 집행되었고, 195억 5,900만원(1.1%)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7억 7,900만원(0.3%)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회계별 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지출)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이월	예비비	이체	전용	이용	추경				
일반회계	1,810,881	18,929	-	-	17,334 △17,334	15,815 △15,815	-	1,829,810	1,805,472	19,559	4,779

* 자료 : 해양경찰청

다. 재무회계

1) 재정상태

□ 2023회계연도 말 기준 해양경찰청 자산은 전년 대비 3,530억 8,400만원이 증가한 4조 1,132억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이 2,572억 9,000만원이 증가하고 신규 자산의 취득 등으로 사회기반시설이 520억 2,500만원 증가, 선급금이 증가하는 등 유동자산이 416억 4,900만원 증가한데 기인함.

□ 부채는 전년 대비 80억 2,000만원 증가한 210억 3,9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 61억 1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3,450억 6,300만원이 증가한 4조 921억 6,000만원임.

□ 2023회계연도 해양경찰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4,684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6억 9,1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조 7,539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1억 6,800만원 감소하였음.

【 2023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재정상태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C=A-B)	비율(C/B)
자산합계(a)	4,113,200	3,760,116	353,084	9.4%
Ⅰ. 유동자산	63,266	21,617	41,649	192.7%
Ⅱ. 투자자산	530	-	530	-
Ⅲ. 일반유형자산	3,959,566	3,702,276	257,290	6.9%
Ⅳ. 사회기반시설	63,275	11,250	52,025	462.4%
Ⅴ. 무형자산	20,422	19,062	1,360	7.1%
Ⅵ. 기타비유동자산	6,139	5,910	229	3.9%
부채합계(b)	2,103	13,019	8,020	61.6%
Ⅰ. 유동부채	6,999	4,988	2,011	40.3%
Ⅱ. 장기차입부채	14,040	7,939	6,101	76.8%
Ⅲ. 장기충당부채	-	92	△92	△100.0%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a-b)	4,092,160	3,747,097	345,063	9.2%

* 자료 : 해양경찰청

2) 재정운영[1)]

□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조 7,539억 9,400만원 발생함.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4,684억 2,500만원, 관리운영비 1조 3,526억 1,100만원, 비배분비용 26억 7,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697억 1,700만원으로 구성됨.

□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861억 6,800만원(4.7%) 감소한 1조 7,539억 9,400만원이며, 이는 연구개발비 등 경비 감소 등에 따라 관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414억원 3,4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함.

1) □ 재정운용표 용어정리

구 분	내 용
Ⅰ 프로그램순원가	・주요사업비 지출비용 ※ 자산 구입비용 제외
Ⅱ 관리운영비	・인건비, 기본경비 지출비용
Ⅲ 비배분비용	・건물, 함정, 항공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Ⅳ 비배분수익	・비품 등 자산처분수익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프로그램 순원가 + Ⅱ관리운영비 + Ⅲ비배분비용 - Ⅳ 비배분수익
Ⅵ 비교환수익	・기부금, 무상이전 ※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Ⅶ 재정운영결과	・Ⅴ. 재정운영순원가 - Ⅵ. 비교환수익

□ 총 5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해양경비체계강화 프로그램(3,383억 4,700만원)과 구조안전활동 프로그램(779억 5,000만원), 정비창운영 프로그램(442억 5,900만원) 등 임.

□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9,364억 7,300만원과 경비 4,161억 3,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외주용역비 10억 7,400만원과 수선유지비 2억 6,700만원 등으로 구성됨.

【 2023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재정운영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회계연도
Ⅰ. 프로그램순원가	468,425
Ⅱ. 관리운영비	1,352,611
Ⅲ. 비배분비용	2,675
Ⅳ. 비배분수익	69,717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1,753,994
Ⅵ. 비교환수익 등	-
Ⅶ.재정운영결과(Ⅴ-Ⅵ)	1,753,994

* 자료 : 해양경찰청

3) 순자산변동[2)]

□ 해양경찰청의 2023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3조 7,470억 9,7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4조 921억 6,000만원으로 기초 대비 3,450억 6,300만원(9.2%)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으로,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861억원 6,800만원 감소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이 3,305억 1,3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1,420억 3100만원 증가하였음.

□ 한편, 2023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기타재원조달, 무상이전수입 등 재원의 조달 2조 677억 8,6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72억 5,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385억 3,900만원, 기타 순자산의 감소 1,000만원 등으로 구성됨.

2) □ 순자산변동표 용어정리

구 분	내 용
Ⅰ 기초순자산	- 재정상태표 상 전년도 말 기준 순자산
Ⅱ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표 상 재정운영결과와 같은 금액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 결산 회계연도에 편성된 세출예산
Ⅳ 조정항목	- 토지, 건물 등 자산재평가
Ⅴ 기말순자산	- Ⅰ. 기초순자산 - Ⅱ. 재정운영결과 +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 Ⅳ. 조정항목

【 2023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순자산변동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회계연도(A)	2022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기초순자산	3,747,097	3,960,746	△213,649	△5.4
Ⅱ.재정운영결과	1,753,994	1,840,162	△86,168	△4.7
Ⅲ.재원의조달및이전	2,060,527	1,918,496	142,031	7.4
Ⅳ.조정항목	38,530	△291,982	330,513	113.2
Ⅴ.기말순자산 (Ⅰ-Ⅱ+Ⅲ+Ⅳ)	4,092,160	3,747,097	345,063	9.2

* 자료 : 해양경찰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요약



회계 구분	세부사업명	'23년 예산 (백만원)	주제(제목)	지적사항	국회 지적
일반 회계	일반회계 세입	5,388	세입추계 적정성 확보 및 장기 미수납채권등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	해양경찰청은 변상금, 과태료 및 가산금의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채권 회수 계획 수립, 채권 보전 조치 강화 등 미수납 채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21·22년 시정요구 (제도개선)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사업	4,732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내역사업의 국고보조율 단계적 조정 필요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내역사업은 현재 국고 100%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2년 시정요구 (주의)
			연례적 세목조정을 통한 포스터 공모전, 캠페인 등 신규 행사추진 부적절	연례적으로 세목조정을 통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행사를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2년 시정요구 (시정)
	VTS구축운영 사업	22,757	해상교통관제시스템 관련 관리용역비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잔액의 연례적 타 비목으로의 이·전용 및 세목조정 부적절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편성된 관리용역비의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잔액을 연례적으로 조정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일반용역비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행사추진 부적절	해양경찰청은 사전에 법령검토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불용예산액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행사를 추진하는 부적절한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외사경찰 활동지원	1,967	민간위탁사업비 과다 편성 후 연례적 이용 등 행태 시정 필요	실제 민간위탁척수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민간위탁사업비가 실소요액보다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민간위탁사업비를 타 용도의 사업을 위한 여유재원 형태로 운용하는 행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함정정비유지	16,215	노후함정 안전도 검사 용역비 낙찰차액 사용 부적절	불용하는 것이 원칙인 일반용역비의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관행적으로 노후안전진단 검사 용역을 행사운영 등의 용역계약을 위해 사용하는 일반용역비로 편성·집행하는 사례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진압및전투장비 관리 사업	2,068	불용 예상 사업 예산으로 계획되지 않은 사업 추진 부적절	해양경찰청은 연례적으로 연도 중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으로 당초 계획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상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지방관서 기본경비	22,167	공공요금및제세의 연례적 이·전용 부적정	연례적으로 상당 규모의 예산을 조정하여 지방관서의 공공요금및제세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소요파악을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 소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2년 시정요구 (시정)

Ⅱ. 회계·기금별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해양경찰청의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53억 8,800만원으로, 당초 재산수입 4억 2,200만원, 경상이전수입 35억 3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2억 200만원, 관유물매각대 2억 6,1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경상이전수입 변상금 13억 400만원, 과태료 2억 5,500만원, 위약금 2억 1,600만원 등 14억 4,300만원이 증가하고, 재산수입 1억 800만원과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9억 2,000만원 증가하여 총 25억 6,800만원 증가한 79억 5,600만원이 되었음.

□ 징수결정액 중 재산수입 5억 3,000만원, 경상이전수입 24억 1,3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1억 2,200만원, 관유물매각대 3억 5,800만원 등 54억 2,300만원이 수납되고, 변상금 및 과태료 3,6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경상이전수입 등 24억 9,7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 납액	증감액 (B-A)	B/A (%)
계	5,388	7,956	5,423	36	2,497		100.6
○ 재산수입	422	530	530	-	-	108	125.6
- 관유물대여료	335	162	162	-	-	△173	△48.3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87	368	368	-	-	281	423.0
○ 경상이전수입	3,503	4,946	2,413	36	2,497	△1,090	44.5
- 벌금·몰수금및과태료	273	526	397	1	128	124	145.4
- 변상금및위약금	2,110	3,630	1,396	34	2,200	△714	△66.7
- 가산금	4	55	9	1	45	5	225.0
- 기타경상이전수입	1,116	735	611	-	124	△505	△54.7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202	2,122	2,122	-	-	920	176.5
- 면허료및수수료	410	374	374	-	-	△36	△91.2
- 잡수입	792	1,748	1,748	-	-	956	220.7
○ 관유물매각대	261	358	358	-	-	97	137.2
- 고정자산매각대	261	358	358	-	-	97	137.2

* 자료 : 해양경찰청

2) 세출결산

□ 당초 예산액은 1조 8,108억 8,1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89억 2,900만원을 증액한 예산현액은 1조 8,298억 1,000만원으로, 이 중 1조 8,054억 7,200만원(98.7%)이 지출되었고, 195억 5,900만원(1.1%)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7억 7,900만원(0.3%)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프로그램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810,881	1,829,810	1,805,472	19,559	4,779
ㅇ 구조안전활동	70,846	69,530	68,277	132	1,121
ㅇ 해양경비체계강화	513,412	516,794	504,521	11,126	1,147
ㅇ 정비창운영	46,593	46,611	45,739	572	300
ㅇ 해양오염관리	32,008	32,051	27,261	4,727	63
ㅇ 해양경찰행정지원	1,148,022	1,164,824	1,159,674	3,002	2,148

* 자료 : 해양경찰청

□ 예산현액 중 구조안전활동에 695억 3,000만원, 해양경비체계강화에 5,167억 9,400만원, 정비창운영에 466억 1,100만원, 해양오염관리에 320억 5,100만원, 해양경찰행정지원에 1조 1,648억 2,400만원 등이 지출되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계약기간 미도래 및 납품지연 등으로 195억 5,900만원이 발생되었고, 불용액은 각 비목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으로 47억 7,900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 : 세입추계 적정성 확보 및 장기 미수납채권등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

○ 해양경찰청은 변상금, 과태료 및 가산금의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채권 회수 계획 수립, 채권 보전 조치 강화 등 미수납 채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해양경찰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건물 및 관유물 대여료, 해양오염사고 변상금, 벌금 및 과태료, 국고보조 및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 면허료 및 수수료, 고정자산 매각대 등으로 구성됨.

□ 2023년 해양경찰청의 세입 결산은 예산액 53억 8,800만원보다 3,500만원이 많은 54억 2,3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액 대비 100.6%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79억 5,600만원 대비 수납율은 68.2%로 24억 9,700만원이 미수납되었고 3,600만원이 불납결손되었음.[3)]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		결산(B)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A)			
일반회계 세입	5,300	5,388	5,388	5,423	100.6	6,216

3)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과태료(56-563), 변상금(57-571), 가산금(58-581)

□ 최근 5년간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수납률 61.6%에서 2021년 수납률이 43.0%로 점차 감소하다가 대규모 불납결손(47억 4,600만원) 실시 후 수납률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율	미수납액	미수납율	불납결손액
2019	20,011	12,324	61.6%	7,685	38.4%	2
2020	11,576	4,156	35.9%	7,327	63.2%	93
2021	12,337	5,300	43.0%	2,291	18.5%	4,746
2022	6,471	4,027	62.2%	2,402	37.1%	42
2023	7,956	5,423	68.2%	2,497	31.4%	36

※ 자료: 해양경찰청

(나) 검토의견

□ 변상금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4]에 따라 국가가 해양오염 방제조치를 직접 실시한 경우 그 방제비용을 오염원인행위자에게 청구하는 데 따른 수입으로, 당초 세입예산액은 16억 3,0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29억 3,400만원이고 이 중 7억 200만원을 수납하고 21억 9,8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3,4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음.

과태료는 「수상레저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등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징수되는 금전부담으로 당초 세입예산액은 1억 8,3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4억 3,800만원이고 이 중 3억 2,2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1,5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음.

가산금의 경우 금전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가해지는 부과금액으로 당초 세입예산액은 4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5,500만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900만원, 미수납액은 4,500만원, 불납결손액은 100만원임.

---

4)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안의 자갈·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부담하게 한 비용의 징수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최근 5년간 변상금, 과태료, 가산금 수납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변상금	2019	880	16,399	8,954	1,017.5	54.6	7,444	1
	2020	1,017	8,280	1,105	108.7	13.3	7,082	93
	2021	2,679	8,620	1,826	68.2	21.2	2,056	4,738
	2022	1,619	2,680	518	32.0	19.3	2,134	28
	2023	**1,630**	**2,934**	**702**	**43.0**	**24.0**	**2,198**	**34**
과태료	2019	160	353	188	117.5	53.3	164	1
	2020	182	352	193	106.0	54.8	159	-
	2021	189	339	193	102.1	56.9	138	8
	2022	183	375	230	125.7	61.3	133	12
	2023	**183**	**438**	**322**	**176.0**	**73.5**	**115**	**1**
가산금	2019	12	42	3	25.0	7.1	39	-
	2020	4	51	5	125	9.8	46	-
	2021	4	56	7	175	12.5	49	-
	2022	4	54	4	100.0	7.4	48	2
	2023	**4**	**55**	**9**	**255.0**	**16.4**	**45**	**1**

※ 자료: 해양경찰청

□ 이처럼 변상금, 과태료, 가산금은 예산액, 수납액 간 연례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세입액의 과소·과다 계상은 세입·세출의 불일치를 초래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소관 변상금, 과태료, 가산금의 예산액 대비 수납액을 고려할 때 세입예산이 연례적으로 과소 또는 과다계상 되고 있는바, 최근 징수결정액·수납액의 추이를 반영하여 변상금 등의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세입 예산 편성의 명확한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경제상황, 전년도 징수 실적(3년 평균 수납액)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편성한다는 설명이나, 세입예산과 수납실적의 차이가 연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경제상황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을 수치화하여 객관적으로 예산액에 반영하는 방안 등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최근 5년간 변상금, 과태료, 가산금의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가산금(16.4%), 변상금(24%), 과태료(73.5%) 순으로 저조한데, 그 수납이 저조한 원인은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변상금·과태료·가산금이 지속적으로 미납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 비율이 변상금의 경우 전체 미수납 변상금의 76.3%이고, 과태료의 경우 전체 미수납 과태료의 63.5%이며, 가산금의 경우 전체 미수납 가산금의 66.7%임.

□ 해양경찰청은 변상금의 경우 2014년 세월호 해양오염 사고(청해진해운) 방제비용 14억 7,900만원이 관련 소송 진행 중임에 따라 수납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체납자의 거소가 분명치 않거나 재력이 부족한 경우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체납발생경과기간에 따른 과태료·가산금 미수납액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체납발생 경과기간	변상금			과태료			가산금		
	건수	금액	비율 (금액)	건수	금액	비율 (금액)	건수	금액	비율 (금액)
1년 미만	34	220	10	43	14	12.2	346	5	11.1
1년 이상~ 2년 미만	8	56	2.5	16	9	7.8	157	3	6.7
2년 이상~ 3년 미만	9	133	6.1	13	5	4.3	164	4	8.9
3년 이상~ 4년 미만	13	23	1	8	10	8.7	114	2	4.4
4년 이상~ 5년 미만	7	90	4.1	8	4	3.5	74	1	2.2
5년 이상	124	1,676	**76.3**	88	73	**63.5**	2,601	30	**66.7**
총 계	195	2,198	100	176	115	100	3,456	45	100

※ 자료: 해양경찰청

□ 그러나 이렇게 장기간 회수가 되지 않는 채권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저하시키므로, 「예산집행지침」에서도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납입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액채권에 대한 회수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국가채권 관리 및 연체채권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변상금, 과태료 등의 전년도 수입·수납 실적 및 향후 징수 여건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세목별 수납실적 저조 사유를 분석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채권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미수납채권이 적극 회수될 수 있도록 징수관리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사업 : 국고보조금사업의 제도 개선 마련 및 연례적 세목조정을 통한 신규 행사추진 부적절

○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내역사업은 현행법상 지자체장이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재 국고 100%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례적으로 세목조정을 통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행사를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사업은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각종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구조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48억 4,800만원 중 47억 9,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되고, 4,500만원이 불용되었음.[5)]

【 2023년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4,732	4,732		116	4,848	4,799	4	45	6,118

5) 회계-세부사업 : 일반회계-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3001-300)

(나) 검토의견

(1)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내역사업의 국고보조율 단계적 조정 필요

□ 내역사업인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은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통해 연안 인근의 위험지역을 순찰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7억 7,8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 2023년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내역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778	778	-	-	778	778	-	-	710

※ 자료: 해양경찰청

□ 동 내역사업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어, 같은 법 제17조[6]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교육과 활동비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사업자인 한국해양안전협회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사업임.

---

6)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연안안전지킴이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동 사업은 연안활동이 빈번한 5~10월 간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위험구역에 지역주민을 배치하여 연안 순찰, 행락객 계도, 구조물 점검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총 208명의 연안안전지킴이를 104개소의 위험구역에 배치하였음.

【 최근 4년간 연안안전지킴이 배치 현황 】

(단위: 개소, 명)

연도	배치구역	배치인원					
		계	중부청	서해청	남해청	동해청	제주청
2021	84	168	40	38	40	32	18
2022	83	166	48	40	44	34	-
2023	104	208	54	46	50	42	16
2024. 5월	97	194	56	40	50	30	18

※ 자료: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은 연안 해역의 규모가 광범위하고 정부 주도의 안전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주민을 안전사각지대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동 사업을 통해 연안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 사망자 수가 상당부분 감소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7] 2026년에는 2024년 194명에서 약 3배로 증가한 600명의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어 2023년 예산보다 약 3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7) **2023년 연안안전지킴이 활동 성과** : '23년 지킴이 배치장소 104개소에서 최근 5년 평균 동기 대비 연안사고 32%(67.8→46건), 사망 20%(10→8명) 감소

※ 전체 연안사고는 최근 5년 대비 사고 45%(307→445건), 사망 54%(57→88명) 각각 증가

구분	5년 평균('18~'22년)							2023년						
	합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사고(건)	67.8	12.6	11.4	11.2	11	12.4	9.2	46	9	7	8	11	6	5
사망(명)	10	1.8	1	2.2	1.8	2.2	1	8	0	2	1	4	1	0

【 연안안전지킴이 중·장기 증원계획 】

(단위: 명)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인원	166	208	194	400	600

※ 자료: 해양경찰청

□ 그런데 해양경찰청은 실질적인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8](2021. 4.) 법률 시행 3년이 넘도록 지자체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 없이 모든 지역의 연안안전지킴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100%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연안환경,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재정적, 행정적 협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협의를 해왔다는 입장이지만,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공동책임을 갖는 사무

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연안안전지킴이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해양경찰청이 지자체의 지원없이 국비 100%로 국고보조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부적절한 재정운용 사례임.

□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연안안전지킴이 사업 운영 시 전액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 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연례적 세목조정을 통한 포스터 공모전, 캠페인 등 신규 행사 추진 부적절

□ 해양경찰청은 2023년 4월 ‘제9회 해양안전 포스터 공모전’과 6월 ‘연안안전의 날 대국민 안전 캠페인’을 추진하여 관련 경비로 총 6,7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2건의 행사는 당초 2023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임. 특히, ‘해양안전 포스터 공모전’의 경우 2022년에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1,2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음.

【 제9회 해양안전 포스터 공모전 】

(접수기간 및 방법) ’23. 4. 17.~ 5. 31. / 우편 및 온라인 접수
(참여대상) 국민 누구나 / 총 1,100건 접수(포스터 5점, 어린이 그림 21점 선정)
(주요내용) 구명조끼, 생존수영 등 연안안전을 공모주제로 포스터 디자인, 어린이 그림 공모전 진행
(행사목적) 학교·어린이집 등 배포하여 교육자료 활용, 대형마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 및 해양안전의식 제고
(집 행 액) 15,700,000원
(계약기간) ’23. 5. 19. ~ 7. 31.

※ 자료: 해양경찰청

【 연안안전의 날 대국민 안전 캠페인 용역 】

(일시·장소) ’23. 7. 8. /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공원
(참여대상) 어린이, 가족 및 인근 지역민 / 총 3,500명 참석
(주요내용) 어린이·가족 맞춤형 흥미 유발 해양안전 체험 운영
※ 구명조끼 입고 생존수영, 구명벌·심폐소생술 체험 등
(행사목적)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 前 어린이 대상 해양안전교육 및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체험형 안전캠페인 추진
(집 행 액) 51,000,000원
(계약기간) ’23. 6. 14. ~ 7. 31.

※ 자료: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위 2건의 행사 관련 경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연도 중 세목조정을 통하여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사업 내 일반용역비를 2023년에 6,700만원 증액 조정하였고, 2022년에도 1,200만원을 증액 조정한 바 있음.

【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사업 일반용역비 증액 조정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2022	세목조정 ('22.3.16.)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3001-300)	210-01 (일반수용비)	12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3001-300)	210-14 (일반용역비)
2023	세목조정 ('23.4.28.)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3001-300)	210-01 (일반수용비)	16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3001-300)	210-14 (일반용역비)
	세목조정 ('23.6.2.)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3001-300)	210-01 (일반수용비)	51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3001-300)	210-14 (일반용역비)

※ 자료: 해양경찰청

□ 그런데, 해양경찰청이 2022년 및 2023년 중 추진한 해양안전 포스터 공모전 및 연안안전의 날 대국민 안전 캠페인은 행사의 성격 및 목적상 단순 홍보 등을 위한 행사로 보이고,

국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이·전용 및 세목조정 등을 통해 국회에서 당초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기존 사업에서 변경하여 추진하지 않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

□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국회의 결산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연례적으로 세목조정을 실시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행사를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VTS구축운영 사업 : 연례적 낙찰차액 등 사용 및 당초 예산 미반영 행사추진 부적절

○ 해양경찰청은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편성된 관리용역비의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잔액을 연례적으로 조정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해양경찰청은 사전에 법령검토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불용예산액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행사를 추진하는 부적절한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VTS구축운영 사업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운수송환경 조성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요 항만·연안해역에 해상교통관제시스템(Vessel Traffic Service System: VTS)을 구축·운영하는 것으로,[9] 2023년도 예산현액 223억 7,800만원 중 216억 7,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8%)되고, 7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음.[10]

【 2023년 VTS구축운영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VTS구축운영	22,757	22,757	692	△1,071	22,378	21,672	-	706	26,421

9) 해상교통관제시스템(Vessel Traffic Service System): 레이더 등을 이용하여 항만 또는 연안 해역의 선박 교통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제구역 내 통항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교환 체제

10) 회계-세부사업 : 일반회계-VTS구축운영(3002-301)

(나) 검토의견

(1) 해상교통관제시스템 관련 관리용역비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잔액의 연례적 타 비목으로의 이·전용 및 세목조정 부적절

□ 2023년 VTS구축운영 사업의 관리용역비[11]는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장비 및 센터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총 73억 8,900만원에서 5억 3,300만원을 이·전용 감액한 예산현액 68억 5,600만원 중 66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 VTS구축운영 사업 관리용역비 편성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관리용역비	7,389	7,389	-	△533	6,856	6,618	-	238	7,466

□ 관리용역비, 일반용역비 등과 같은 용역수행을 위한 사업비의 낙찰차액은 수요 예측 잘못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정부의 집행지침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일반용역비(210-14목), 일반연구비(260-01목) 등 용역수행을 위한 사업의 낙찰차액을 불용처리하도록 하고 있음.[12]

11) “관리용역비(210-15목)”는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을 지출하는 비목임

12) 정부는 집행지침에서 “일반용역비(210-14목), 일반연구비(260-01목) 등 용역수행을 위한 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다만, 해당 용역의 수정계약 체결시 추가소요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해양경찰청은 연례적으로 해상교통관제시스템과 관련된 관리용역비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잔액[13]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용역비, 국내여비, 인건비 등으로 이·전용 또는 세목조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2021년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용하였는데, 동 기간 동안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4억 2,000만원을 사용하였음.[14] 2022년에는 항공유와 인건비에 충당하기 위해 2억 5,800만원을 이용(移用)하였고, 2023년에는 VTS국내여비와 인건비 부족분으로 5억 3,300만원을 이용 및 전용하였음.

13) VTS 유지보수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을 포함하여 용역비를 산출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후 대금 지급 시에는 경비 중 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보험료를 실제 작업 투입일수에 해당되는 보험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하여야 함.

14) 해양경찰청은 2021년까지 불용이 확실한 관리용역비의 낙찰차액을 VTS구축·유지관리 등 지속적 장비 증가로 부족한 시설장비유지비로 조정하여 사용하다가 2021회계연도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의 지적으로 2022년은 조정없이 집행한 후 2023년의 경우 예산을 해당 예산을 5억 4,500만원에서 10억 4,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 최근 5년간 VTS구축운영 사업 낙찰차액 조정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발주금액	계약금액	집행잔액		조정액	조정사유
				낙찰차액	보험료 정산액		
2019	6,067	6,067	5,946	121	216	△337	VTS 시설장비유지비 세목조정 337
2020	6,067	6,067	5,932	135	308	△443	VTS 시설장비유지비 세목조정 443
2021	6,410	6,410	6,255	155	293	△448	VTS 시설장비유지비 세목조정 448
2022	6,582	6,582	6,410	86	172	△258	항공유 이용 108 인건비 이용 150
2023	7,389	7,389	7,227	162	371	△533	VTS 여비 전용 70, 인건비 이용 463

※ 자료: 해양경찰청

□ 이처럼 해양경찰청은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편성된 관리용역비의 낙찰차액 및 정산잔액 중 매년 평균 3억 7,400만원을 이·전용 또는 세목조정을 통하여 다른 사업의 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관리용역비의 예산이 세밀하지 못하게 편성되었기 때문임.

2023년 관리용역비의 실제 집행은 총 102건의 발주와 계약으로 추진되었는데 반해, 예산편성은 VTS 센터 시설장비 관리용역비로 총 22개소에 개소당 평균 3억 3,600만원의 관리용역비와 인건비 상승분 6백만원을 합한 73억 8,9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바, 예산편성과 실제 집행방식 간의 괴리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음.

【 최근 5년 관리용역비 편성 내역 】

구분	편성내역	예산	집행	이·전용
2019	VTS 센터 시설장비 관리용역비: 6,067,000,000원	6,067	5,476	△337
2020	VTS 센터 시설장비 관리용역비: 6,067,000,000원	6,067	5,502	△443
2021	VTS 센터 시설장비 관리용역비: 6,410,000,000원	6,410	5,866	△448
2022	VTS 센터 시설장비 관리용역비: 6,582,000,000원	6,582	6,007	△258
2023	VTS 센터 시설장비 관리용역비: 335,590,909원*22개소=7,383,000,000원 VTS 시설장비 관리용역비 인건비 상승: 6,000,000원	7,389	6,618	△533

※ 자료 : 해양경찰청

□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매년 편성된 예산 전액에 대하여 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나 100여건의 용역을 편성내역에 모두 담을 수 없었으며, 일반경쟁을 통한 낙찰차액 발생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사후정산 등)에 따른 건강 보험료 등 정산[15] 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장비 긴급 수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및 해양경찰청 인건비 등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여 부득이하게 이·전용 및 조정 사용하였다는 의견임.

□ 그러나, 해상교통관제시스템 관리용역비의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잔액을 매년 다른 용도의 사업을 위한 여유 재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15) 보험료 정산으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 근거하여 용역을 수행한 일수만큼만 대가를 지급하여 부당한 집행을 방지하고자 필수적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이라는 설명임.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사례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실소요액보다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관리용역비의 낙찰차액 및 정산잔액을 타 입법·행정과목 및 비목으로의 이·전용 또는 세목 조정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일반용역비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행사추진 부적절

□ 해양경찰청은 2023년 VTS구축운영 사업의 일반용역비로 총 4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3억 5천만원을 집행하고 1억 4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 VTS구축운영 사업 일반용역비 편성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일반용역비	454	454	-	-	350	-	104	20

□ 2023년 예산은 ① VTS 이용자 만족도 조사용역비 1,400만원과 ②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16] 통신설비 점검·수리시 담당공무원·업체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철탑 추락방지설비 구조안전진단용역비[전국 89개 철탑 중 44개소(49.4%, 45개소는 旣설치)]로 건당 평균 1,100만원의 견적을 받아 편성된 4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런데, 2023년 예산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탑 44개소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용역으로 편성된 예산내역과는 다르게 총 37개

16)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제167조(벌칙) (미설치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소의 철탑에 대하여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추진되어 2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음.

해양경찰청은 당초 철탑추락방지설비(등받이울, 계단참) 설치를 위하여 44개소에 대한 구조안전 진단용역 및 설계용역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실제 집행 시 경미한 설비(와이어형)를 설치하는 7개소의 경우 전문기술사의 의견을 받아 용역에서 제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17]

□ 그런데 구조안전진단이 필요 없는 7개소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제외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을 검토하지 않고 실제 집행 가능 예산보다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 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16조[18]의 예산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당 사업의 철탑 추락방지설비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중 5,600만원을 목포광역 VTS 개국식 행사, 군산광역VTS

17)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제6호에 따라 계단을 증설 또는 수선하는 경우에만 구조안전진단용역이 의무사항으로 하중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구조변경 7개소는 전문기술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진단을 제외함

18)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국식 행사 및 남해청 VTS 시설관리 워크숍 개최에 사용하였는데, 이 3건의 행사는 당초 2023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임.

【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행사 개최 내역 】

구분	①목포광역 VTS 개국식 행사 용역	②군산광역 VTS 개국식 행사 용역	③ VTS 시설관리 워크숍
일자	2023.9.25.(월)	2023.9.25.(월)	2023.5.18.(목)
장소	목포광역VTS	군산광역VTS	남해교육센터 2층
대상	내·외빈 200여명	내·외빈 200여명	경비과장, VTS센터 직원 등 총 51명
행사내용	목포광역 VTS 정식 운영('23. 9)에 따라 개국 행사	군산광역 VTS 정식 운영('23. 9)에 따라 개국 행사	남해청 소속VTS 관제사 근무방식 개선을 위한 의견 개진
집행액	2,199만원	3,200만원	240만원
당초 예산 반영 여부	×	×	×

※ 자료: 해양경찰청 제출자료 재구성

□ VTS 개국식 행사('23년 9월 집행)와 워크숍('23년 5월 집행)은 행사의 성격 및 목적상 단순 홍보 또는 사기진작 등을 위한 행사로 보이는데,

철탑의 추락방지를 위해 사람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을 불용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인 2023년 5월과 9월에 집행한 것은 예산을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하반기에 철탑 추락방지 구조안전진단 용역관련 추가 수요 발생 시 예산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예산집행 방식으로 보임.

□ 특히,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반용역비로 편성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미반영된 워크숍의 경우 반드시 실시될 필요가 있었다면 해양경찰청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보다 적합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불용예상액 활용을 통해 국회에서 당초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기존 사업에서 변경하여 추진하지 않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

□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법령 검토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불용예상액을 활용하는 부적절한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외사경찰활동지원 : 민간위탁사업비 과다 편성 후 연례적 이용 등 행태 시정 필요

○ 해양경찰청은 실제 민간위탁척수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민간위탁사업비가 실소요액보다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민간위탁사업비를 타 용도의 사업을 위한 여유재원 형태로 운용하는 행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외사경찰활동지원 사업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외사사범 단속 활동을 위한 국제정보외사활동,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 19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7억 200만원이 이전용 감액되고 남은 예산현액 12억 6,500만원 중 12억 6,100만원이 집행되고 400만원이 불용되었음.[19)]

【 2023년도 외사경찰활동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외사경찰활동지원	1,967	-	-	△702	1,265	1,261	-	4	1,692
○ 불법조업외국어선 사법처리	1,132	-	-	△704	428	425	-	3	839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093	-	-	△704	389	386	-	3	800
- 구호및교정비 (320-06)	39	-	-	-	39	39	-	-	39

19)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외사경찰활동지원(3102-302)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 중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320-02)는 2023년 7억 400만원을 이용 감액하였는데, 코로나19로 조업이 줄었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9년 이후 연례적으로 불용액 또는 이용 감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 최근 5년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E)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2019	1,012	-	-	-	1,012	666	346	65.8%
2020	943	-	-	△700	243	239	24	98.3%
2021	568				568	568	-	100%
2022	568			△186	382	381	1	99.7%
2023	1,093			△704	389	386	3	99.8%

※ 자료: 해양경찰청

□ 민간위탁사업비 비목에서 다른 사업으로의 이용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의 경우 7억이 함정정비유지비의 시설장비비 부족분 지원을 위해, 2022년 1억 8,600만원과, 2023년 7억 400만원이 공공요금 및 공무원 보수 부족의 사유로 지방관서인건비 등의 타사업으로 이용되었음.

【 외사경찰활동지원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 이용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에서 목-세목 코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으로 목-세목 코드	이·전용등 사유
2020	이용 ('20.11.18.)	국제정보외사활동 (3102-302)	320-02	700	함정정비유지 (3103-300)	210-09	시설장비비 부족분
2022	이용 ('22.10.18.)	국제정보외사활동 (3102-302)	320-02	109	지방관서기본경비 (7202-251)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이용 ('22.12.22.)	국제정보외사활동 (3102-302)	320-02	77	지방관서인건비 (7201-101)	110-01	인건비 부족
2023	이용 ('22.12.22.)	외사경찰활동지원 (3102-302)	320-02	704	지방관서인건비 (7201-101)	110-01	인건비 부족

※ 동 사업은 2023년에 사업명이 "국제정보외사활동"에서 "외사경찰활동지원"으로 변경됨.
※ 자료: 해양경찰청

□ 이는 해당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가 예산 편성단계부터 과다편성되었기 때문임. 2023년도의 민간위탁사업비의 예산편성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선박의 위탁 및 폐기 3년 평균건수(위탁 16척, 폐기 15척)가 실제 3년(2020~2022년) 평균(위탁 15척, 폐기: 3척) 보다 과다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2023년도 편성 산출 내역 】

①민간위탁비(선박) 913백만원 = 위탁[4.2백만원(월 위탁·보관비용) × 7~8개월(위탁·보관 기간) × 16척(3년 평균 위탁척수)] + 폐기[24백만원(폐기비용) × 15척(폐기척수)]

+

②민간위탁비(어구) 165백만원 = 위탁[2백만원(월 위탁·보관비용) × 6~7개월(위탁·보관 기간) × 12건(어구위탁척수)] + 폐기[1백만(폐기비용) × 15건(폐기건수)]

+

③민간위탁비(어획물) 15백만원 = 폐기[1백만(폐기비용) × 3~4개월(위탁·보관 기간) × 4건(폐기건수)]

①+②+③ = 1,093백만원

【 최근 5년간 위탁 및 폐기 척수 】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위탁	폐기	위탁	폐기	위탁	폐기	위탁	폐기	위탁	폐기
선박	28	18	19	11	10	3	22	4	15	2
어구	4	4	16	16	3	3	3	3	4	4
어획물	1	1	-	-	-	-	4	4	2	2
계	33	23	35	27	13	6	29	11	21	8

※ 자료: 해양경찰청

□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2023년의 경우 2022년 코로나19 종식 이후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나포 및 위탁 척수가 2019년 이전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19 이전 예산편성 수준인 1,09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불법조업 외국어선 위탁척수가 증가하지 않아 집행율이 부진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이는 최근 3년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위탁관리 및 폐기실적을 근거로 산출한 2023년 예산편성 내역과 부합하지 않은 설명임.

또한, 민간위탁사업비의 경우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기관에게 맡기는 경비로서, 매년 서해권을 제외한 총 5개 관서에서 단가 및 수의계약을 통해 민간위탁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집행하고 있는바,[20]

20) 민간위탁사업은 주로 불법 외국어선을 검거하는 서특단(인천), 태안, 군산, 목포, 제주, 서귀포 6개 관서에서 연단위 계약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서특단(인천)을 제외한 5개 지역에서는 선박위탁을 위한 공유수면 허가를 받은 민간위탁업체가 적고,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기존업체를 지명한 연장계약(수의)을 체결하고 있음.

특히, 단가계약의 경우 실제 위탁 및 폐기된 선박 건수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 회계연도 말까지 예산집행의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연례적으로 매년 이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집행으로 보임.

【 2023년 민간위탁관리업체 계약 현황 】

관할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용역업체	계약방식	계약사유	일반경쟁으로 계약하지 않은 사유
서특단(인천)	압수물(불법외국어선등) 위탁관리 및 폐기용역	총액	1년	○○○○기계	경쟁	불법조업외국어선·어구·어획물에 대해 몰수판결 확정시까지 위탁보관을 위한 계약	-
태안		단가	1년	○○○○기계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거나 재공고입찰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 수의계약 체결함.
군산		단가	1년	○○○○(선박) ○○○○○산업(어구, 어획물)	수의		
목포		단가	1년	○○해운	수의		
제주		단가	1년	○○해운	수의		
서귀포		단가	1년	○○해운	수의		

※ 자료: 해양경찰청

□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선박종류별 실제 위탁 및 폐기건수보다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동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사업을 위한 여유재원 형태로 운영하는 행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5) 함정정비유지 : 노후함정 안전도 검사 용역비 낙찰차액 사용 부적절

○ 해양경찰청은 불용하는 것이 원칙인 일반용역비(210-14목)의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관행적으로 노후안전진단 검사 용역을 행사운영 등의 용역계약을 위해 사용하는 일반용역비로 편성·집행하는 사례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함정정비유지 사업은 함정·연안인명구조장비·바지류의 적기수리 지원, 함정 계류시설 개·보수 관리 등을 통해 함정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68억 2,500만원 중 164억 4,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7%)되고 2억 3,200만원이 이월되어 1억 5,200만원이 불용되었음.[21]

【 2023년 함정정비유지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함정정비유지	16,215	16,215	610	55	16,825	16,441	232	152	16,957

21) 회계-세부사업 : 일반회계-함정정비유지(3103-300)

(나) 검토의견

□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내구연한에 도래한 함정에 대해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도 검사는 노후함정의 수리 및 건조 계획 수립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음. 안전도 검사를 위해서 2023년 편성된 일반용역비(210-14목)의 예산현액은 3억 3백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 최근 5년간 노후함정 안전도 검사현황 】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내구연한 초과 함정(A)	51척	63척	59척	62척	58척
당해 실시 함정 [누적 척수(B)]	11척[22)] (22)	11척 (33)	11척 (36)	17척 (48)	10척(계획) (40)
미실시 함정 (A-B)	29척	30척	23척	14척	18척
예산 편성 함정 수	10척	10척	10척	10척	10척
편성액(백만원)	100	200	200	303	303
집행액(백만원)	100	199	198	303	

* 자료 : 해양경찰청
* 내구연한 초과함정 : 구분년도 기준 선령 강선 21년, 알루미늄 및 FRP선 16년 이상된 함정
* 당해 실시 함정 : 구분년도 검사실시한 함정 척수
* 누적 척수 : 구분년도+그 이전에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퇴역하지 않은 함정 누적 척수
* 미실시 함정 : 내구연한을 초과하였으나,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함정 누적 척수

22) '18~'19년은 안전진단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었으나, 승조원들의 안전을 위해 정비창(함정계획정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였고, '18~'19년 연례적으로 국정감사 지적을 받아 '20년부터 함정정비유지 예산으로 편성하여 안전진단 시행 중임.

□ 해양경찰청은 2023년까지 총 48척(퇴역함정 제외)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안전도 검사는 함정정비 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내구연한 도래 함정의 노후도, 정비일정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어, 매년 내구연한 초과 함정임에도 안전검사가 미실시된 함정이 발생하고 있음.

□ 2023년도 안전도 검사 관련 용역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해양경찰청은 2023년 3월 10일에 총 14척의 검사 대상함정에 대하여 노후함정 안전도 검사 용역을 약 3억 3백만원의 제한경쟁으로 추진하였으나,[23] 3월 20일경에 ○○선급의 단독입찰에 따라 1회 유찰된 후, 3월 24일에 ○○선급과 수의계약(3건)을 체결하였으며,[24]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이후 해당 일반용역비의 집행잔액으로 “14대 함정 안전도 검사 용역 계약 당시의 특수조건 약정”[25]에 따라 추가 3척의 함정에 대해서 동일 업체인 ○○선급과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2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2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5)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 선박을 계약할 수 있음.

□ 그런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일반용역비(210-14목)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도록 하되, 해당 용역의 수정계약 체결시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해양경찰청이 노후함정 안전진단 검사 용역을 14척에 대해서만 수의계약한 후 남은 집행 잔액으로 동일 업체인 ○○선급과 추가로 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상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도록 한 일반용역비의 낙찰차액을 사용하여 추가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23년 안전도 검사 용역 진행 경과 】

구분	내용	비고
2023.3.10.	제한경쟁입찰(함정 14대) 공고	계약금액: 3억 200만원
2023.3.20.	1회 유찰(KR(한국선급) 단독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2023.3.24.	한국선급과 수의계약(함정 14대) 체결	계약금액의 87.7%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26]
2023.4월	수의계약 후 낙찰잔액으로 추가로 함정 3대에 대해 한국선급과 각각 수의계약(3건)체결	**128정**(4.18) / **바지29**(4.7) / **H-02정**(4.14)

※ 자료: 해양경찰청

26) 1회 유찰 후 계약의뢰 기관(해경청)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업체(한국선급)와 수의시담(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수의계약에 관련된 자료를 송부하면, 수의시담 상대자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시담가격을 제시하는 절차를 말함)을 통해 계약금액을 통보함.

□ 또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일반용역비를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일반연구비(260-01목)는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으로 구분하여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안전도 검사 용역은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인 일반용역비로 편성·집행되고 있는바, 이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향후 '기술·평가' 등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인 일반연구비로 편성·집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일반용역비(210-14목)의 낙찰차액은 사용하지 않고 불용하도록 한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관행적으로 노후안전진단 검사 용역비용을 행사운영 등의 용역계약을 위해 사용하는 일반용역비로 편성·집행하는 사례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6) 진압및전투장비관리 사업 : 불용 예상 사업 예산으로 계획되지 않은 사업 추진 부적절

○ 해양경찰청은 연례적으로 연도 중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으로 당초 계획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진압및전투장비관리 사업은 해상주권 확보 및 해상치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비함정에 소요되는 진압·전투장비(무기·탄약 등)를 적기 공급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0억 6,800만원 중 20억 6,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8%)되고, 400만원이 불용되었음.[27]

【 2023년 진압및전투장비관리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진압및전투장비관리	2,068	2,068	-	-	2,068	2,064	-	4	2,068
○노후방독면교체	200	200	-	-	200	200	-	-	200
○노후전투장비교체	3	3	-	-	3	3	-	-	3

27) 회계-세부사업 : 일반회계-진압및전투장비관리(3104-303)

(나) 검토의견

□ 노후방독면교체 내역사업은 해양경찰청 해상치안계획 및 무기탄약류 등 관리규칙[28]에 따라 생화학무기 및 화생방전 대비 전시인원의 안전확보를 위해 1인 1개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독면 폐기와 전시인력증원대비 규정상[29] 부족한 방독면을 구입하기 위하여 2023년도 예산현액 2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 방독면 보유현황 및 내구현황(2023년 기준) 】

(단위 : 개)

구분	①목표* (A)	②보유 (B=a+b)	노후도 비율 [(a)/②/]	노후(10년 초과)					노후 미도래 (b)	과부족 (B-A)	내용연수
				소계 (a)	14년 이상	13년	12년	11년			
방독면	16,036	15,502	57%	8,839	6,895	403	739	802	6,663	-534	10년

□ 최근 5년간 노후방독면교체 내역사업의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매년 2억원을 편성하여 불용액 없이 전액 집행하였음.

【 최근 5년간 노후방독면교체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9년	15	15	-	-	-	15	12	-	3
2020년	3	3	-	-	-	3	3	-	-
2021년	200	200	-	-	-	200	194	6	-
2022년	200	200	5	-	-	205	205	-	-
2023년	200	200	-	-	-	200	200	-	-

※ 자료: 해양경찰청

28) 무기·탄약류 등 관리 규칙 제25조(방독면 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방독면을 1인 1개씩 정원의 100퍼센트를 보유해야 하며, 개인에게 지급 받은 사람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9) 방독면 보유기준(해양경찰청 해상치안계획 비밀Ⅱ급) : 기준정원(13,232명) + 전시증원(2,804명)

□ 그런데, 2023년 노후방독면교체 내역사업의 실제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방독면 제조 업체 간 소송문제(특허분쟁)로 조달계약이 불가하여 방독면 교체 실적은 없었고, 다른 내역사업인 전투장비 구입과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방탄헬멧 구매에 사용하였음.

□ 해양경찰청은 노후 방독면 교체 내역 사업의 예산을 다른 내역사업 또는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는데, 2021년에는 노후전투장비(4,500만원) 구입에, 2022년에는 노후전투장비(5,600만원)와 방탄헬멧(1,400만원) 구입에 집행하였음.

【 최근 3년간 노후방독면교체 및 노후전투장비교체 내역사업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역	
	방독면	전투장비	계	방독면	전투장비	방탄헬멧	계		
2021	200	3	203	158	45[30]	-	203	방독면	- 1,124개×140.2천원 = 157,571천원
								전투장비	- 비 살상무기: 8정×4,976천원 = 39,808천원 * (이월) 비살상무기 5,540천원
2022	200	3	203	134	56	14	203	방독면	- 1,000개×138.7천원 = 138,708천원
								전투장비	- 비 살상무기:10정×5,074천원 = 50,740천원(이월포함)
									- 음력 전화기: 13세트×391천원 = 5,083천원
								방탄헬멧	- 70개×200천원 = 14,000천원
2023	200	3	203	-	34	169	203	전투장비	- 비 살상 무기: 7정×4,864천원 = 34,049천원
								방탄헬멧	- 849개×199천원 = 168,951천원
계	600	9	609	292	135	183	609		

※ 자료: 해양경찰청

30) (이월포함) 비살상무기 5,540천원

□ 해양경찰청은 전시물자인 방탄헬멧의 노후도가 78.6%로 교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구매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나, 같은 예산을 편성받은 경찰청의 경우 노후방독면교체 내역사업의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방탄헬멧 보유현황 및 내구현황(2023년 기준)】

(단위 : 개)

구분	①목표* (A)	②보유 (B=a+b)	노후도 비율 [(a)/②/]	노후(7년 초과)			노후 미도래 (b)	과부족 (B-A)	내용연수
				소계 (a)	7년~20년	20년 초과			
방탄헬멧	6,476	6,936	78.6%	5,449	3,013	2,436	1,487	+460	7년

※ 자료: 해양경찰청

□ 노후방독면교체 내역사업은 노후 방독면의 교체율이 42.9%로 매우 낮다는 사안의 시급성을 이유로 2019년·2020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설된 사업으로서 2023년 예산 편성 당시 1,000개(1.8억원)를 구매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해양경찰청은 이를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노후방탄헬멧교체 구매 등으로 자의적으로 집행하였는바, 이는 국회가 의결한 예산 편성 취지와 다르게 임의적으로 신규 내역사업을 신설하여 집행한 것으로 부적절한 예산집행방식임.

□ 이처럼,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내용과 다르게 내역사업 간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하거나 신규 내역사업을 신설하여 집행하는 방식은 장기적 계획에 따른 장비의 효율적 구매·관리가 어렵다는 측면에서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연례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노후방독면교체 사업 예산으로 계획되지 않은 신규 내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31]을 위반한 행위로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1)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7) 지방관서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의 연례적 이·전용 부적정

○ 해양경찰청은 연례적으로 상당 규모의 예산을 조정하여 지방관서의 공공요금및제세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소요파악을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 소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지방관서기본경비는 해양경찰서 소속기관[32]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및제세, 급식비, 일반수용비 등의 기본적 경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65억 6,100만원 중 239억 7,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2%)되고, 5억 8,900만원이 불용되었음.[33]

□ 이 중 공공요금및제세 과목은 전기·가스료, 우편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각종 세액·보험료 등의 제세를 집행하는 세출과목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65억 6,700만원이나 이·전용 등을 통하여 33억 5,000만원을 증액한 예산현액 99억 1,700만원 중 96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지방관서기본경비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지방관서기본경비	22,167	22,167	540	3,854	26,561	23,971	2,001	589	23,123
-공공요금및제세	6,567	6,567	-	3,350	9,917	9,676	-	241	6,867

32) 5개 지방해양경찰청 및 20개 해양경찰서
33)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지방관서기본경비(7202-251)

(나) 검토의견

□ 지방관서기본경비 사업 중 공공요금및제세 과목 예산은 연례적인 예산의 부족으로 이·전용, 세목조정 등을 통해 집행소요를 충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공공요금및제세 과목의 집행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평균 20억 3,600만원의 이ㆍ전용 등이 있었고 2023년에는 33억 5,000만원의 이·전용이 발생하였음.

【 최근 5년간 지방관서기본경비 중 공공요금및제세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A)	전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B)	집행률(B/A)
2019	6,317	-	2,497	8,814	8,735	138.3
2020	6,317	76	1,190	7,583	7,478	118.4
2021	6,317	98	1,161	7,576	7,510	118.9
2022	6,317	-	1,984	8,301	8,288	131.2
2023	6,567	-	3,350	9,917	9,676	147.3%
합계	31,835	174	10,182	42,191	41,687	130.9%
평균	6,367	34.8	2,036	8438.2	8,337.4	138.8%

※ 자료: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은 공공요금이 연례적으로 부족한 사유로 대형함정의 신규건조 및 노후함정 대체건조(톤수 증가) 등 경비 함정세력 증가, 조직확대에 따른 해양경찰서, 파출소, VTS 센터 신설(증축) 등에 기인한 전기·상하수도·통신요금 등의 증가를 들고 있음.

【 최근 5년간 연도별 함정건조 현황 】

연도	신규건조	대체건조
2019	‣ 500톤 경비함(518, 523) ‣ 방제정(방제-26) ‣ 특수기동정(SM-1, SM-2)	‣ 500톤 경비함(519, 520, 521, 522) ‣ 형사기동정(P-113, P-116, P-117) ‣ 방제정(방제-9,방제-10,방제-11)
2020	‣ 500톤 경비함(526)	‣ 500톤 경비함(525) ‣ 형사기동정(P-115, P-118, P-119, P-120)
2021	‣ 3000톤 경비함(3016)	‣ 1500톤 경비함(1501)
2022	-	‣ 200톤 경비정(203,205,206,207) ‣ 형사기동정(P-121, P-122) ‣ 예인정(T-01)
2023	-	‣ 형사기동정(P-123, P-125) ‣ 예인정(T-02)
2024 (예정)	‣ 예인정(T-09, T-10)	‣ 3000톤 경비함(3001) ‣ 200톤 경비정(208, 209, 210, 211, 212, 213, 215) ‣ 형사기동정(P-126, P-129, P-130) ‣ 예인정(T-05) ‣ 방제함(방제-12, 방제-13, 방제-16)

※ 자료: 해양경찰청

【 최근 5년간 해양경찰서 등 신축 등 현황 】

연도	개소	내용
2019	3	보령해양경찰서, 울산서 울산항파출소, 군산서 보급창고,
2020	7	평택서 구조대, 보령서 장항파출소, 통영서 사천파출소, 창원서 대항출장소, 부안서 고창파출소, 태안서 영목출장소, 목포항공대 격납고(증축)
2021	3	남해청 특공대 훈련시설,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서귀포서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2022	6	여수해양경찰서, 창원해양경찰서, 부안해양경찰서, 부안서 구조대, 목포광역VTS, 군산광역VTS
2023	5	서특단 대청특수진압대, 목포서 비금출장소, 남해청 실내체육관, 교육원 VTS실습동, 제주광역VTS
2024 (예정)	6	인천해양경찰서, 속초서 보급창고, 군산서 선유도출장소, 목포서 암태출장소, 동해청 민원동, 정비창 민원동

※ 자료: 해양경찰청

□ 한편, 2019년~2023년간 동 사업의 공공요금및제세 비목으로의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주로 인건비나 기본경비성 재원을 전용하여 부족 소요에 대응하였으나, 2021년 들어서는 사업비성 예산까지 그 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더 높은 단계의 예산 조정 방식인 이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는 등 예외적인 예산 집행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최근 5년간 다른 사업에서 지방관서기본경비로의 공공요금및제세 이·전용등 내역 】

연도	구분	세부사업(~에서)	금액	세부사업(~으로)	금액
2019	전용	지방관서인건비	△2,442	지방관서기본경비	2,497
	세목조정	지방관서기본경비	△55		
2020	전용	지방관서기본경비	△100	지방관서기본경비	1,190
		의무경찰관리	△540		
		인재선발양성지원	△134		
	세목조정	지방관서기본경비	△416		
2021	이용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85	지방관서기본경비	1,161
		수색구조역량강화	△375		
		함정건조	△242		
		경비대테러역량강화	△85		
		해양오염예방활동	△50		
	세목조정	지방관서기본경비	△324		
2022	이용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52	지방관서기본경비	1,984
		수색구조역량강화	△192		
		경비대테러역량강화	△102		
		국제정보외사활동	△110		
		항공기정비유지	△130		
		정비창관리	△37		
		해양오염예방활동	△15		
	전용	본부기본경비	△100		
		지방관서기본경비	△711		
		정책소통및감사감찰활동	△5		
		총무활동	△47		
		재정관리활동	△230		
		치안및외근활동지원	△31		
		교육원지원	△100		
		정보통신보안활동	△3		
	내역변경	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19		
		교육원기본경비(총액)	△35		
	세목조정	지방관서기본경비	△65		
2023	이용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30	지방관서기본경비	3,350
		수색구조역량강화	△37		
		수상레저관리	△83		
		경비대테러역량강화	△98		
		항공기정비유지	△2,328		
		차량정비유지	△8		
		해양오염예방활동	△5		
	전용	재정관리활동	△335		
		교육원지원	△426		

□ 그런데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와 정부조직개편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바,[34] 비록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공공요금및제세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35] 연례적으로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예산의 이용을 통해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특히, 전기·상하수도·통신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경직성 경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과목의 예산이 실제 소요액보다 과소 편성될 경우 위의 표와 같이 다른 주요 사업비에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수밖에 없어 해당 주요 사업의 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임.

---

34)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35)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231)
1..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나'항목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타 비목으로부터 자체 이용할 수 있다.
나.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 따라서, 동 사업의 공공요금및제세 비목에 대하여는 과거 국회의 결산 심사 시 수차례 시정이 요구되었던 점,[36] 해당 비목의 경우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상 과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전용 등은 예산 집행의 예외적인 수단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보다 면밀한 예측을 통해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 소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36) [과거 국회 결산 심사 시 시정요구 사례]

회계연도	유형	지적사항 등
2015	주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이·전용 등의 예산 변경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나, 과도할 경우 자칫 다른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고,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 내용에 큰 변화를 일으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016	주의	해양경찰청은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한편, 공공요금 실제 소요를 반영한 적정예산 편성을 통해 과다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2018	제도개선	해양경찰청은 재정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적정 공공요금 예산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는 공공요금 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022	시정	해양경찰청은 지방관서기본경비 공공요금및제세 과목의 최근 연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